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64호
2022. 2. 24.(목)



목 차

자치법규

[조 례]

제8326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832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8328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8329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규 칙]

제40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14
제4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84
제4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86
제43호	서울특별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1
제44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96
제45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98
제46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102
제47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111
제48호	서울특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121

[예 규]

제14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규정	123

고 시

제2022-71호	서오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2
제2022-72호	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6
제2022-73호	향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0
제2022-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265
제2022-7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66
제2022-7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269
제2022-77호	돌산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1

제2022-78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88
제2022-79호	도시관리계획(원효로4가 114-36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05
제2022-80호	도시관리계획(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14
제2022-83호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333
제2022-84호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335
제2022-85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350
제2022-86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353
제2022-8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358

공 고

제2022-430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61
제2022-443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63
제2022-444호	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364
제2022-451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65
제2022-455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366
제2022-45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367
제2022-462호	과학관 등록말소 공고	369
제2022-46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70
제2022-47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71
제2022-477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공람 공고	373
제2022-47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75
제2022-481호	공시송달공고	377
제2022-487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382
제2022-48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84
제2022-490호	2022년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386
제2022-494호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3개월) 조치 통보 공고 ...	392
제2022-49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394
제2022-502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415
제2022-1750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21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2-64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422

구 고 시

제2022-24호	도시관리계획(수유·변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북구)	423
제2022-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마포구)	426
제2022-23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428
제2022-24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429
제2022-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430
제2022-4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431
제2022-43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434
제2022-45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송파구)	438
제2022-51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	441

구 공 고

제2022-272호	도시관리계획[면목·상봉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중랑구)	445
제2022-215호	상계2·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일부) 환지처분 정정 공고(노원구)	447
제2022-259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451
제2022-345호	도시공원(향림근린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454
제2022-369호	도시관리계획[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재열람 공고(양천구)	458
제2022-34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금천구)	460
제2022-361호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및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열람공고(관악구)	462
제2022-45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분당선, 도곡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464
제2022-4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남구)	466
제2022-46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동사거리 공공공지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남구)	470

제2022-347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송파구)	474
제2022-35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 완료 공고(송파구)	476

사업소공고

제2022-8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77
제2022-8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80

자치법규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326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2월 24일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34조”를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0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의안 발의)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바목 중 “법 제111조제1항제1호”를 “법 제12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52조, 제83조,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7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 중 “제39조의2”를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및 그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그 소관사무로 한다.

- ③ 제1항의 운영 및 제2항의 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 중 “법 제40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제58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64조 중 “의회 회의규칙”을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한강수질 회복,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 시민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함.

한편 특별위원회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의장내 질서 유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함(제7조제2항 신설).

나. 정례회 집회일의 근거 법령을 삭제함(제8조).

다. 「지방자치법」 제52조, 제83조,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추가함(제33조제1항1호사목)

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함(제33조제1항제7호 사목 신설).

마.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반드시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 또는 의견을 듣도록 하고, 활동기간 연장을 1회, 6개월 이내로 한정함(제37조).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제39조의2 삭제).

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배치 근거를 신설함(제48조2 신설).

아. 시장과 교육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의장 내 질서유지 규정을 정비함(제52조 및 제60조).

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제9조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832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회사무처 기구 규정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무처 설치 근거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제1조).

나.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삭제함(제3조 삭제).

다.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4조 삭제).

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항을 삭제함(제6조 삭제).

서울특별시조례 제8328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 경우 추계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의안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조제3항)

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329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을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을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 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을 “다음” 으로, “따라” 를 “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을 “입법담당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민과 밀접한 여러 현안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용역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의 뜻을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로 정의함(제2조제2호).
- 나.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의 취지를 연구용역 주체의 다양화로 함(제6조).
- 다. 연구용역 내실화와 시민의 참여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 라. 연구기관 선정 공모방식의 예외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제8조).
- 마. 연구기관 공모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함(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 바.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회의 문구를 첨가함(제9조).
- 사.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제2항 및 제3항).
- 아. ‘관리’에 대한 재정의에 따라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제10조제1항).

[규 칙]**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0호****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위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용·전보·평정·보직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 규칙의 적용범위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안제1조~안제6조)
- 임용시험의 제출서류·응시자격·시험위원 등 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제7조~안제20조)
- 신규임용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제21조~안제23조)
- 근무부서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24조~안제27조)
- 승진임용의 원칙과 방식(시험승진·심사승진·특별승진) 등에 관하여 규정(안제28조~안제37조)
- 자격증 및 실적등 가점의 부여에 관하여 규정(안제37~안제40조)
- 전문직위 및 분야별 보직관리에 관하여 규정(안제41조~안제42조)
-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하여 규정(안제43조~안제4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없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담당관은 의정담당관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 위원(위원이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이름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빨리 보충하고자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을 채점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서의 제출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운데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10분의 4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

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최종 졸업 학력에 따른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 졸업자: 6급 또는 7급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또는 8급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란 통·번역 등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소요경력을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과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3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험 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부서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실린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 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절 전보

제24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실·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을 단위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부서별로 배치하고, 배치된 공무원에게는 부서장이 직무를 준다.

③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을 사무처에 배치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의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희망·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선발결과 등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의장은 격무·기피업무 등 의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

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3과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사이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7의 경력경쟁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밖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승진임용

제28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이나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승진은 별표 14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한 총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하며,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이 과목별 총점의 10분의 4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0조(심사승진) ① 의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승진 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의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나 유사 직렬별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와 예비심사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및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의 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정한 승진예정자명단과 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승진임용시기를 사전에 예고한다.
-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공무원
4.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6.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2조(5급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 시험성적 20%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3조(5급으로의 심사승진)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자격이수제) ① 의장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직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역량평가제) ① 의장은 5급 이상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임용 대상자를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과목·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처음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4절 평정

제37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6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7과 같다.

③ 의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제38조에 따라 획득하는 실적가점을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

의 실적가점으로 반영한다.□

④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실적가점제의 적용대상) 의장은 반기별로 직무수행 중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주고,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9조(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인사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실적가점인정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적가점인정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실적가점 부여대상 심사과정에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실적가점 부여 등) ① 평가대상 실적은 그 연도의 반기별 사업실적으로 한다.

② 실적가점 부여대상은 S·A·B등급으로 분류 선정하고, 의장이 정하는 선정등급별 점수를 준다.

③ 반기별 2개 이상의 실적에 대하여 실적가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개인별로 부여점수가 높은 실적의 점수로 조정한다.

④ 실적가점을 부정하게 신청한 사람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그 실적가점을 취소하고,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 등 실적가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전문보직관리제

제41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42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는 조직기능과 전문화의 유형에 따라 도시안전·복지·경제·교통·환경·도시계획 등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분야와 기획·행정·예산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분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경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분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규 임용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입한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에 한정한다)은 조직탐색 기간을 거쳐 전문분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분야의 구분과 분야별 보직관리의 기간·신청·지정·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민간근무휴직제도

제43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영 제38조의7제5항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채용 계획서
2.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제44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공무원 채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영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기관 및 단체. 이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채용신청을 제한한다.
4.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기관 및 단체

제45조(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 ①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의 채용자격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민간기업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윤리서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영 제38조의7제4항 전단에 따라 휴직예정 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에는 보수, 채용기간, 담당직위, 직무내용, 노동시간,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7조(그 밖의 관리사항) ① 영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의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근무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의12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절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제48조(임용승인 절차) ①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명하는 임기제공무원

을 포함한다. 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별지 제15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임용 제출서류) ① 의장은 임용예정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임용약정) ①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③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1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8조에 따른 임용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붙일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3.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어 제38조에 따른 실적가점을 취득한 사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
3. 「공무원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
-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다다른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18에 따른 연장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어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총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 그 의사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할 수 있다.
- 제52조(임용약정의 해지 신청)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부서장은 해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인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3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하며,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 ③ 근무기간 동안 별표 19의 평정횟수 이상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는 임용약정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우대할 수 있다.
- ④ 근무기간 동안 제일 낮은 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 20과 같은 경우에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4조(서울특별시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서장 가운데에서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제55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처음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제1항의 기준을 넘는 금액으로 연봉액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뛰어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5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끝나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절 다면평가

- 제57조(다면평가 실시)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무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1주일 이상 평가대상,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가시행 전 평가대상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평가대상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면평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부서장 등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다면평가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다면평가 방법) ① 의장은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평가대상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를 무작위로 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평가대상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매긴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가참여인원이 적은 평가대상자의 결과는 활용하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한 저평가 집단에게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하되 미리 평가자, 평가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가대상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평가대상자 전체의 평균점수, 그 밖에 인사운영에 반영되는 세부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제4장 인사 지원

제61조(인사 지원) 의장은 인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사이의 인사 업무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 의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평정 및 서열명부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행정 실태과약에 관한 사항

제63조(자치구 의회 직원 채용위탁)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자치구 의회와 협의하여 자치구 의회 직원의 채용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64조(채용 위탁시 실비지급) 시의회는 구의회 직원의 인사채용을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5조(인사청탁자 공개) 의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인사청탁을 배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청탁대상자의 신상과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인사추천자 공개) 의장은 공무원임용에 있어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추천자와 추천된 사람의 소속, 직위·직급, 성명 등의 신상과 추천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험응시자의 제출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승진시험	비고
1	제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정함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정함
3	주민등록표(초본) 1통	○		병역사항 포함(대상자에 한정함)
4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정함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정함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각종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정함
7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 구 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정함
8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의 사본 1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 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정함
9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10	시험요구서 1부		○	

위 표의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표(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
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붙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 가사
	국제통상			
	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호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 가사, 세무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 가사, 세무사
	운수	철도운송산업기사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변호사
공 업	일반기계·농 업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안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차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일반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 업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 업 기 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방 송 통 신	통신사·통신 기술·전송기 술·전자통신 기술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 업 기 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1997.6.1. 이전 취득)	
시 설 관 리	시설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 업 기 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능 사	전기, 기계정비, 조정	
	기계시설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산 업 기 사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전기시설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 업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 능 사	전기, 승강기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별표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5급 이상	6급 · 7급	8급 · 9급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제1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6·7급		8·9급
가산 대상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가산 비율	5%	3%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가운데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 제2호 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의 가산비율

구분	6·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 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계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5급	기술사
6급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7급	기사(3년), 산업기사(6년)
8급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9급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비고

1. 괄호의 연수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괄호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뒤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10년 이상, 3급: 8년 이상, 4급: 4년 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은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 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운수	산 업 기 사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농 업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 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 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 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 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 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 통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 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일반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 업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 능 장 기 사 산 업 기 사 기 능 사 기 능 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 업 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정,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 업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 업 기 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 송 통 신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 업 기 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1997.6.1. 이전 취득)
위 생	사역	기 능 사	환경
시 설 관 리	시설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 업 기 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 능 사	전기, 기계정비, 조정
	기계시설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산 업 기 사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전기시설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 업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 능 사	전기, 승강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가운데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3)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직업상담사 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가
사 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자력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 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		
시 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 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 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 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 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 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 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1),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괄호의 연수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괄호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7]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 방 공 무 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함)	대 학 교 원 (전 문 대 학 포함)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별표 11 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별표 12 적용 대상자 중 대학 교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별표 12 적용 대상자 중 전문대학 교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취득후 10년 이상	학위취득후 8년 이상	학위취득후 4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의장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제17조제3항 관련)

직렬	직류	관련학과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축	건축(건축설비)
통신	통신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전기시설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별표 9]

경력경쟁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7조제4항 관련)

구 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제17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시임기제	가급 · 5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급 · 6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급 · 7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라급 · 8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마급 · 9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1]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제17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제20조 관련)

직렬 \ 계급		계급	5급 이상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류	운 수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 · 2급	한글속기 1 · 2 · 3급
공 업	일 반 기 계 · 농 업 기 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사진
		기 계 운 전	기 술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 반 전 기	기 술 사	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직렬	직류	계급		5급 이상	6급 · 7급	8급 · 9급
		직급	직책			
	전 자	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 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기 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 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기 능 장 기 사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일 반 토 목 · 수 도 토 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기 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 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 송 통 신	통 신 사 · 통 신 기 술 · 전 송 기 술 · 전 자 통 신 기 술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기 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 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시 설 관 리	시 설 관 리			기 능 장 기 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 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3]

겸임예정계급기준표(제27조제1항 관련)

겸임예정계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원 비교급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2년 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원	16호봉 이상의 교원	12호봉 이하의 교원	11호봉 이하의 교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 단		이사 (3년 이상)	이사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사원 (3년 이상)	평사원	

[별표 14]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과목(제29조제1항 관련)

직렬 \ 직급	6급에의 승진		7·8급에의 승진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행 정 직	헌법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토 목 직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토목시공학, 도시계획학 중 1과목	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 축 직	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중 1과목	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 계 직	물리학개론 기계설계	기계공학법, 재료역학 중 1과목	물리, 기계설계, 기계공학일반	
전 기 직	물리학개론 전자자기학	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중 1과목	물리, 전기통론, 전력	

비고: 위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

[별표 15]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6조 관련)

구분 \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 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 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 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 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 으로서 “미급” 봉급한계액의 6월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 으로서 “미급” 봉급한계액의 6월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 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 로 재직한 기간	“6호” 로 재직한 기간	“7호” 로 재직한 기간	“8호” 로 재직한 기간	“9호” 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 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 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 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 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 군 27호봉 이상	“가” 군 26호봉 이하	“나” 군 28호봉 이상	“나” 군 27호봉 이하	“다” 군 28호봉 이상	“다” 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 육 직 무 공 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 16]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 37조제 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 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 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 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 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 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 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 신,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 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 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 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 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 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 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 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 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 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 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 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 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 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 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 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 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 (SMT)]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 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 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 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 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 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 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 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 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 (전기시설)	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전기, 승강기)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주: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17]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37조제2항 관련)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12점	0.05점
영 어	TOEFL(IBT)		105점이상	91점이상 105점미만
	TOEIC		900점이상	800점이상 900점미만
		청각장애	450점이상	400점이상 450점미만
	TEPS		467점이상	390점이상 467점미만
		청각장애	280점이상	234점이상 280점미만
	TOSEL (ADVANCED)		830점이상	740점이상 830점미만
	TOEIC SPEAKING		160점이상	140점이상 160점미만
	TEPS SPEAKING		68점이상	58점이상 68점미만
	OPIc		1H이상	1M3이상 1H미만
	G-TELF Level2		90점이상	77점이상 9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 주 :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8]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제51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의회 공무원으로서 재직 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서울특별시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비고

1.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을 계산할 때에는 신규임용 후 첫 1년 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첫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단,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은 신규임용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의 5회 이상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별표 19]

임용기간별 최상위평가등급(S등급) 평정횟수(제53조제3항 관련)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별표 20]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제53조제4항 관련)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 개 경 쟁 채 용 면 접 시 험 평 정 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나.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다른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 수	
			보 통	
다른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1) 우수 : 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가운데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와, 위
원 5명 중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 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위원평정란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등 면 접 시 험 평 정 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다른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		판정	우 수	
			보 통	
			미 흡	
다른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위원평정란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등 록 원 서

※뒤쪽의 작성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합니다.(앞쪽)

등록번호		수험번호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합격시험명					

인적사항	이름(한글)		이름(한자)		사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역	[] 병역필 [] 면제 [] 미필 [] 여성			

학력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 부문 · 과목

자격 · 면허	취득연월일	종류	취득연월일	종류

상벌	연월일	사항	연월일	사항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처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포함)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그 밖의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이상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경력 및 자격 증명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임용시까지 수집 · 이용하며, 개인정보 활용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하며, 임용자의 정보는 영구보관 자료로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합격시험명에는 시험명칭과 소속기관명 · 채용분야를 함께 기재합니다.
2. 병역은 남성인 경우 병역사항을 선택하고, 여성인 경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란을 선택합니다.
3. 학력은 고등학교부터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학교란에는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연수를 기재합니다.
4. 자격 · 면허는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연도순으로 기재합니다.
5. 상벌은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 처벌 등을 연도순으로 기재합니다.
6.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사회 일반 경력을 연도순으로 기재합니다.
7.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8. 제출서류는 등록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의 부수를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9. 기본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합니다.
11. 남성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2. 학력증명서는 대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임 용 후 모 자 명 부

① 별칭	② 직위	③ 이름	④ 생년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취득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⑧ 특기	⑨ 병역	⑩ 회합 기관	⑪ 신원조사			⑫ 추 천					⑬ 임		용	비고
										이력	회보	승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⑪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자 임 용 통 보 서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붙 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실무수습계회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시험구분	합격일자	유효기간			
학력	경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계획기간				
	실지수습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5 급 승 진 임 용 순 위 명 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 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 무 원 채 용 계 획 서

※뒤 쪽의 작성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채용이유			
채용 예정기간			
자격	계급	연령	
	재직기간	학력	
	경력요건		
	그 밖의 사항		
근무조건	직위(보직)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역	
	복리후생		
	그 밖의 근무조건		
담당업무	내용		비중(%)
그 밖의 사항			

○○○(기업명)에서는 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제출서류

1. 기업소개서: 사훈 및 경영이념, 사업내용, 기업연혁, 연간매출액, 임직원 수 등 기재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기업의 복무규정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휴직의 기본계획에서 정한 “민간기업등의 심의기준” 관련 자료 및 확인서

작성방법

1. 채용이유란에는 공무원의 임시채용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예시)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정부기관의 근무경험 민간활용
2. 채용예정기간란에는 공무원을 채용할 기간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3. 자격란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계급과 연령 등을 기재합니다.
 - 예시) 계급: 5급(행정)
연령: 40세미만
학력: 대졸
재직기간: 5년 이상
경력요건: 2년 이상 국제협력업무 수행자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 지정
4. 근무조건란에는 채용직위의 대상 직위(보직)명, 수당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또는 월평균 보수액), 주당근무시간, 근무지역 및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예시) 직위(보직): 국제협력실 무역팀장
임금: 연봉 5,000만원
근무시간: 주당 40시간
복리후생: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그 밖의 근무 조건: 주 5일 근무 실시 등
5. 담당업무란에는 채용직위(보직)의 수행업무를 비중순으로 기재합니다.
 - 예시) 무역 대상국 선정 및 발굴 업무(50%)
통상 교섭, 마케팅, 투자 유치 등(30%)
부서 업무 총괄(20%)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민 간 근 무 휴 직 신 청 서

신청인	이름	소속
	계급(직위)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합니다.

휴직희망 민간기업등	명 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근무조건	담당업무		임 금 (연봉/월봉)	
	희망직위 (부 서)		근무지역	
	근무기간		복리후생	
	근무시간 (주 당)		기 타	
휴직사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 직 윤 리 서 약 서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민간기업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및 민간기업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3항과 같이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 또는 민간근무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민간근무휴직 중 또는 복귀 후에 해당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편중된 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을 하거나 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4항과 같이 민간기업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거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6. 기타 민간근무휴직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채 용 계 약 변 경 신 청 서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공무원	이름	주민번호	
	담당직위	휴직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현행	변경
	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복리후생		
	그 밖의 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체결한 채용계약서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임 기 제 공 무 원 임 용 승 인 신 청 서

기 관 명

20 . .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기간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임용직급 (등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분야	주요 학력·경력·자격	임용(연장)기간	연봉 요구액	임용계획 승인일자	비고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임 기 제 공 무 원 임 용 계 획 서

1. 임용개요

(채용부서명 :)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산연봉액 (천원)

2. 사업(임용)의 필요성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가. 직무내용

—

—

· 나. 직무특성

—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나. 경력요건

다. 요구자격증

라. 그 밖에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근무기간(5년 범위내, 한시임기제의 경우 1년 범위내)

· 근무요구기간 :

· 기간설정사유 :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임 기 제 공 무 원 임 용 약 정 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책 결정 보좌 [] 특정 업무 분야			

2. 담당예정업무:

3.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직인

유의사항

- 채용구분 : 임기제공무원 종류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상당계급 기재
* 예 : 일반임기제 ○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급 (상당), 한시임기제 ○급(상당) 전문임기제 ○급 (상당) 등
-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업무 특성 및 성격 (정책 결정 보좌 또는 특정 업무 분야)을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함
- 근무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가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¹⁾

—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²⁾	업무비중 ³⁾	일정계획 ⁴⁾	성과결과/산출물 ⁵⁾	담당역할 ⁶⁾
1.	%			
2.	%			
3.	%			
4.	%			
5.	%			

비고

- 1) 성과목표 개요: 근무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2)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성과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부문별 단위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기재
- 3) 업무비중: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중요도·난이도·업무량 등에 따른 업무비중을 기재하되, 총계는 100%가 되어야 함
- 4) 일정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월단위로 기재
- 5) 성과결과/산출물: 성과목표 달성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결과물을 가능한 계량화하여 기재
- 6) 담당역할: 성과결과(산출물)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근 무 실 적 최 종 평 가 서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2. 업무실적

○ 성과목표 개요

—

○ 평가점수

평가일시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연월 (필요시)	비고
평가점수						
평가등급						
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	

20 . . .

서울특별시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인)

위 원 부서장 (인)

 부서장 (인)

 부서장 (인)

 부서장 (인)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근 무 실 적 최 종 평 가 서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2. 업무실적

☐ 성과목표 개요

—

☐ 평가점수

평가일시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평균등급
평가점수												☐ B이상 ☐ B초과 ☐ A이상 ☐ A초과
평가등급												

※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을 계산할 때 신규임용 후 첫 1년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의 첫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3. 5년 초과 연장 사유: ‘연장원칙’ (1호, 2호, 3호), ‘근무기관 추천’ (4호) 중 택1

☐

☐

20 . . .

서울특별시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인)

위 원

부서장

(인)

부서장

(인)

부서장

(인)

부서장

(인)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22. 1. 13.)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을 마련하여 직원의 직무수행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처장 및 실·담당관이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 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법정 대리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사무처장 및 그 외 직원의 직무수행 공백에 따른 대리자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
-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를 규정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없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정대리)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실·담당관의 직제 순서에 의한 실장 또는 담당관이 대리한다.

② 실·담당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실·담당관이 미리 정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2. 사무처장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2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22. 1. 13.)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무처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두도록 하며, 전자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 휴가 또는 출장을 가고자 하는 공무원의 허가 절차를 정함(안 제5조, 제6조).
-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 담당업무 및 관련 문서·물품을 인계하는 방법을 규정함(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없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처장은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담당관·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의회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 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사무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부서 : 직급 : 성명 :)

[illegible]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앞쪽)

부서명 :																
일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20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						
여비			정산			

210mm×297mm[백상지(80g/㎡)]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3호

서울특별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가 제정됨('22. 1. 13. 시행)에 따라, 의회의 당직 편성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의 구분과 체계, 인원, 준수사항, 비품 및 점검사항 등 의회 자체적으로 당직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 비상근무의 발령, 소집, 해제 등 비상사태의 단계에 따른 일련의 대응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직원의 명부, 연락방법, 비상소집대상 등을 정비·보완하여 항상 현행으로 유지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수 요원을 지정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없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회사무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② 일직은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이하 “정

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근무 시간 외에는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2명 이상의 당직근무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로 하되, 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당직사령)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관에는 당직사령을 두며, 당직사령은 5급 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등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공휴일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주무부서(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 등) ① 사무처장은 방법·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KT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사무처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법·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 ② 사무처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의 장과 본관의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당직근무자는 사무처장이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점검) 사무처장은 당직점검자(의회 당직업무 총괄담당자를 말한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발령 및 해제)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전역(본관 및 별관을 포함한다) 또는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사무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제22조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회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의회 전체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4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제정됨('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4시간을 기준으로 여비를 구분하여 지급함(안 제3조제1항).
- 관할구역 출장 시 전용차량을 배정받게 되면 여비를 미지급하며, 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3조제2항).
- 여비의 지급 절차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규칙」에 따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없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여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시기) 제3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절차) ① 제4조에 의한 여비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회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5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제정됨('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절차는 출장계획 수립,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출장을 실시한 뒤 보고하는 단계로 구분함(안 제2조 및 별표).
-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와 관련하여 출장의 목적, 목적지와 출장 인원 및 기간, 경비의 적절성 등 각각의 심사 항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방문지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수단 확보 및 비상연락체계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없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출장방침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방침 수립 시 미리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 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출장방침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출장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통보된 내용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전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를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설단체 등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출장목적지 심사)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2. 대한민국의 공관설치 여부와 방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
3. 방문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4. 방문국에 대하여 정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여행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여부

제7조(출장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선진사례의 시찰·견학·참관 및 자료수집 등이 목적인 출장은 6개월 이내의 전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장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 목적에 의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④ 초청에 따른 출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심사)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장기간의 연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② 출장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
- 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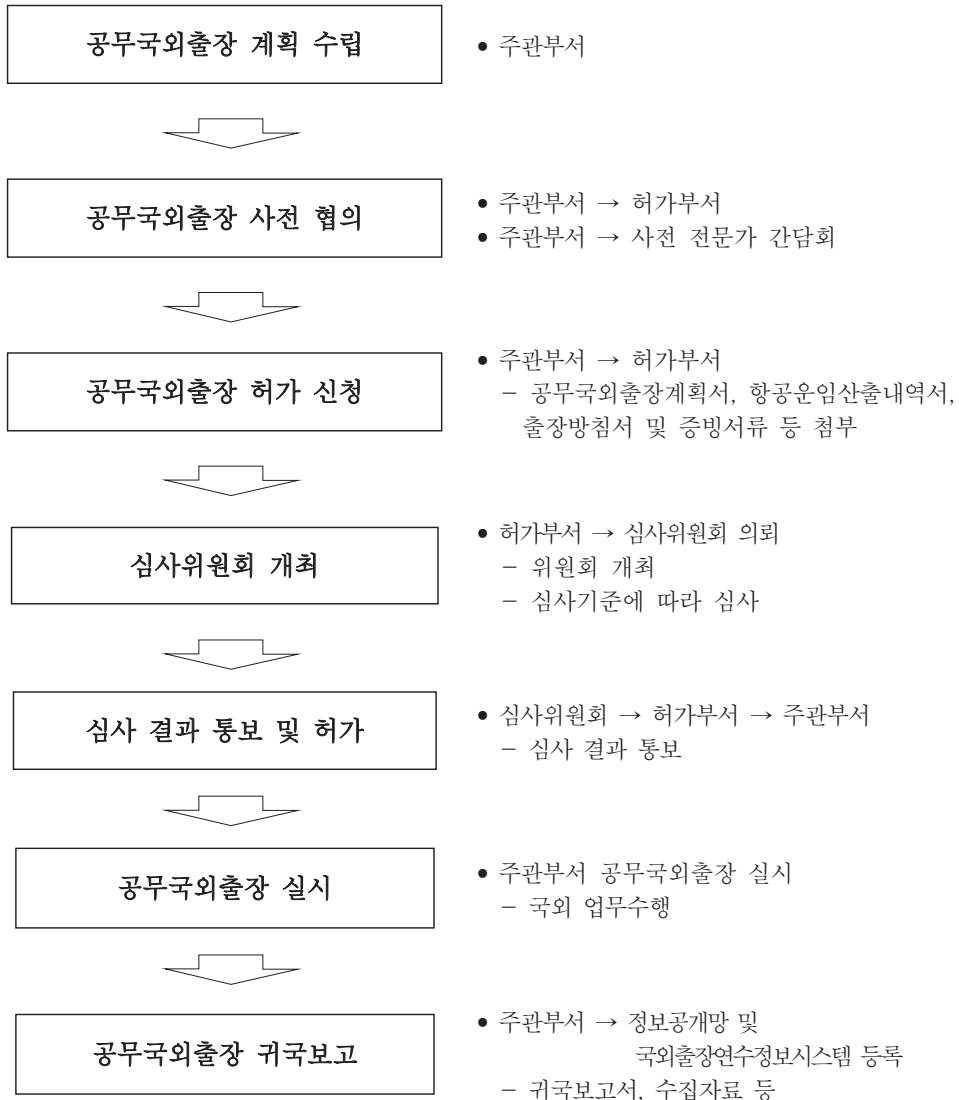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제2조 관련)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 흐름도



- 주관부서 :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부서
- 허가부서 :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6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22. 1. 13.)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신청기간, 심사기준, 수령권 승계 등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조기퇴직수당은 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함(안 제11조).
-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근속연수계산, 심사기준 등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 직급별 과원보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경우, 반대로 과원보다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고려 대상과 기준을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처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제3조제1항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5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6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비고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 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 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한글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 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원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지급결정 및 통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신청인 통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지급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인사·연금 및 감사 관련 담당부서에 전산 및 공문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합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일반직(임제 제외) []특정직()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지급결정 및 통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신청인 통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지급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7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신설(제72조)되었음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감독자 문책을 규정함(안 제3조)
- 경고조치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상 기재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4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3)의 신고·고발의 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4)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의2, 제10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 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 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3]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9)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고

-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다른 공무원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별표 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 ○	○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 ○	○ ○ ○	
	마. 음주운전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 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 만인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 상 0.2% 미만인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의 경우					○ ○ ○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운전 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 44조제 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 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 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 는 공무원을 말 한다.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 폭력, 가혹행위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자. 기타 품위손상					○ ○ ○ ○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 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 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 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	○	
	6. 정보공개 불이행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다. 기타 위반사항					○ ○	○	‘불복절차 관련 공 개의무 불이행’ 이 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 에도 불이행한 경우 를 말한다.
2. 청렴 의무	1. 금품·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능동적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문서 관인 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통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 예산회 계 및 물품 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 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 ○ ○ ○ ○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 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 ○ ○	○ ○ ○	
7. 소송 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 ○	○ ○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 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	○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48호

서울특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위 법령(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퇴직희망 직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의원면직 제한되는 경우 및 확인의무를 규정(안제2조~안제3조)
- 의원면직 제한 확인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 대한 문책 근거를 규정(안제4조)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징계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안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서울특별시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다른 안전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규]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4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 김 인 호 인

2022년 2월 24일

1. 개정이유

사무전결의 간소화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사무권한을 일원화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사행정사항 및 주민조례발안 등 신규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규정을 위해 위임전결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의장권한 사무와 사무처장 권한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전결규정을 일원화 함
- 나. 인사권독립에 따라 인사행정사항 관련 전결규정 명시함
- 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사무 전결규정 신설함
- 라. 중복 단위사업의 통폐합 및 세부항목의 전결권 조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방법) ①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사무의 결재는 별표1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실장,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은 담당자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5급) 또는 업무분담자(6급이하)를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⑤ 별표1의 전결권자 중의 담당관은 동일직급에 상응하는 언론홍보실장,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제4조(합의)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결재위반여부 확인) 문서통제관은 본 규정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의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개정 2022. 1.)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1. 공통사항						
1. 방 침	1. 주요업무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의 정 담당관
	2. 세부시행계획 수립			○		
	3.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보 및 변경		○			
2. 문 서	1. 접수문서의 공람					
	가. 의회 관련 주요문서				○	
	나. 기타 일반문서					
	1) 중요사항			○		
	2) 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			
3. 법 규	1. 법령 정비(안) 건의 및 협의			○		입 법 담당관
	2.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정비안 방침 결정				○	
	3.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			
	4. 고시문, 공고문의 결정			○		
4.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련 사항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	
	2. 위원회 위촉 및 해촉				○	
	3.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 임용 등	1. 공무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가. 5급 이상				○	
	나. 6급 이하			○		
	2.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6. 복 무	1. 출장 명령 및 복명					의 정 담당관
	가. 관 외					
	1) 4급 이상		○			
	2) 5급 이하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6. 복 무	나. 관 내					
	1) 4급 이상		○			
	2) 5급 이하		○			
	2.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퇴, 외출의 허가					
	가. 4급 이상		○			
	나. 5급 이하		○			
	3. 특근 명령(승인)			○		
	4. 소속 직원의 당직 변경		○			
7. 공 사	1.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집행, 중지, 준공기간 연기 및 설계변경					
	가. 1건당 도급액 1억원 이상			○		
	나. 1건당 도급액 1억원 이하		○			
8. 용 역, 물품제조 구매 및 기 타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계약					
	가. 10억원 이상			○		
	나. 10억원 미만		○			
	3. 용역 또는 물품제조					
	가. 5억원 이상			○		
	나. 5억원 이하		○			
	3. 물품매입 및 기타					
	가. 2억원 이상			○		
	나. 2억원 이하		○			
	4. 조달물품 구매		○			
9.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1건당 300만원 이상			○		
	나. 1건당 300만원 미만		○			
10. 봉급, 여비 및 기타	1. 봉급, 여비 및 기타 의무적 경비의 집행품의		○			
11. 자료제출	1. 중요업무 자료 제출			○		
	2. 소관업무 통계 및 기타 경미한 자료 제출		○			
12. 민원 서류처리	1. 중요 진정서 및 건의서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2. 경미한 진성서 및 건의서		○			
	3.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			
	4.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		○			
13. 기타 일반	1. 부서 및 전문위원실간 업무협조		○			
	2. 소속 부서의 사무분장		○			
	3. 사무 인계인수					
	가. 4급간				○	
	나. 5급간		○			
	다. 직원간	○				
13. 기타 일반	4. 물품의 반납		○			
	5. 물품의 청구와 수리		○			
	6. 소속 금품 및 현금 출납 명령		○			
	7.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 배부		○			
	8.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중앙부처, 타기관)		○			
	9.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 언론홍보실						
1. 언론홍보 행정	1. 언론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	
	2. 의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및 방침 결정				○	
	나. 편집위원회 운영			○		
	다. 발간 및 배포 관리		○			
	3. 의정활동의 국내홍보에 관한 사항		○			
	4. 사진, 영상기록의 제작 및 편집					
	가. 운영계획 수립		○			
	나. 촬영 및 편집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5. 홍보 간행물 편집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 배부		○			
	6. 일간신문 스크랩 관리	○				
	7. 의회관련 자료의 편집·발간			○		
	8.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		
	다. 기타 여론조사 관련 일반사항		○			
	9.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		
	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용		○			
2. 보도지원 및 분석	1. 기자실 운영 사항		○			
	2. 보도자료 수합 및 제공		○			
	3. 보도사항 분석 및 평가		○			
3. 의정담당관						
1. 의회 운영 1. 의회 운영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	
	2. 의전 및 행사					
	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다. 기념품 및 기념패 제작 관리		○			
	3. 의회운영비 전체예산 확정				○	
2. 의정활동 지원	4. 청사관리 운영계획 수립			○		
	1.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2.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3.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원				○	
	4.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사업 추진				○	
	5. 해외 홍보 및 섭외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3. 의원 신상관련	1.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가. 재산등록 신고업무 추진계획			○		
	나.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허가요청		○			
	다. 재산등록(신고)서류 이송		○			
	라. 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			
	마. 기타 재산등록 일반적 업무		○			
	2. 폐회중 의원 사직서의 처리				○	
	3. 결정된 의원의 사직 허가 및 불허가 통지				○	
	4. 의원 등록서류 접수		○			
	5. 의원 기록카드 관리	○				
	6. 의원 수첩 및 배치 제작 관리		○			
	7. 의원관련 증명서 발급	○				
4. 의원교육	1. 의원의 교육연수활동					
	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5. 상 훈	1. 의장 명의 표창 수여				○	
	2. 대외기관 표창 상신			○		
6. 공무원 인사	1.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2. 장기인력관리계획					
	가. 장기인력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나. 시행계획 수립			○		
	3.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가. 채용계획 수립				○	
	나. 시험위탁 요구		○			
	다. 시험위원 선정			○		
	라. 임용등록계획 수립			○		
	마.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바. 임용발령 사항			○		
	4. 공무원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승진계획 및 심사결과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6. 공무원 인사	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		
	다. 다면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		
	5. 전보 및 파견(복귀) 및 휴직에 관한 사항					
	가. 전보 및 파견(복귀)계획 수립				○	
	나. 인사발령 사항			○		
	6. 대우공무원					
	가. 선발계획 수립				○	
	나. 선발결과 보고			○		
	7. 명예·조가·정년퇴직					
	가. 비위사실 조회		○			
	나. 명예·조가·정년 퇴직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			
	8. 인사기록 및 전산 관리					
	가. 공무원증 및 전자카드 발급		○			
	나.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				
	다.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라. 인사기록 작성·정정·이송		○			
	9. 근무성적 평정 관련					
	가. 평정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		
	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10.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해임 등				○	
	나.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		
	다.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		○			
	11. 의료·고용보험 등 관련 사항					
	가. 피보험자 자격관리	○				
	나.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			
	다. 보험부담금 납부		○			
	12. 공무원 교육 관련 사항					
	가. 교육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다. 교육훈련자 선정 및 교육명령			○		
	13. 복무관리 관련 사항					
	가. 복무지침 수립			○		
	나. 휴가업무 지침 수립			○		
	다. 복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			
	라. 기타 복무관리		○			
	14. 시간외 근무관리 사항		○			
7. 총무 및 청사관련	1. 청사 내외 경비사항		○			
	2. 의회 출입증 발급		○			
	3. 당직근무 명령		○			
	4. 당직근무 일지 관리	○				
	5.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			
	6. 직원 후생시설 관리	○				
	7. 직원 동호인 모임 육성 지원		○			
	8. 보안 관리					
	가. 보안업무 조정 통제		○			
	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			
	다. 보안진단부 및 보안점검부 관리	○				
	9. 의회관련 비상계획 수립 시행		○			
	10. 청사관리(주차, 청소 등)		○			
	11. 청사 시설 점검 및 보수		○			
	12. 기관실, 전기실, 음향실, 통신실, 영선실 운영	○				
	13.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대관예약시스템 운영	○				
8. 문서 관리	1. 문서통제 및 부서분류	○				
	2. 관인 및 직인 관리		○			
9. 예산 운영	1. 의회예산 지침 작성 및 시달			○		
	2. 사무처 소관 예산 확정			○		
	3. 예산 집행계획 작성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4. 예산 집행 조정					
	가. 주요사항			○		
	나. 기타 일반사항		○			
	5. 예산배정요구	○				
	6. 예산 합의					
	가. 일상경비 및 1천만원 미만 예산 집행 합의	○				
	나. 1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합의		○			
10. 위임 전결	1. 대상사무 조사 및 심의		○			
	2. 위임전결규정 개정			○		
11. 감사 관련	1. 사무처 관련 진정, 비위사항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12. 목표관리 추진	1. 목표관리제 지침 시달			○		
	2. 목표관리 자료 수집		○			
	3. 목표관리 결과 보고			○		
13. 물품 수급관리	1. 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		○			
	2. 재물 현황 조사		○			
	3. 물품 소요 조회	○				
	4. 물품 정수의 사정		○			
	5. 불용물품 결정		○			
	6. 물품 관리 전환		○			
	7.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및 재고관리		○			
14. 지 출	1. 지출원인행위		○			
	2. 지출계산서 작성 보고	○				
	3. 자금신청	○				지출원
	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			
	5. 세입세출외 유가증권 출납	○				
	6. 임금 지급		○			
	7. 의원 수당지급		○			
	8. 세입세출결산 총괄		○			
15. 차량관리	1. 일일배차 명령 및 유류지급	○				
	2. 차량연료 구입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3. 차량등록 및 검사 수속		○			
	4. 차량불용 결정 및 교체			○		
	5. 차량정비 및 용품구매		○			
16.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 과실의 사무실 배정			○		
	2. 시설점검 및 보수		○			
	3. 청사보수용 자재구매		○			
	4. 기관실, 전기실, 음향실, 통신실, 영선실 운영	○				
	5.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			
4. 의사담당관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2. 회기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사일정 작성 및 회의소집 공고				○	
	나.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위원선임				○	
	다. 발언 접수 처리				○	
	라. 의원 청가 및 결석 접수 관리				○	
	마. 시정질문 운영계획 수립				○	
	바. 의장, 부의장, 위원장 선거 계획 수립				○	
	사. 본회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	
	3. 본회의장 방청·참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사관리	가. 방청·참관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나. 방청·참관 우수소감문 시상				○	
	다. 본회의장 사용 접수 시상				○	
	라. 방청·참관 현황 관리		○			
	4.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유관기관 협의 및 의회교실 운영			○		
	5. 인사청문 및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					
	가. 인사청문요청서 위원회 회부 및 경과보고서 송부				○	
	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출석 요구				○	
	6. 의사운영관련 책자 발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작성 및 발간		○			
	7. 의사운영관련 통계자료 관리		○			
2. 의안 및 의원요구 자료 관리	① 의안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보고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라. 조례안 등 의결사항 이송				○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바. 철회의 승인				○	
	2. 청원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보고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바. 심사기간 연장 승인				○	
	사. 철회의 승인				○	
	아. 처리 단계별 통지				○	
	3.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허가				○	
	4. 서면질문서 접수 보고 및 처리				○	
	5. 의안 및 청원문서의 보존관리		○			
	6. 이송조례안 공포통지서 접수관리		○			
	7. 의원요구자료 및 서면질문서의 보존관리		○			
	8. 의안 및 청원 등의 전산자료 및 통계자료 관리		○			
3. 회의록 발간 및 관리	①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불게재 및 자구정정 허가				○	
	나. 보존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 열람·복사허가				○	
	다. 공개대상 회의록 원고 열람·복사		○			
	2.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가. 회의록 발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나. 회의록 배부 및 배부선 관리		○			
4. 의정정보화	① 의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2.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3. 의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의정정보화 지원 운영		○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관리		○			
5. 법규관리	① 법규 공포 및 발령					
	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	
	나. 서울특별시의회 훈령·예규 발령 처리		○			
	2. 입법예고안 작성·게재 및 관리		○			
5. 시민권익담당관						
1. 민원행정	① 민원 관련 업무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 의정활동 지원 및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 민원행정	3.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배부		○			
	4.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자문회의 개최		○			
	5. 의정모니터 운영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우수의정모니터 표창계획 수립				○	
	라.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심사계획 및 보고		○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7. 의회 인턴쉽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 민원접수 및 관리	① 의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보고				○	
	2. 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		
	3.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4. 의회신문고 관리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5. 민원접수		○			
	6. 처리부서이송		○			
	7. 민원처리 통지		○			
	8.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9. 의원 민원관리카드 작성		○			
3. 주민조례발안	① 주민조례 발안 기본계획 수립				○	
	2. 주민조례 발안 세부운영매뉴얼 수립			○		
	3. 주민조례 청구 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위원회 위촉 및 구성계획				○	
	나. 심의위원회 안전상정 및 개최계획			○		
	다.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6. 입법담당관						
1. 입법정책지원	① 입법 및 정책관련 의정활동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1. 입법정책지원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의정활동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			
	라. 기타 정책연구관련 일반사항		○			
	2.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나. 위원 위촉 및 해촉				○	
	다.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1) 전체위원회 활동			○		
	2) 소위원회 활동		○			
	3. 의회 관련 연구용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종합평가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2.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가. 의원연구단체 등록 · 취소, 연구활동 계획 심의 · 변경 승인				○	
	나. 연구활동비 지급		○			
	4.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 · 분석에 관한 사항		○			
	5. 정책연구관련 유관기관 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6.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7.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가. 중요자료			○		
	나. 일반자료		○			
	8. 국내 입법기관 등 업무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 법제지원 및 기타 법제 관리	① 의원 또는 상임위원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 · 검 토에 관한 사항		○			
	2.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가. 소송방침 수립 및 결재				○	
	나.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체결 및 위임장 발부		○			
	다. 쟁송관련 지휘 통제			○		
	라. 쟁송사건 주판과 지정		○			
	마. 소송비용 등 지출		○			
	3.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촉 및 해촉				○	
	나. 의견 조회(자문)		○			
	다. 고문료 지급		○			
	4. 기타 법제관리에 관한 사항		○			
3. 법제관련 간행물 발간	① 의회관련 법규집 편찬 간행			○		
	2. 각종 법무관계 자료 편찬 간행		○			
4. 지방분권 지원	① 지방분권TF 구성·운영계획 수립				○	
	2. 지방분권TF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3. 지방분권TF 회의 결과 보고			○		
	4. 지방분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			
5. 전문도서관 운영	1. 전문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연도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촉·해촉		○			
	3.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					
	가. 도서 구입		○			
	나. 비도서 및 연속간행물·학회간행물 구입		○			
	다. 전자자료 구입		○			
	라. 기증자료 수집 및 관리		○			
	4. 자료 DB 구축 및 관리					
	가. 서지DB 및 원문DB 구축	○				
	나. 자료 분류, 자료등록 관리, 장비 처리	○				
	5. 도서관 자료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료 대출·반납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나. 도서관 회원 관리	○				
	다. 자료 제적 및 폐기		○			
	라. 장서점검 및 자료 보존 관리	○				
	6. 도서관 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7. 타기관과의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7. 예산정책담당관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 운영 연구분석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 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2. 주요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 영 연구분석	3. 재정정책·제도 분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4.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		
	5. 국내·외 의회 예산정책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			
	6. 예산·재정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7.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			
2. 서울시 예산·결산 토론회 개최	① 예산·결산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3.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①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토론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공청회·토론회별 개최 계획			○		
	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라. 공청회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수립				○	
	2.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3.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			
	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5. 예산정책 관련 전문지 간행	1. 「지방재정 연구동향」 발간					
	가. 발간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예산과 정책」 발간					
	가. 전문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6. 의안의 비용추계	① 의안의 비용추계					
	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			
	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다. 의안의 비용추계 통계 작성		○			
8. 전문위원						
1. 의안 청원심사	①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2. 소관위원회 의사일정 작성 통보			○		
	3.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 관련자료의 요구			○		
	4. 청원의 심사보고			○		
2. 자료작성	①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		
	2. 위원회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평가			○		
	3. 의안관련 세미나, 연수회, 공청회 등 자료준비		○			
3. 위원회 행사지원	① 소관위원회 해외연수, 세미나 간담회 등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관련	1. 위원장 사임 및 직무대리 보고			○		
	② 위원의 사임 보고			○		
	③ 간사의 선임 및 사임 보고			○		
	④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승인			○		
	⑤ 소위원회 구성 보고			○		
	⑥ 특별위원회 구성 보고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7. 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방청 등에 관한 사항		○			
	8. 위원회 예산 및 일반행정 업무 처리		○			
	9. 위원회의 지시사항 처리		○			
	10. 위원회의 진정서 처리		○			
5. 교섭단체 운영	1.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운영 전문 위원
	2. 의원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1호

서오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03호(2004.4.10.)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오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387 일대

3. 공원면적 : 58,509.5㎡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1-800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서오릉 근린공원 총괄표

구분	기 정(서오릉 도시자연공원)						구분	변 경(서오릉 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93,593.9	31,107.8	3	562.46	562.46	205	계	58,509.50	14,253.90	3	351.26	351.26	56	감 1,079,143.7㎡
	46,907.8	13,027.9	3	562.46	562.46	57	소계	58,509.50	14,253.90	3	351.26	351.26	56	증 11,601.7㎡
	27,702.0	6,710.7	2	328.46	328.46	27	탐골지구	21,426.70	6,893.13	2	328.46	328.46	36	감 6,275.3㎡
	-	-	-	-	-	-	방아다리 지구	12,521.20	1,179.28	1	22.80	22.80	4	증 12,521.2㎡
	-	-	-	-	-	-	갈현3 지구	278.00	-	-	-	-	-	증 278.0㎡
-	-	-	-	-	-	-	갈현2 지구	11,050.60	479.60	-	-	-	6	증 11,050.6㎡
갈현지구	19,205.8	6,317.2	1	234.0	234.0	27	갈현1 지구	13,233.00	5,701.89	-	-	-	10	감 5,972.8㎡
시설지구외	1,046,686.1	18,079.9	-	-	-	148	-	-	-	-	-	-	-	감 1,046,686.1㎡
시설율 (법정40%)	31,107.8 / 1,093,593.9 x 100 = 2.84%						14,253.90 / 58,509.50 x 100 = 24.36%							
건폐율 (법정15%)	526.46 / 1,093,593.9 x 100 = 0.05%						351.26 / 58,509.50 x 100 = 0.60%							

나. 시설별 총괄표(시설지구)

구 분	기 정(서울특별시자연공원)					변 경(서울시 근린공원)					비고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3,027.90	3	562.46	562.46	57	14,253.90	3	351.26	351.26	56	증 1,429.00㎡
기반 시설	소계	-	-	-	4	6,978.57	-	-	-	13	증 567.37㎡
	도로	4,606.50	-	-	-	5,572.55	-	-	-	-	증 966.05㎡
	광장	1,804.70	-	-	4	1,406.02	-	-	-	13	감 398.68㎡
조경시설	1,874.70	-	-	-	6	1,707.68	-	-	-	5	감 167.02㎡
휴양시설	622.40	-	-	-	14	2,109.45	-	-	-	12	증 1,457.05㎡
유흥시설	299.60	-	-	-	7	-	-	-	-	-	감 299.60㎡
운동시설	1,213.70	-	-	-	6	1,505.80	-	-	-	7	증 292.10㎡
교양시설	2,228.30	2	411.66	411.66	8	1,551.60	1	177.66	177.66	7	감 676.70㎡
편익시설	227.20	-	-	-	-	250.00	1	22.80	22.80	-	증 22.80㎡
관리시설	150.80	1	150.80	150.80	-	150.80	1	150.80	150.80	-	-
특지및기타	-	-	-	-	12	-	-	-	-	12	-

1-2 서오릉 근린공원 탐골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 정(탐골지구)							변 경(탐골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기반시설	합계			27,702.0	6,710.7	-	328.46	328.46	30			21,426.70	6,893.13	-	2	328.46	328.46	36	
		소계			3,763.2	3,763.2	-	-	-	-			3,781.10	3,781.10	-	-	-	-	-
	도로			3,722.0	3,722.0	-	-	-	-			3,626.64	3,626.64	-	-	-	-	-	
	광장	가		41.2	41.2	-	-	-	-	가	-	154.46	154.46	-	-	-	-	-	
		가-1	진관동 387-3일 대	(25.4)	(25.4)	-	-	-	-	-	가-1	진관동 387	118.56	118.56	-	-	-	-	-
조경시설		가-4	진관동 산62-1 일대	(15.8)	(15.8)	-	-	-	-	가-2	진관동 산62-1	35.90	35.90	-	-	-	-	-	증 20.10㎡
	소계			817.7	817.7	-	-	-	-			817.70	817.70	-	-	-	-	-	
	관상용 식수대 (자생초 화원)	나	진관동 387-3일 대	719.0	719.0	-	-	-	5	나	진관동 387-3	719.00	719.00	-	-	-	-	5	
		못	라	진관동 산63-4 일대	98.7	98.7	-	-	-	-	다	진관동 산63-4	98.70	98.70	-	-	-	-	-
	휴양시설	소계			200.2	200.2	-	-	-	8			314.90	314.90	-	-	-	-	9
휴게소		아		200.2	200.2	-	-	-	8	라	-	314.90	314.90	-	-	-	-	9	

구	부호	시설명	기 정(탐골지구)								변 경(탐골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 면적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 면적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아-1	진관동 387 일대		(22.2)	(22.2)	(22.2)	-	-	-	(1)	라-1	진관동 387	22.20	22.20	-	-	-	1	
	아-3	진관동 387-3 일대		(22.2)	(22.2)	(22.2)	-	-	-	(1)	라-2	진관동 387	22.20	22.20	-	-	-	1	
	아-4	진관동 산63-4 일대		(22.2)	(22.2)	(22.2)	-	-	-	(1)	라-3	진관동 387	22.20	22.20	-	-	-	1	
	아-5	진관동 390 일대		(45.4)	(45.4)	(45.4)	-	-	-	(1)	라-4	진관동 390	45.40	45.40	-	-	-	1	
	아-6	진관동 390 일대		(24.2)	(24.2)	(24.2)	-	-	-	(1)	라-5	진관동 390	24.20	24.20	-	-	-	1	
	아-7	진관동 산96-16 일대		(38.0)	(38.0)	(38.0)	-	-	-	(1)	라-6	진관동 388	38.00	38.00	-	-	-	1	
	아-8	진관동 산62-1 일대		(26.0)	(26.0)	(26.0)	-	-	-	(2)	라-7	진관동 387-3	26.00	26.00	-	-	-	2	
				-	-	-	-	-	-	-	라-8	진관동 388-5	29.70	29.70	-	-	-	-	신설
				-	-	-	-	-	-	-	라-9	진관동 산61	72.50	72.50	-	-	-	1	신설

구	부	시설명	기 정(탐골지구)								변 경(탐골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안동읍	시 설				-			-			라-10	진관동 산61	12.50	12.50	-	-	-	-	-	신설
				-			-						49.83	49.83	-	-	-	-	5	
		마		-			-					-	49.83	49.83	-	-	-	-	5	
		마-1		-			-					진관동 산388-5	19.35	19.35	-	-	-	-	2	신설
		마-2		-			-					진관동 산388-5	14.57	14.57	-	-	-	-	1	신설
교 양	시 설	마-3		-			-					진관동 산388-5	10.30	10.30	-	-	-	-	1	신설
		마-4		-			-					진관동 산388-5	5.61	5.61	-	-	-	-	1	신설
				1,551.6	1,551.6	-	1	177.66	177.66	7			1,551.60	1,551.60	-	1	177.66	177.66	7	
		식물원 (자연 학습장)	진관동 390 일대 차	1,264.6	1,264.6	-	-	-	-	7	바	진관동 390	1,264.60	1,264.60	-	-	-	-	7	
		전시장 (목공 전시장)	진관동 산62-1외 파	287.0	287.0	-	1	177.66	177.66	-	사	진관동 산63-4	287.00	287.00	-	1	177.66	177.66	-	

구	부	분	기 정(탑골지구)										변 경(탑골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편 이 시 설	소 계	주 차 장			227.2	227.2	-	-	-	-	-	-	227.20	227.20	-	-	-	-	-	-		
			타			227.2	227.2	-	-	-	-	-	아	-	227.20	227.20	-	-	-	-	-	
			타-1	진관동 387 일대	(98.6)	(98.6)	-	-	-	-	-	아-1	진관동 387	98.60	98.60	-	-	-	-	-	-	-
			타-2	진관동 387-3 일대	(59.1)	(59.1)	-	-	-	-	-	아-2	진관동 387-3	59.10	59.10	-	-	-	-	-	-	-
			타-3	진관동 387 일대	(69.5)	(69.5)	-	-	-	-	-	아-3	진관동 388	69.50	69.50	-	-	-	-	-	-	-
관 리 시 설	소 계	관 리 사 무 소			150.8	150.8	-	1	150.8	150.8	-	-	150.80	150.80	-	1	150.80	150.80	-	-		
			2	진관동 387 일대	150.8	150.8	-	1	150.8	150.8	-	1	진관동 387	150.80	150.80	-	1	150.80	150.80	-	-	
부 지 및 기 타	소 계	부 지 및 기 타			20,991.3	-	-	-	-	-	-	-	14,533.57	-	-	-	-	-	-	10		
			녹 지			20,991.3	-	-	-	-	-	-	-	-	14,533.57	-	-	-	-	-	10	

1-3 서오릉 근린공원 탐골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303.00	3,722.00				
변 경					1,261.30	3,626.64				
당 초	소 로	계			441.00	2,141.00				
변 경					360.98	1,901.33				
폐 지		3	4	5	335.00	1,675.00	진입로	탐골약수터	지구경계	
폐 지		3	5	4	35.00	140.00	진입로	소 3-4	보덕사	
폐 지		3	6	4	50.00	200.00	진입로	소 3-4	지구경계	
폐 지		3	7	6	21.00	126.00	진입로	소 3-4	광장 가-1	
신 설		3류	3-1	6.0	20.69	126.39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1	
신 설		3류	3-2	4.0-7.8	257.64	1,372.5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3류	3-3	4.0-14.0	21.65	102.64	진입로	소로 3-2	공원경계	
신 설		3류	3-3	3.8-7.0	61.00	299.7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1	
당 초	산책로	계			862.00	1,581.00				
변 경					900.32	1,725.31				
폐 지			24	2	120.00	242.00	등산로	지구경계	지구경계	
폐 지			25	1.5	40.00	60.00	연결로	산 24	산 27	
폐 지			26	1	32.00	32.00	연결로	산 25	산 27	
폐 지			27	2.5	100.00	250.00	산책로	소 3-7	산 32	
폐 지			28	2	18.00	38.00	연결로	산 27	산 31	
폐 지			29	1.5	13.00	19.50	연결로	광장 가-1	산 27	
폐 지			30	3	12.00	36.00	연결로	소 3-7	산 31	
폐 지			31	2	122.00	244.00	산책로	산 32	산 32	
폐 지			32	2.5	103.00	257.50	산책로	산 31	소 3-4	
폐 지			33	1.5	22.00	33.00	농로	산 32	산 3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34	1.5	30.00	45.00	농로	산 32	산 31	
폐 지			35	1.5	30.00	45.00	농로	산 32	산 31	
폐 지			36	1.5	22.00	33.00	농로	산 32	산 31	
폐 지			37	2	6.00	12.00	연결로	소 3-4	산 31	
폐 지			38	1.2	80.00	96.00	산책로	소 3-4	주차장 타-3	
폐 지			39	1.7	7.00	12.00	진입로	소 3-4	산 40	
폐 지			40	1.2	95.00	114.00	산책로	산 39	산 39	
폐 지			41	1.2	10.00	12.00	연결로	산 40	산 40	
신 설			1	1.2-2.0	112.74	226.1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2	1.0	31.38	32.4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신 설			3	1.5	40.30	60.88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5	
신 설			4	1.5	12.51	18.83	연결로	광장,가-1	산책로 5	
신 설			5	2.5	100.52	251.54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0	
신 설			6	2.0	17.66	51.14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10	
신 설			7	3.0	10.50	35.27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0	
신 설			8	1.5-4.0	19.51	32.89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신 설			9	1.5	26.22	45.58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신 설			10	2.5	102.59	257.13	산책로	산책로 12	소로 3-2	
신 설			11	1.5-4.0	26.22	68.33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신 설			12	2.0	121.65	243.70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0	
신 설			13	2.0-4.0	5.23	11.65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2	
신 설			14	1.5-9.5	15.33	33.71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신 설			15	1.2	76.23	95.61	연결로	주차장 아-3	소로 3-2	
신 설			16	1.7	6.94	11.87	산책로	소로 3-2	녹지대	
신 설			17	1.0-3.5	9.78	11.41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9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18	1.2	47.00	97.72	진입로	녹지대	산책로 16	
신 설			19	1.2	30.97	37.15	진입로	녹지대	산책로 16	
신 설			20	1.0	23.20	25.21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1	
신 설			21	1.2	63.84	77.11	연결로	소로 3-4	휴게소 라-10	

2-1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신설)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방아다리지구_신설)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2,521.20	1,179.28	1	22.80	22.80	4	신설	
	기반시설	-	-	-	-	-	1,060.59	1,060.59	-	-	-	-	-	
소계		-	-	-	-	-	1,060.59	1,060.59	-	-	-	-	-	
도로	-	-	-	-	-	-	1,060.59	1,060.59	-	-	-	-	-	
휴양시설	-	-	-	-	-	-	53.64	53.64	-	-	-	2		
운동시설	-	-	-	-	-	-	42.25	42.25	-	-	-	2		
편익시설	-	-	-	-	-	-	22.80	22.80	1	22.80	22.80	-		
복지 및 기타	-	-	-	-	-	-	11,341.92	-	-	-	-	-		

2-2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신설)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방아다리지구 신설)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건축물 (가)	공작물 (가)							
기반시설	합계			-	-	-	-	-	-	-	12,521.20	1,179.28	-	1	22.80	22.80	4	신설
	소계			-	-	-	-	-	-	-	1,060.59	1,060.59	-	-	-	-	-	
	도로			-	-	-	-	-	-	-	1,060.59	1,060.59	-	-	-	-	-	
휴양시설	소계			-	-	-	-	-	-	-	53.64	53.64	-	-	-	-	2	
	휴게소			-	-	-	-	-	가	-	53.64	53.64	-	-	-	-	2	
					-	-	-	-	-	가-1	진관동 382-2	36.00	36.00	-	-	-	-	1
운동시설				-	-	-	-	-	가-2	진관동 384-1	17.64	17.64	-	-	-	-	1	
	소계			-	-	-	-	-	-	-	42.25	42.25	-	-	-	-	2	
	체력 단련장			-	-	-	-	-	나	진관동 382-2	42.25	42.25	-	-	-	-	2	
편익시설	소계			-	-	-	-	-	-	-	22.80	22.80	-	1	22.80	22.80	-	
	화장실			-	-	-	-	-	1	진관동 382-1	22.80	22.80	-	1	22.80	22.80	-	
복지 및 기타	소계			-	-	-	-	-	-	-	11,341.92	-	-	-	-	-	-	
	녹지			-	-	-	-	-	-	-	11,341.92	-	-	-	-	-	-	

2-3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신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509.70	1,060.59				신설
신 설		계			80.20	405.69				
신 설	소 로	3류	3-1	2.5-4.0	65.2	291.68	진입로	공원경계	화장실 1	
신 설		3류	3-2	7.0	15.0	114.01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신 설		계			429.50	654.90				
신 설	산책로		1	2.0	185.0	332.0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신 설			2	1.2	25.9	31.69	연결로	산책로 1	체력단련장 나	
신 설			3	1.2-1.5	65.0	89.9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신 설			4	1.2	7.8	9.95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1	
신 설			5	1.2	29.8	36.2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0	
신 설			6	1.5	29.5	45.0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신 설			7	1.5	10.6	17.52	연결로	산책로 6	산책로 6	
신 설			8	1.0	13.4	14.30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신 설			9	1.0	17.2	18.07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신 설			10	1.2	37.6	48.13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2	
신 설			11	1.2	7.7	11.94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2	

3-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신설)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갈현3지구_신설)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보)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보)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278.00	-	-	-	-	-	신설
녹지 및 기타	-	-	-	-	-	-	278.00	-	-	-	-	-	

3-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신설)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갈현3지구_신설)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연면적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설
	부지 및 기타	소계		-	-	-	-	-	-	-	-	-	-	-	-	-	-	-	-	-	-
		녹지		-	-	-	-	-	-	-	-	-	-	-	-	-	-	-	-	-	-

3-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신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4-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신설)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갈현2지구_신설)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탕)	바다면적 (㎡)	연면적 (㎡)				동수 (탕)	바다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1,050.60	479.60	-	-	-	6	신설
	-	-	-	-	-	-	479.60	479.60	-	-	-	4	
기 반 시 설	-	-	-	-	-	-	245.60	245.60	-	-	-	-	
	-	-	-	-	-	-	234.00	234.00	-	-	-	4	
복 지 및 기 타	-	-	-	-	-	-	10,571.00	-	-	-	-	2	

4-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신설)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갈현2지구 신설)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기초면적 (㎡)	연면적 (㎡)	건 축 물	연면적 (㎡)	비단면적 (㎡)	연면적 (㎡)	구조	기초면적 (㎡)	연면적 (㎡)	
기반시설	합계			-	-	-	-	-	-	-	-	-	-	-	-	신설
	소계			-	-	-	-	-	-	-	-	-	-	-	-	
	도로			-	-	-	-	-	-	-	-	-	-	-	-	
	광장			-	-	-	-	-	-	-	-	-	-	-	-	
복지 및 기타	소계			-	-	-	-	-	-	-	-	-	-	-	-	
	복지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4-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신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138.00	245.60				
신 설		계			138.00	245.60				
신 설	산책로		1	1.2	38.0	45.6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2	2.0	100.0	200.0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	

5-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갈현지구)						변 경(갈현1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9,205.8	6,317.2	1	234.0	234.0	27	13,233.00	5,701.89	-	-	-	10	감 615.31㎡
기 반 시 설	소계	2,648.0	-	-	-	-	1,657.28	1,657.28	-	-	-	9	감 990.72㎡
	도로	884.5	-	-	-	-	639.72	639.72	-	-	-	-	감 244.78㎡
	광장	1,763.5	1,763.5	-	-	-	1,017.56	1,017.56	-	-	-	9	감 745.94㎡
조경시설	1,057.0	1,057.0	-	-	-	1	889.98	889.98	-	-	-	-	감 167.02㎡
휴양시설	422.2	422.2	-	-	-	6	1,740.91	1,740.91	-	-	-	1	증 1,318.71㎡
유희시설	299.6	299.6	-	-	-	7	-	-	-	-	-	-	감 299.60㎡
운동시설	1,213.7	1,213.7	-	-	-	6	1,413.72	1,413.72	-	-	-	-	증 200.02㎡
교양시설	676.7	676.7	1	234.0	234.0	1	-	-	-	-	-	-	감 676.70㎡
복지 및 기타	12,888.6	-	-	-	-	2	7,531.11	-	-	-	-	-	감 5,357.49㎡

5-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갈현지구)							변경(갈현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시설	합계			19,205.8	6,317.2	-	1	234.0	234.0	27		13,233.00	5,701.89	-	-	-	10	
	소계			2,648.0	2,648.0	-	-	-	-	4		1,657.28	1,657.28	-	-	-	9	
	도로			884.5	884.5	-	-	-	-	-	-	639.72	639.72	-	-	-	-	
	광장	가		1,763.5	1,763.5	-	-	-	-	4가	-	1,017.56	1,017.56	-	-	-	9	
	진입광장	가-1	갈현동 228-61	(206.4)	(206.4)	-	-	-	-	1가-1	갈현동 228-61	428.70	428.70	-	-	-	1	증222.3㎡
조경시설	다목적광장	가-2	갈현동 228-61 228-100	(1,557.1)	(1,557.1)	-	-	-	-	3가-2	갈현동 228-100	588.86	588.86	-	-	-	8	감968.24㎡
	소계			1,057.0	1,057.0	-	-	-	-	1		889.98	889.98	-	-	-	-	
	연못	나	갈현동 228-100	78.2	78.2	-	-	-	-	-	-	-	-	-	-	-	-	폐지
	잔디밭	다	갈현동 228-61 228-100	978.8	978.8	-	-	-	-	1나	갈현동 228-61	37.88	37.88	-	-	-	-	감940.92㎡
	초화원					-	-	-	-	-	다	갈현동 228-61	852.10	852.10	-	-	-	신설
합계				422.2	422.2	-	-	-	-	6		1,740.91	1,740.91	-	-	-	1	

구	부	시 설 명	기 정(갈현지구)								변 경(갈현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양식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휴게 데크	라	갈현동 228-16	92.1	92.1	92.1	-	-	-	1	라	갈현동 228-16	92.10	92.10	-	-	-	1	
		파크 니장	마	갈현동 산56-2	330.1	330.1	330.1	-	-	-	5	-	-	-	-	-	-	-	-	폐지
		휴게소						-	-	-	-	마	갈현동 228-100	1,648.81	1,648.81	-	-	-	-	신설
안 회 시 설		소계			299.6	299.6	299.6	-	-	-	7	-	-	-	-	-	-	-	-	
		어린이 놀이터	바	갈현동 228-100	299.6	299.6	299.6	-	-	-	7	-	-	-	-	-	-	-	-	폐지
안 회 시 설		소 계			1,213.7	1,213.7	1,213.7	-	-	-	6			1,413.72	1,413.72	-	-	-	-	
		베드민 턴장	사	갈현동 228-61	471.3	471.3	471.3	-	-	-	-	-	-	-	-	-	-	-	-	베드민턴장→ 테니스장
		농구장	아	갈현동 228-61	693.1	693.1	693.1	-	-	-	2	-	-	-	-	-	-	-	-	농구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자	갈현동 228-61	49.3	49.3	49.3	-	-	-	4	-	-	-	-	-	-	-	-	폐지

구	부	시 설 명	기 정(갈현지구)								변 경(갈현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도	바닥면적 (㎡)	건 축 물 연면적 (㎡)	공작물 응답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도	바닥면적 (㎡)		건 축 물 연면적 (㎡)
		테니스장			-		-	-	-	-	바	갈현동 228-100	1,413.72	1,413.72	-	-	-	-	-	중 249.32㎡
교 양 시 설		소계			676.7	676.7	-	1	234.0	234.0	1		-	-	-	-	-	-	-	
		근린문 화센터	(1)	갈현동 228-100	381.7	381.7	목재 + 벽돌	1	234.0	234.0	-	-	-	-	-	-	-	-	-	폐지
		아외 무대	차	갈현동 산 58-1 산 56-2	295.0	295.0		-	-	-	1	-	-	-	-	-	-	-	-	폐지
부 지 및 기 타		소계			12,888.6	12,888.6	-	-	-	-	2		7,531.11	-	-	-	-	-	-	
		녹지			12,888.6	-	-	-	-	-	2		-	7,531.11	-	-	-	-	-	

5-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405.00	884.50				
변 경					215.83	639.72				
당 초	산책로	계			405.00	884.50				
변 경					215.83	639.72				
폐 지			1	3	123.00	369.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	다목적광장 가-2	
폐 지			2	4	3.00	12.00	진입로	기존도로	배드민턴장	
폐 지			3	6	15.00	90.00	진입로	기존도로	산책로1 (228-61)	
폐 지			4	4	7.00	28.00	연결로	다목적광장 가-2	산책로5 (228-100)	
폐 지			5	1.5	40.00	60.00	등산로	산책로4 (228-100)	지구경계 (산56-2)	
폐 지			6	1.5	108.00	162.00	산책로	산책로5 (산56-2)	피크닉장	
폐 지			7	1.5	34.00	51.00	연결로	산책로4 (228-100)	야외무대	
폐 지			8	1.5	75.00	112.50	등산로	진입부 (산56-2)	지구경계 (산53-4)	
신 설			1	2.8	212.30	631.45	진입로	잔디밭 다	광장 가-2	
신 설			2	2.0-2.7	3.53	8.27	산책로	공원 경계	배드민턴장 바	

조성계획도 [변경전]

서오릉도시자연공원(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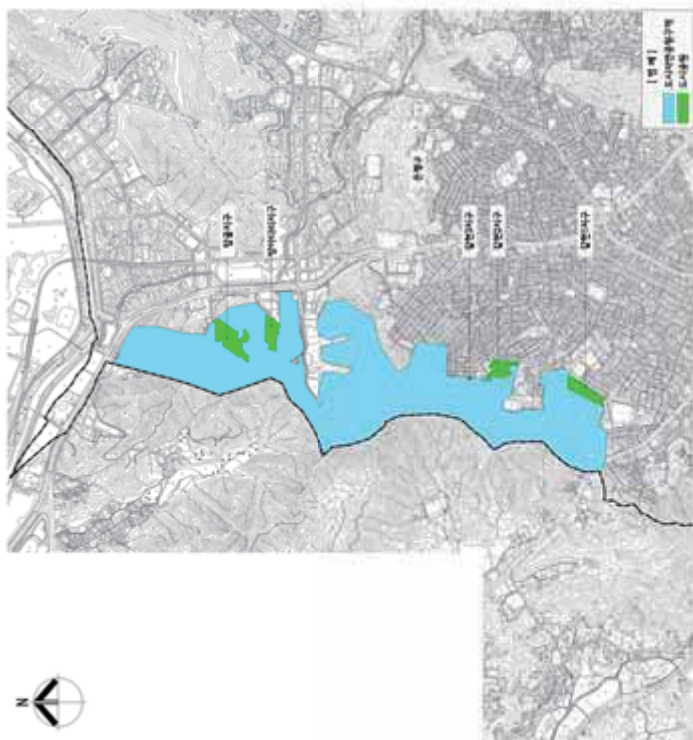


■ 단 계

구 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 계	1,000,000.0	100.00	1,000,000.0	100.00	100.00
자연경관지구	400,000.0	40.00	400,000.0	40.00	40.00
문화지구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
체육지구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
관광지구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
주거지구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
산업지구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
수계지구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
기타	100,000.0	10.00	100,000.0	10.00	10.00

위 치 도

서오릉 근린공원



● 개요

구분	면적	면적비율	비고
01. 송정동	23,426.70		
02. 송정동	13,131.20		
03. 송정동	280.275		
04. 송정동	11,500.00		
05. 송정동	13,233.20		

조성계획도 [변경후]

감현3지구



■ 사업설계도서

구분	부토	부토면적 (㎡)	지상면적 (㎡)	구도 면적 (㎡)	건축물면적 (㎡)	공유면적 (㎡)
합계		275.00	275.00	-	-	-
부토	부토	275.00	275.00	-	-	-
부토	부토	275.00	275.00	-	-	-

Scale: 1:500

조성계획도 [변경후]

감현1지구



■ 사업지 표시

구분	구분	면적 (㎡)	부사면적 (㎡)	시정면적 (㎡)	공공 구분	건축물(㎡)	불합용 면적(㎡)
기타	합계	13,223.00	5,707.89	-	-	-	-
시설	소계	1,657.28	1,657.28	-	-	-	-
	도로	639.72	639.72	-	-	-	-
	합계	1,017.56	1,017.56	-	-	-	-
	가-1	428.79	428.79	-	-	-	-
	가-2	588.76	588.76	-	-	-	-
소공	소계	889.59	889.59	-	-	-	-
	단-1	37.89	37.89	-	-	-	-
	소공합계	851.70	851.70	-	-	-	-
합계	소계	1,729.12	1,729.12	-	-	-	-
시설	합계	88.37	88.37	-	-	-	-
	가-1	1,540.87	1,540.87	-	-	-	-
	가-2	-	-	-	-	-	-
합계	소계	1,652.25	1,652.25	-	-	-	-
시설	합계	1,413.22	1,413.22	-	-	-	-
	가-1	2,723.11	2,723.11	-	-	-	-
	가-2	2,031.11	2,031.11	-	-	-	-

Scale 1:1,0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2호

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86호(1989.6.20.)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봉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은평구 구산동 산136-5 일대

3. 공원면적 : 173,394.2㎡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1-800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봉산 근린공원 총괄표

구분	기 정(봉산도시자연공원)						구분	변 경(봉산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기)			
공원시설 구역	계	1,511,197	52,808.3	8	888.9	938.9	309	계	173,394.20	46,594.08	5	597.72	647.72	136	합 1,337,802.80㎡
	소계	624,458	36,284	8	888.9	938.9	106	소계	173,394.20	46,594.08	5	597.72	647.72	136	합 451,063.80㎡
	신사지구	34,355	4,769	1	48.0	48.0	5	-	-	-	-	-	-	-	합 34,355.00㎡
	수곡사지구	33,305	3,794.5	4	548.9	598.9	-	수곡사지구	79,147.70	27,263.32	4	545.52	595.52	28	합 437,700.30㎡
	시설지구 외 '가' 구역	483,543	7,886	-	-	-	58								
	-	-	-	-	-	-	-								
-	-	-	-	-	-	-	산새마을 1지구	17,417.70	2,124.35	-	-	-	18	증 17,417.70㎡	
증산 응산지구	46,000	13,782	3	292	292	91	증산지구	33,392.30	11,549.82	1	52.20	52.20	34	합 12,607.70㎡	
수색 수색지구	27,255	6,052	-	-	-	10	수색지구	33,374.00	4,259.73	-	-	-	21	증 6,119㎡	
시설 지구외	소계	886,739 (1,370,283)	16,524 (24,410.8)	-	-	-	145 (203)	-	-	-	-	-	-	-	(시설지구외 '가' 구역 제외)
	나	344,050	6,985	-	-	-	65	-	-	-	-	-	-	-	합 344,050.00㎡
	다	370,900	6,915	-	-	-	66	-	-	-	-	-	-	-	합 370,900.00㎡
	라	171,789	2,624	-	-	-	14	-	-	-	-	-	-	-	합 171,789.00㎡
시설율 (법정40%)	52,808.30 / 1,511,198.00 x 100 = 3.49%						46,594.08 / 173,394.20 x 100 = 26.87%								
건폐율 (법정10%)	888.9 / 1,511,198.0 x 100 = 0.06%						597.72 / 173,394.20 x 100 = 0.35%								

나. 시설별 총괄표(시설지구)

구 분	기 정(봉산도시자연공원)					변 경(봉산권리공원)					비고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 시설	계	52,808.30	8	888.90	938.90	309	46,594.08	5	597.72	647.72	136	감 6,214.22㎡
	소계	23,514.30	-	-	-	-	9,208.43	-	-	-	-	감 14,305.87㎡
	도로	20,377.30	-	-	-	3	8,018.54	-	-	-	-	감 12,358.76㎡
	광장	3,137.00	-	-	-	-	1,189.89	-	-	-	-	감 1,947.11㎡
조경시설		1,962.00	-	-	-	73	22,275.98	-	-	-	-	증 20,313.98㎡
휴양시설		418.00	-	-	-	-	1,374.39	-	-	-	62	증 956.39㎡
유희시설		1,194.00	-	-	-	5	1,248.64	-	-	-	15	증 54.64㎡
운동시설		20,981.00	-	-	-	225	8,742.34	-	-	-	48	감 12,238.66㎡
교양시설		2,323.00	1	360.00	360.00	-	1,355.00	1	360.00	360.00	-	감 968㎡
편익시설		1,309.00	3	218.90	268.90	3	1,105.70	3	147.72	197.72	3	감 203.3㎡
관리시설		1,107.00	4	310.00	310.00	-	370.00	1	90.00	90.00	8	감 737㎡
도시농업시설		-	-	-	-	-	913.60	-	-	-	-	증 913.00㎡
녹지및기타		-	-	-	-	-	-	-	-	-	-	

다. <변경> 지구별 세부조서
1-1 봉산 근린공원 수국사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수국사지구, 시설지구와 '가' 구역)						변 경(수국사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3,305	3,794.5	4		548.90	598.90	-	79,147.70	27,263.32	4	545.52	595.52	28	증 15,582.02㎡
	483,543	7,886	-	-	-	58								
기 반 시 설	5,448.30	5,448.30	-	-	-	-	-	2,546.53	2,546.53	-	-	-	-	감 2,901.77㎡
	1,318.50	1,318.50	-	-	-	-	-	2,227.40	2,227.40	-	-	-	-	감 3,220.9㎡
	4,129.80	4,129.80	-	-	-	-								
	광장	-	-	-	-	-	-	319.13	319.13	-	-	-	-	증 319.13㎡
조경시설	-	-	-	-	-	-	4	21,912.66	21,912.66	-	-	-	-	증 21,912.66㎡
휴양시설	180.00	180.00	-	-	-	-	-	508.13	508.13	-	-	-	12	증 155.13㎡
	173.00	173.00	-	-	-	-								
유흥시설	325.00	325.00	-	-	-	-	-	325.00	325.00	-	-	-	-	325㎡

구 분	기 정(수국사지구, 시설지구와 '가' 구역)						변 경(수국사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	-	-	-	-	-	-	-	-	-	-	12	감 3,584㎡
	3,584.00	3,584.00	-	-	-	54	-	-	-	-	-	-	
교양시설	1,490.00	1,355.00	1	360.00	360.00	-	1,490.00	1,355.00	1	360.00	360.00	-	감 1,355㎡
편익시설	346.00	316.00	2	110.90	160.90	-	316.00	316.00	2	95.52	145.52	-	
관리시설	300.00	300.00	1	78.00	78.00	-	300.00	300.00	1	90.00	90.00	4	
녹지 및 기타	29,345.50	-	-	-	-	-	51,749.38	-	-	-	-	-	감 453,117.32㎡
	475,656.20	-	-	-	-	-							

1-2 봉산 근린공원 수국사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수국사지구, 시설지구와 '가' 구역)										변경(수국사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기반시설	합계			33,305	3,794.5	-	4	548.9	598.9	-			79,147.70	27,263.32	-	4	545.52	595.52	28	
	소계			5,448.3	5448.3	-	-	-	-	-			2,546.53	2,546.53	-	-	-	-	-	
	도로			1,318.5	1,318.5	-	-	-	-	-			2,227.40	2,227.40	-	-	-	-	-	
				4,129.8	4,129.8	-	-	-	-	-					-	-	-	-	-	
	광장			-	-	-	-	-	-	-	가	구산동 산136-5	319.13	319.13	-	-	-	-	-	신설
조경시설	소계			-	-	-	-	-	-	4			21,912.66	21,912.66	-	-	-	-	-	
	관상용식 수대			-	-	-	-	-	-	-	나	구산동 산136-5	21,912.66	21,912.66	-	-	-	-	-	신설
		①			-	-	-	-	-	-	4			-	-	-	-	-	-	폐지
	①-1	길현동 산 136-5임	-	-	-	-	-	-	-	(1)			-	-	-	-	-	-	-	
	①-2	길현동 산 136-8임	-	-	-	-	-	-	-	(1)			-	-	-	-	-	-	-	
	①-3	길현동 산 136-13임	-	-	-	-	-	-	-	(1)			-	-	-	-	-	-	-	

구분	시설명	기정(수곡사지구, 시설지구의 '가' 구역)										변경(수곡사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면적 (㎡)	연면적 (㎡)								비면적 (㎡)	연면적 (㎡)		
		①-4	신사동 산 31-1임							(1)			-	-	-	-	-	-	-	-
	소계			353.0	353.0	-	-	-	-	-			508.13	508.13	-	-	-	-	12	
하당시정				-	-	-	-	-	-	-	다		508.13	508.13	-	-	-	-	-	
	가	갈현동 산 135-5임	180.0	180.0	-	-	-	-	-	-	다-1	구산동 산135-5	180.00	180.00	-	-	-	-	-	
			-	-	-	-	-	-	-	-	다-2	구산동 산136-4	328.13	328.13	-	-	-	-	-	신설
	가		173.0	173.0	-	-	-	-	-	-			-	-	-	-	-	-	-	폐지
	가-1	갈현동 산 136-5임	(63.0)	(63.0)	-	-	-	-	-	-			-	-	-	-	-	-	-	
	가-2	갈현동 산 136-5임	(36.0)	(36.0)	-	-	-	-	-	-			-	-	-	-	-	-	-	
		가-3	갈현동 산 136-13임	(74.0)	(74.0)	-	-	-	-	-			-	-	-	-	-	-	-	
	파고라			-	-	-	-	-	-	-	①	광장	-	-	-	-	-	-	2	신설

한양시정

구	분	시 설 명	기 정(수곡사지구, 시설지구의 '기' 구역)								변 경(수곡사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바다면적 (㎡)	연면적 (㎡)								바다면적 (㎡)	연면적 (㎡)		
유 형 시 설		평의자			-	-	-	-	-	-	②	광장	-	-	-	-	-	-	6	신설
		앞음벽			-	-	-	-	-	-	③	광장	-	-	-	-	-	-	4	신설
		소 계			325.0	325.0	-	-	-	-	-		325.00	325.00	-	-	-	-	-	
		어린이놀이터	나	갈현동 산135-5임	325.0	325.0	-	-	-	-	-	라	구산동 산135-5	325.00	325.00	-	-	-	-	-
안 전 병 용 시 설		소 계			3,584.0	3,584.0	-	-	-	-	-		-	-	-	-	-	-	12	
		체력 단련 기구			-		-	-	-	-	④	광장	-	-	-	-	-	-	12	신설
		나			2,144.0	2,144.0	-	-	-	-	54		-	-	-	-	-	-	-	폐지
		나-1	갈현동 산 136-2임	(579.0)	(570.0)	-	-	-	-	(12)			-	-	-	-	-	-	-	
	나-2	갈현동 산 136-8임	(334.0)	(334.0)	-	-	-	-	-	(9)		-	-	-	-	-	-	-	-	
	나-3	구산동 산 61임 일대	(173.0)	(173.0)	-	-	-	-	-	(9)		-	-	-	-	-	-	-	-	

구	분	시	설	명	기 정(수곡사지구, 시설지구의 '기' 구역)										변 경(수곡사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면적 (㎡)	면적 (㎡)	연면적 (㎡)								비면적 (㎡)			면적 (㎡)	연면적 (㎡)
					나-4	길원동 산 141-9임	(448.0)	(448.0)	-	-	-	-	(1)			-	-	-	-	-	-	-			
					나-5	신사동 산 31-1임	(162.0)	(162.0)	-	-	-	-	-	(4)			-	-	-	-	-	-	-	-	
					나-6	신사동 산 29-10	(448.0)	(448.0)	-	-	-	-	-	(5)			-	-	-	-	-	-	-	-	
					다		1,440.0	1,440.0	-	-	-	-	-	-			-	-	-	-	-	-	-	-	폐지
					다-1	역촌동 산 31-1임	(352.0)	(352.0)	-	-	-	-	-	-			-	-	-	-	-	-	-	-	
					다-2	신사동 산 30임 역촌동 산 31-1임	(810.0)	(810.0)	-	-	-	-	-	-			-	-	-	-	-	-	-	-	-
					다-3	신사동 산 48-2임 신사동 산 31임	(278.0)	(278.0)	-	-	-	-	-			-	-	-	-	-	-	-			
					소 계		1,490.0	1,355.0	-	1	360.0	360.0	360.0	-			1,490.00	1,355.00	-	1	360.0	360.0	360.0	-	
					1	전시관	길원동 산 135-100	1,080.0	945.0	목조	1	360.0	360.0	360.0	-	다	구산동 산135-1	1,080.00	945.00	목조	1	360.0	360.0	360.0	-

구분	시설명	기정(수국사지구, 시설지구의 '기' 구역)										변경(수국사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	연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의시설	아외극장	다	갈현동 산 135-59	410.0	410.0	-	-	-	-	-	바	구산동 산135-5	410.00	410.00	-	-	-	-	-
	소계			346.0	316.0	-	2	110.9	160.9	-			316.00	316.00	-	2	95.52	145.52	-
	음수장	라	갈현동 산135-59	80.0	80.0	-	-	-	-	-	사	구산동 산135-5	80.00	80.00	-	-	-	-	-
	전망대	3	갈현동 산135-59	156.0	156.0	목조	1	50.4	100.4	-	아	구산동 산135-5	156.00	156.00	목조	1	50.4	100.4	-
	화장실	2	갈현동 산135-59	110.0	80.0	목조	1	60.5	60.5	-	자	구산동 산135-5	80.00	80.00	목조	1	45.12	45.12	-
관리시설	소계			300.0	300.0	-	1	79.92	79.92	-			300.00	300.00	-	1	90.00	90.00	4
	관리사무소	4	갈현동 산135-19 갈현동 산139-99	300.0	300.0	목조	1	78.0	78.0	-	차	구산동 산135-1	300.00	300.00	-	1	90.00	90.00	-

구	분	시 설 명	기 정(수국사지구, 시설지구와 '기' 구역)										변 경(수국사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단면적 (㎡)	연면적 (㎡)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단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방향 안내판			-	-	-	-	-	-	⑤	전지역	-	-	-	-	-	-	-	4	신설
		소계			505,001.7	-	-	-	-	-			51,749.38	-	-	-	-	-	-	-	
		총지			29,345.5	-	-	-	-	-			51,749.38	-	-	-	-	-	-	-	감 453,252.32 ㎡
					475,656.2	-	-	-	-	-											

1-3 봉산 근린공원 수국사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4,141	6,516.8				
변 경					1,381.16	2,227.40				
당 초	소로	계			25.0	25.0				
변 경					-	-				
폐 지		3	1	10.0	25.0	250.0				시설외지구 '가' 구역
당 초	산책로	계			4,116	5,198.3				
변 경					1,381.16	2,227.40				
폐 지			1	1.5	18	27	산책로	기존입구	어린이놀이터	
폐 지			2	1.5	18	27	산책로			
폐 지			3	1.5	26	39	산책로			
폐 지			4	1.5	58	87	산책로	북측경계	전시관	
폐 지			5	1.5	142	213	산책로			
폐 지			6	1.5	55	82.5	산책로		음수장	
폐 지			7	1.5	233	349.5	산책로	남측경계	소5분기점	
폐 지			8	1.5	136	204	산책로	소7분기점	소7분기점	
폐 지			9	1.5	193	289.5	산책로	소7분기점	소5분기점	
폐 지			1	1.2	245.0	294.0	등산로	소로	휴게소1	
폐 지			2	1.2	67.0	80.4	등산로	휴게소1	등산로	
폐 지			3	1.2	40.0	48.0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 지			4	1.2	90.0	108.0	등산로	등산로	휴게소2	
폐 지			5	1.2	289.0	346.8	등산로	휴게소2	체력단련장1	
폐 지			6	1.2	252.0	302.4	등산로	체력단련장2	체력단련장1	
폐 지			7	1.1	46.0	50.6	등산로	외곽경계부	체력단련장2	
폐 지			8	1.2	90.0	108.0	등산로	외곽경계부	외곽경계부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9	1.2	133.0	159.6	등산로	체력단련장1	휴게소3	
폐 지			10	1.2	31.0	37.2	등산로	휴게소3	체력단련장4	
폐 지			11	1.2	196.0	235.2	등산로	체력단련장3	체력단련장4	
폐 지			12	1.2	8.0	9.6	등산로	체력단련장4	등산로	
폐 지			13	1.2	86.0	103.2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 지			14	1.2	149.0	178.8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 지			15	1.2	883.0	1059.6	등산로	체력단련장3	배드민턴장1	
폐 지			16	1.2	22.0	26.4	등산로	배드민턴장1	배드민턴장5	
폐 지			17	1.2	237.0	284.4	등산로	체력단련장5	외곽경계부	
폐 지			18	1.2	127.0	152.4	등산로	체력단련장3	등산로	
폐 지			19	1.2	26.0	31.2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 지			20	1.2	40.0	48.0	등산로	등산로	체력단련장6	
폐 지			21	1.2	35.0	42.0	등산로	체력단련장6	배드민턴장2	
폐 지			22	1.2	66.0	79.2	등산로	배드민턴장6	배드민턴장2	
폐 지			23	1.2	17.0	20.4	등산로	배드민턴장3	외곽경계부	
폐 지			24	1.2	62.0	74.4	등산로	배드민턴장6	외곽경계부	
신 설			1	2.0	6.2	12.4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신 설			2	2.0	84.6	169.6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3	
신 설			3	2.0	54.6	109.22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4	2.0	30.4	60.97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5	2.0	60.2	120.71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6	1.0	59.9	59.87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7	1.5	77.2	115.86	산책로	산책로 6	공원경계	
신 설			8	1.5	189.73	306.32	진입로	공원 경계	공원경계	
신 설			9	2.5-4.5	7.53	21.90	연결로	전시관 마	산책로 8	
신 설			10	1.5	293.09	439.47	진입로	산책로 8	공원경계	
신 설			11	1.5	182.85	273.85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10	
신 설			12	1.5	46.77	70.30	진입로	공원 경계	휴게소 다-2	
신 설			13	1.5	21.02	31.52	진입로	공원 경계	휴게소 다-2	
신 설			14	1.5	46.37	69.70	진입로	휴게소 다-2	공원경계	
신 설			15	1.5	119.07	178.44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0	
신 설			16	1.5	16.09	26.16	진입로	어린이 놀이터 라	공원경계	
신 설			17	1.5-5.5	7.27	15.76	연결로	산책로 10	화장실 자	
신 설			18	1.5-5.2	23.93	63.67	진입로	공원 경계	산책로 10	
신 설			19	1.5	54.34	81.52	연결로	산책로 18	음수장 사	

2-1 봉산 근린공원 산세마을2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산세마을2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	10,062.50	1,396.86	-	-	-	35	신설
	-	-	-	-	-	-	1,073.36	1,073.36	-	-	-	-	
	-	-	-	-	-	-	785.36	785.36	-	-	-	-	
	-	-	-	-	-	-	288.00	288.00	-	-	-	-	
기 반 시 설	-	-	-	-	-	-	86.50	86.50	-	-	-	16	
	-	-	-	-	-	-	116.00	116.00	-	-	-	8	
휴양시설	-	-	-	-	-	-	51.00	51.00	-	-	-	6	
유흥시설	-	-	-	-	-	-	-	-	-	-	-	1	
운동시설	-	-	-	-	-	-	70.00	70.00	-	-	-	4	
편익시설	-	-	-	-	-	-	8,665.64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	-	-	-	-	-	-	-	-	-	-	

2-2 봉산 근린공원 산세마을2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산세마을2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시설	합계			-	-	-	-	-	-			10,062.50	1,396.86	-	-	-	35	신설	
	소계			-	-	-	-	-	-			1,073.36	1,073.36	-	-	-	-		
	도로			-	-	-	-	-	-			785.36	785.36	-	-	-	-		
	광장			-	-	-	-	-	-	가		288.00	288.00	-	-	-	-		
				-	-	-	-	-	-	가-1	신사동 산55-5	153.00	153.00	-	-	-	-		
				-	-	-	-	-	-	가-2	신사동 산55-5	68.00	68.00	-	-	-	-		
				-	-	-	-	-	-	가-3	신사동 산55-5	67.00	67.00	-	-	-	-		
	소계			-	-	-	-	-			86.50	86.50	-	-	-	-	16		
	환경시설	쉼터			-	-	-	-	-	나	신사동 산55-5	86.50	86.50	-	-	-	-	-	
		초가 정자			-	-	-	-	-	①	쉼터	-	-	-	-	-	-	1	
팔각 정자				-	-	-	-	-	②	쉼터	-	-	-	-	-	-	1		
평의자				-	-	-	-	-	③	전지역	-	-	-	-	-	-	3		
등의자				-	-	-	-	-	④	전지역	-	-	-	-	-	-	11		
소계				-	-	-	-	-			116.00	116.00	-	-	-	-	8		
유역																			

구	부	시	설	영	기 정								변 경(신세마을2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시 설		어	린	이	블	터	-	-	-	-	-	-	-	-	-	-	-	-	-	-																												
							조	합	블	터	대	-	-	-	-	-	-	-	-	-	-	-	-	-	1																							
												시	소	-	-	-	-	-	-	-	-	-	-	-	-	-	-	-	1																			
														스	영	-	-	-	-	-	-	-	-	-	-	-	-	-	-	-	-	1																
																통	나	무	우	로	기	-	-	-	-	-	-	-	-	-	-	-	-	2														
																						음	점	-	-	-	-	-	-	-	-	-	-	-	-	-	-	-	2									
																								바	줄	다	려	-	-	-	-	-	-	-	-	-	-	-	-	-	1							
																												소	계	-	-	-	-	-	-	-	-	-	-	-	-	-	-	-	6			
																														복	은	당	당	-	-	-	-	-	-	-	-	-	-	-	-	-	-	-
																																		라	1	2	3	-	-	-	-	-	-	-	-	-	-	-
전	지	역	-	-	-	-																																-	-	-	-	-	-	-	-	-	-	-

구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신세마을2지구)								비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편 이 시 설		소 계			-	-	-	-	-			-	-	-	-	-	-	1	
		음수전			-	-	-	-	-	㉔	광장	-	-	-	-	-	-	1	
관 리 시 설		소 계			-	-	-	-	-			70.00	70.00	-	-	-	4		
					-	-	-	-	-	마		70.00	70.00	-	-	-	-		
					-	-	-	-	-	마-1	신사동 산55-6	22.00	22.00	-	-	-	-		
					-	-	-	-	-	마-2	신사동 산55-5	12.00	12.00	-	-	-	-		
					-	-	-	-	-	마-3	신사동 산55-6	20.00	20.00	-	-	-	-		
					-	-	-	-	-	마-4	신사동 산55-5	16.00	16.00	-	-	-	-		
		안내판			-	-	-	-	-	㉕	녹지대	-	-	-	-	-	4		
		소 계			-	-	-	-	-			8,665.64	-	-	-	-	-		
		녹 지			-	-	-	-	-			8,665.64	-	-	-	-	-		

2-3 봉산 근린공원 산새마을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205.30	785.36	-	-	-	신설
신 설	소 로	계			59.00	536.00	-	-	-	
신 설		2류	2-1	8.0~10.0	47.0	448.0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신 설		3류	3-1	7.4	12.0	88.8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신 설	산책로	계			146.30	248.56	-	-	-	
신 설			1	1.3	5.0	6.5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2-1	
신 설			2	1.5	6.4	9.60	산책로	소로 2-1	쉼터 나	
신 설			3	2.6	20.0	52.00	산책로	소로 2-1	광장 가-1	
신 설			4	1.6	34.0	54.40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신 설			5	1.6	16.5	26.40	산책로	운동마당 라-1	광장 가-2	
신 설			6	1.5	11.0	19.40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3	
신 설			7	1.5	53.5	80.26	산책로	광장 가-3	공원경계	

3-1 봉산 근린공원 산세마을1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산세마을1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	-	-	-	-	17,417.70	2,124.35	-	-	-	18 신설
기 반 시 설	소계	-	-	-	-	665.25	665.25	-	-	-	-
	도로	-	-	-	-	555.95	555.95	-	-	-	-
	광장	-	-	-	-	109.30	109.30	-	-	-	-
휴양시설	-	-	-	-	-	119.90	119.90	-	-	-	12
유흥시설	-	-	-	-	-	401.00	401.00	-	-	-	2
운동시설	-	-	-	-	-	24.60	24.60	-	-	-	3
편익시설	-	-	-	-	-	-	-	-	-	-	1
도시농업시설	-	-	-	-	-	913.60	913.60	-	-	-	-
녹지 및 기타	-	-	-	-	-	15,293.35	-	-	-	-	-

3-2 봉산 근린공원 산세마을1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산세마을1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기반시설		합계			-	-	-	-	-	-	-			17,417.70	2,124.35	-	-	-	-	18	신설
		소계			-	-	-	-	-	-	-			665.25	665.25	-	-	-	-	-	
		도로			-	-	-	-	-	-	-			555.95	555.95	-	-	-	-	-	
		광장			-	-	-	-	-	-	-	가	신사동 산51-3	109.30	109.30	-	-	-	-	-	
휴양시설		소계			-	-	-	-	-	-	-			119.90	119.90	-	-	-	-	12	
					-	-	-	-	-	-	-	나		119.90	119.90	-	-	-	-	-	
					-	-	-	-	-	-	-	나-1	신사동 산51-3	70.90	70.90	-	-	-	-	-	
					-	-	-	-	-	-	-	나-2	신사동 237-177	49.00	49.00	-	-	-	-	-	
유흥시설		파고라			-	-	-	-	-	-	-	①	쉼터	-	-	-	-	-	-	1	
		평의자			-	-	-	-	-	-	-	②	쉼터	-	-	-	-	-	-	3	
		등유자			-	-	-	-	-	-	-	③	전지역	-	-	-	-	-	-	5	
		평상			-	-	-	-	-	-	-	④	광장	-	-	-	-	-	-	3	
안전시설		소계			-	-	-	-	-	-	-			401.00	401.00	-	-	-	-	2	
		어린이놀이 터			-	-	-	-	-	-	-	다	신사동 237-177	401.00	401.00	-	-	-	-	-	

구	부	구	부	구	부	기 정								변 경(신세마을(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3-3 봉산 근린공원 산새마을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합 계				276.90	555.95	-	-	-	신설
신 설	산책로	계			276.90	555.95	-	-	-	
신 설			1	1.5	18.5	27.75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신 설			2	1.5	10.9	16.35	산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신 설			3	1.5	43.9	65.85	산책로	쉼터 나-1	광장 가	
신 설			4	1.5	49.4	74.10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가	
신 설			5	2.0	44.4	88.8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6	3.0	75.8	227.40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	공원경계	
신 설			7	1.5	4.5	6.75	산책로	공원경계	쉼터 나-2	
신 설			8	2.5	4.7	11.75	산책로	쉼터 나-2	어린이 놀이터 다	
신 설			9	1.5	24.8	37.20	산책로	공원경계	어린이 놀이터 다	

4-1 봉산 근린공원 증산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증산지구)						변 경(증산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6,000	13,782	3	292	292	91	33,392.30	11,549.82	1	52.20	52.20	34	감 2,232.18㎡
	3,533	3,533	-	-	-	-	2,224.41	2,224.41	-	-	-	-	감 1,308.59㎡
	3,493	3,493	-	-	-	-	1,854.90	1,854.90	-	-	-	-	감 1,638.10㎡
	40	40	-	-	-	-	369.51	369.51	-	-	-	-	증 329.51㎡
조경시설	218	218	-	-	-	38	-	-	-	-	-	-	감 218.00㎡
휴양시설	-	-	-	-	-	-	-	-	-	-	-	11	
유흥시설	274	274	-	-	-	5	406.64	406.64	-	-	-	5	증 132.64㎡
교양시설	68	68	-	-	-	-	-	-	-	-	-	-	감 68.00㎡
운동시설	8,001	8,001	-	-	-	45	8,129.07	8,129.07	-	-	-	17	증 128.07㎡
편익시설	952	952	1	108	108	3	789.70	789.70	1	52.20	52.20	1	감 162.30㎡
관리시설	736	736	2	184	184	-	-	-	-	-	-	-	감 736.00㎡
복지 및 기타	32,240	-	-	-	-	-	21,842.48	-	-	-	-	-	감 10,397.52㎡

4-2 봉산 근린공원 증산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명	기정(증산지구)							변경(증산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면적 (㎡)	연면적 (㎡)	건축물 면적 (㎡)	연면적 (㎡)	구조	규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고
기	반	합계			46,000	13,782	-	3	292	292	91			33,392.30	11,549.82	
		소계			3,533	3,533	-	-	-	-	-			2,224.41	2,224.41	
		도로			3,493	3,493	-	-	-	-	-			1,854.90	1,854.90	
		광장	가	증산동 산21	40	40	-	-	-	-	-			369.51	369.51	증산동 329.51㎡
조	경	소계			218	218	-	-	-	-	38			-	-	
		①			-	-	-	-	-	-	5			-	-	폐지
		①-1	증산동 산21	(41)	(41)	-	-	-	-	-	2			-	-	
		①-2	증산동 산18-6	(32)	(32)	-	-	-	-	-	1			-	-	
		①-3	증산동 산18-6	58	58	-	-	-	-	-	1			-	-	
		①-4	증산동 산18-6	(11)	(11)	-	-	-	-	-	1			-	-	
		②	증산동 산18-6	(24)	(24)	-	-	-	-	-	1			-	-	폐지
		③	수색동 산32	26	26	-	-	-	-	-	1			-	-	폐지
		④	증산동 산18-6	-	-	-	-	-	-	-	25			-	-	폐지
		⑤	증산동 산18-6	-	-	-	-	-	-	-	4			-	-	폐지

구	부	시 설 명	기 정(증산지구)										변 경(증산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스탠드	나	증산동 산18-6	106	106	-	-	-	-	1			-	-	-	-	-	-	-	폐지
		단상	다	증산동 산18-6	28	28	-	-	-	-	1			-	-	-	-	-	-	폐지	
		소 계			-	-	-	-	-	-	-			-	-	-	-	-	-	11	
	하 남 시 설		파고라			-	-	-	-	-	-	-	①	전지역	-	-	-	-	-	-	2
		평상행과 교라			-	-	-	-	-	-	-	②	다목적 운동구장	-	-	-	-	-	-	1	신설
		평의자			-	-	-	-	-	-	-	③	전지역	-	-	-	-	-	-	8	신설
		소 계			274	274	-	-	-	-	5			406.64	406.64	-	-	-	-	5	
유 회 시 설		어린이놀 이터	마	증산동 산18-6	274	274	-	-	-	-	-	나	증산동 산18-6	406.64	406.64	-	-	-	-	-	132.64㎡ 중
		조합 놀이대	⑥	증산동 산18-6	-	-	-	-	-	-	1	④	어린이 놀이터	-	-	-	-	-	-	1	
		그네	⑦	증산동 산18-6	-	-	-	-	-	-	1	⑤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시소	⑨	증산동 산18-6	-	-	-	-	-	-	1	⑥	어린이 놀이터	-	-	-	-	-	-	1	
		흔들 놀이대	⑧	증산동 산18-6	-	-	-	-	-	-	2	⑦	어린이 놀이터	-	-	-	-	-	-	2	
		소 계			8,001	8,001	-	-	-	-	45			8,129.07	8,129.07	-	-	-	-	17	
안 밖으 시 설			사	증산동 산18-6	1,597	1,597	-	-	-	-	19			-	-	-	-	-	-	합 591㎡	

구	부	시 설 명	기 정(증산지구)										변 경(증산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포살 구장			-	-	-	-	-	-	-	사	증산동 산18-6	1,006.00	1,006.00	-	-	-	-	-	-	
		축구장	아	증산동 산18-6	1,305	1,305	-	-	-	-	-	다	증산동 산18-6	1,488.42	1,488.42	-	-	-	-	-	-	증 183.42㎡
		축구장	바	증산동 산18-6	2,385	2,385	-	-	-	-	-	라	증산동 산18-6	2,548.10	2,548.10	-	-	-	-	-	-	증 163.1㎡
		배구장	자	증산동 산18-6	1,645	1,645	-	-	-	-	-	마	증산동 산18-6	1,984.74	1,984.74	-	-	-	-	-	-	증 339.74㎡
		농구장	차	증산동 산18-6	1,069	1,069	-	-	-	-	-	바	증산동 산18-6	957.18	957.18	-	-	-	-	-	-	감 111.82㎡
		체력 단련장			-	-	-	-	-	-	-	아	증산동 산18-6	144.63	144.63	-	-	-	-	-	-	신설
		체력 단련장	㉞	증산동 산18-6	-	-	-	-	-	-	-			-	-	-	-	-	-	-	-	변경 (현용면적) (7 → 17)
		체력 단련 시설			-	-	-	-	-	-	-	㉞		-	-	-	-	-	-	-	17	
		소 계			68	68	-	-	-	-	-			-	-	-	-	-	-	-	-	
고 양 시 설		생태 학습장	라	증산동 산18-4	68	68	-	-	-	-	-			-	-	-	-	-	-	-	-	폐지
		소 계			952	952	-	1	108	108	3			789.70	789.70	-	1	52.20	52.20	1	1	
편 입																						

구	부	시	설	명	기 정(증산지구)								변 경(증산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시 설	주거	장	고	증산동 산18-6	819	819	-	-	-	-	-	-	자	증산동 산18-6	673.68	673.68	-	-	-	-	감 145.32㎡					
					화정	㉠	증산동 산18-6	108	108	-	1	108	108	-	1	증산동 산18-6	102.00	102.00	조적	1	52.20	52.20	-	감 6㎡		
								읍수대	㉡	증산동 산18-6	-	-	-	-	-	-	-	-	14.02	14.02	-	-	-	1	신설	
											읍수전	㉢	증산동 산18-6	12	12	-	-	-	-	-	-	-	-	-	-	폐지
														읍수전	㉣	증산동 산18-6	10	10	-	-	-	-	-	-	-	-
	소 계	관리 사무소	노	증산동 산18-6	3	3	-	-	-	-	-	-	-				-	-	-	-	-	-	폐지			
					736	736	-	2	184	184	-	-	-	-	-	-	-	-	-	-	-	-				
					20	20	-	1	20	20	-	-	-	-	-	-	-	-	-	-	-	-	폐지			
					716	716	-	1	164	164	-	-	-	-	-	-	-	-	-	-	-	-	폐지			
					32,240	-	-	-	-	-	-	-	-	-	21,842.48	-	-	-	-	-	-	-	-	-		
부 지 및 기 타	소 계	부 지	기 타	-	32,240	-	-	-	-	-	-	-	-	21,776.98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	-	-		

4-3 봉산 근린공원 증산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599.00	3,493.00				
변 경					546.35	1,854.90				
당 초	소 로	계			223	1,351				
변 경					243.72	1,437.10				
폐 지			1	6	223	1,351	진입로	진입로	산-8	
신 설		3류	1	6.0	159.76	1,023.7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	
신 설		3류	2	4.0	83.96	413.32	진입로	광장 가	산책로 9	
당 초		계			1,376	2,142				
변 경					302.63	417.80				
폐 지	산책로		1	2	234	469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폐 지			2	1.5	90	140	산책로	체력단련장-1	산-1	
폐 지			3	1.5	4	6	산책로	산책로	산-2	
폐 지			4	1.5	26	39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폐 지			5	2	17	35	산책로	산책로	산-1	
폐 지			6	1.2	88	107	산책로	축구장	산-1	
폐 지			7	1.5	33	49	산책로	주차장	산책로	
폐 지			8	1.5	48	69	산책로	진입로	산-7	
폐 지			9	1.5	35	53	산책로	소-1	농구장	
폐 지			10	1.2	88	107	산책로	소-1	산-7	
폐 지			11	1.5	94	139	산책로	산-10	산-12	
폐 지			12	1.5	3	5	산책로	소-1	산-11	
폐 지			13	1.5	616	924	산책로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1	
신 설			1	1.5	47.19	71.28	진입로	소로 3-1	체력단련장 아	
신 설			2	1.5	21.61	32.73	진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3	1.5	47.09	74.91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신 설			4	1.2	8.16	9.79	연결로	광장 가	측구장 다	
신 설			5	1.5	4.81	7.23	연결로	광장 가	측구장 다	
신 설			6	1.5	4.32	6.85	산책로	공원경계	측구장 다	
신 설			7	1.5	12.63	18.97	산책로	공원경계	측구장 다	
신 설			8	1.5	5.49	8.23	산책로	공원경계	측구장 라	
신 설			9	1.2	19.22	23.06	연결로	소로 3-2	배구장 마	
신 설			10	1.2	114.17	137.84	산책로	산책로 9	배구장 마	
신 설			11	1.5	17.94	26.91	산책로	공원경계	농구장 바	

5-1 봉산 근린공원 수색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수색지구)						변 경(수색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반 시 설	계	27,255	6,052	-	-	10	33,374.00	4,259.73	-	-	-	21	감 1,792.27㎡
	소계	2,892	2,892	-	-	-	2,698.88	2,698.88	-	-	-	-	감 193.12㎡
		도로	1,493	1,493	-	-	-	2,594.93	2,594.93	-	-	-	-
	광장	1,399	1,399	-	-	-	-	103.95	103.95	-	-	-	-
조경시설	1,400	1,400	-	-	-	10	363.32	363.32	-	-	-	-	감 1,036.68㎡
휴양시설	-	-	-	-	-	-	659.86	659.86	-	-	-	11	증 659.86㎡
유흥시설	595	595	-	-	-	-	-	-	-	-	-	-	감 595㎡
운동시설	1,151	1,151	-	-	-	-	537.67	537.67	-	-	-	10	감 613.33㎡
편익시설	14	14	-	-	-	-	-	-	-	-	-	-	감 14㎡
녹지 및 기타	21,203	-	-	-	-	-	29,114.27	-	-	-	-	-	증 7,911.27㎡

5-2 봉산 근린공원 수색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 정(수색지구)								변 경(수색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기 반 시 설			27,255	6,052.0	-	-	-	-	10			33,374.00	4,259.73	-	-	-	21	신설
				2,892	2,892	-	-	-	-	-			2,698.88	2,698.88	-	-	-	-	
				1,493	1,493	-	-	-	-	-			2,594.93	2,594.93	-	-	-	-	
		가	수색동 129-4	1,399	1,399	-	-	-	-	-			-	-	-	-	-	-	폐지
조경 시 설	생태 연못	-	-	1,400	1,400	-	-	-	-	10			363.32	363.32	-	-	-	-	신설
		나	수색동 산28-3 임 의 대	475	475	-	-	-	-	-			-	-	-	-	-	-	폐지
				-	-	-	-	-	-	-	나	수색동 산21-1	217.22	217.22	-	-	-	-	신설
				-	-	-	-	-	-	-	다		146.10	146.10	-	-	-	-	신설
초화원			-	-	-	-	-	-	-	-	다-1	수색동 129-15	67.14	67.14	-	-	-	-	
			-	-	-	-	-	-	-	-	다-2	수색동 129-15	78.96	78.96	-	-	-	-	
	다	수색동 산26-1 임 의 대	925	925	-	-	-	-	-	-			-	-	-	-	-	-	폐지

구	부	시	설	명	기 정(수색지구)								변 경(수색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한양시	셀터	아외	탐자	소 계	①	수색동 산28-1 임	-	-	-	-	-	-	-	-	-	-	-	-	-	-	-	폐지		
					②	수색동 산26-1 임 일대	-	-	-	-	-	-	-	-	-	-	-	-	-	-	-	-	-	폐지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신설
	휴게소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파고라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평의자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아외 테이블			-	-	-	-	-	-	-	-	-	-	-	-	-	-	-	-	-	-	신설			
			-	-	-	-	-	-	-	-	-	-	-	-	-	-	-	-	-	-	신설			
소 계			595	595	-	-	-	-	-	-	-	-	-	-	-	-	-	-	-	-	-	신설		
			595	595	-	-	-	-	-	-	-	-	-	-	-	-	-	-	-	-	-	신설		
어린이놀이터			595	595	-	-	-	-	-	-	-	-	-	-	-	-	-	-	-	-	-	신설		
			595	595	-	-	-	-	-	-	-	-	-	-	-	-	-	-	-	-	-	신설		

후 양 시 결

유 회 시 결

구	부	시 설 명	기 정(수색지구)										변 경(수색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안민당시정		스페이스 넷	③	수색동 129-4임	-	-	-	-	-	-	-	-	-	-	-	-	-	-	-	-	-	폐지
		조항 놀이대	④	수색동 129-4임	-	-	-	-	-	-	-	-	-	-	-	-	-	-	-	-	-	폐지
		소 계			1,151	1,151	-	-	-	-	-	-	-	537.67	537.67	-	-	-	-	10		
		베드 민탕장	마		408	408	-	-	-	-	-	-	-	-	-	-	-	-	-	-	-	폐지
	마-1		수색동산1 29-4임		(163)	(163)	-	-	-	-	-	-	-	-	-	-	-	-	-	-		
	마-2		수색동산2 1-1임		(245)	(245)	-	-	-	-	-	-	-	-	-	-	-	-	-	-		
				-	-	-	-	-	-	-	마	수색동 산21-1	493.44	493.44	-	-	-	-	-	-	신설	
		체력 단련장	바		743	743	-	-	-	-	-	-	-	-	-	-	-	-	-	-	-	폐지
	바-1		수색동 산129-4 임		(277)	(277)	-	-	-	-	-	-	-	-	-	-	-	-	-	-		
	바-2		수색동 산21-1 임		(266)	(266)	-	-	-	-	-	-	-	-	-	-	-	-	-	-		

구	부	시	설	영	기 정(수색지구)								변 경(수색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건 축 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건 축 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비-3	수색동 산28-1 임	(200)	(200)	-	-	-	-	-	-	-	-	-	-	-	-			
편의 시설		소	계				14		-	-	-	-	-	-	-	-	-	-	-	10		신설	
		약	수터	사	수색동 산28-1 임 일대	14	14	-	-	-	-	-	-	-	-	-	-	-	-	-	폐지		
		소	계			21,203		-	-	-	-	-	-	-	-	-	-	-	-	-			
		부	지	활	용	기	타			21,203	-	-	-	-	-	-	-	-	-				

5-3 봉산 근린공원 수색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591	1,493	-	-	-	
변 경					1,292.20	2,594.93	-	-	-	
당 초	소 로	계			43	240.8	-	-	-	
변 경					-	-	-	-	-	
폐 지		-	1-1	5.6	43	240.8	진입로	광장	산-1	
당 초	산책로	계			548	1,252.5	-	-	-	
변 경					1,292.20	2,594.93	-	-	-	
폐 지		-	1	2.5	151	377.5	산책로	소1-1	배드민턴장	
폐 지		-	2	2.5	145	362.5	산책로	소1-1	체력단련장	
폐 지		-	3	2	62	124	산책로	산-2	산-2	
폐 지		-	4	2	38	76	산책로	체력단련장	진입로	
폐 지		-	5	2.5	17	42.5	산책로	체력단련장	산-1	
폐 지		-	6	2	33	66	산책로	배드민턴장	진입로	
폐 지		-	7	2	28	56	산책로	산-8	진입로	
폐 지		-	8	2	74	148	산책로	배드민턴장	진입로	
신 설		-	1	2.5-4.5	282.8	979.42	진입로	공원경계	배드민턴장 마	
신 설		-	2	1.5	29.1	43.62	연결로	광장 가	휴게소 라-1	
신 설		-	3	1.5	8.1	12.08	연결로	휴게소 라-1	휴게소 라-2	
신 설		-	4	1.5	24.0	36.40	산책로	휴게소 라-2	산책로 1	
신 설		-	5	1.5	25.2	39.00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4	
신 설		-	6	1.5	23.7	36.69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4	
신 설		-	7	1.5	83.1	126.8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신 설		-	8	1.5	39.5	60.12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 라-3	
신 설		-	9	1.5	16.9	26.12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	10	1.5	43.4	65.5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신 설		-	11	2.5	111.3	258.1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신 설		-	12	1.5-3.0	6.1	12.1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신 설		-	13	1.5	12.8	20.28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4	
신 설		-	14	1.5	18.8	28.55	연결로	산책로 11	체력단련장 바	
신 설		-	15	1.5	8.0	12.02	진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바	
신 설		-	16	1.5	95.4	143.0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신 설		-	17	1.5	11.3	17.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6	
신 설		-	18	1.5	11.8	19.16	연결로	배드민턴장 마	산책로 21	
신 설		-	19	1.5	38.0	57.3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신 설		-	20	1.5	150.2	225.8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신 설		-	21	1.5	252.7	375.5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6-1 시설지구외 '나' 구역(폐지) 총괄표

구 분	기 정(시설지구외 '나' 구역)						변 경(폐 지)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본 시 설	계	344,050.0	6,985.0	-	-	65	-	-	-	-	-	-	폐지
	소계	2,948.0	2,948.0	-	-	-	-	-	-	-	-	-	
	도로	2,948.0	2948.0	-	-	-	-	-	-	-	-	-	
조경시설	-	-	-	-	-	4	-	-	-	-	-	-	
휴양시설	65.0	65.0	-	-	-	-	-	-	-	-	-	-	
운동시설	3,972.0	3,972.0	-	-	-	61	-	-	-	-	-	-	
복지 및 기타	337,065.0	-	-	-	-	-	-	-	-	-	-	-	

6-2 시설지구외 '나' 구역(폐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시설지구외 '나' 구역)										변경(폐지)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기반시설	합계	-	-	344.050	6.985	-	-	-	-	65	-	-	-	-	-	-	-	-	-	폐지
		-	-	2.948	2.948	-	-	-	-	-	-	-	-	-	-	-	-	-	-	
	-	-	2.948	2.948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4	-	-	-	-	-	-	-	-		
	도로	-	-	-	-	-	-	-	-	-	-	-	-	-	-	-	-	-		
조경시설	합계	-	-	-	-	-	-	-	-	3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①-5	신사동 산48-2 임	-	-	-	-	-	-	-	(2)	-	-	-	-	-	-	-	-	-	
	①-6	신사동 산92-8 묘	-	-	-	-	-	-	-	(1)	-	-	-	-	-	-	-	-	-	
	셸터	②	-	-	-	-	-	-	-	1	-	-	-	-	-	-	-	-	-	
	②-1	신사동 산48-2 임	-	-	-	-	-	-	(1)	-	-	-	-	-	-	-	-	-		

구	부	시	명	기 정(서울지구와 '나' 구역)										변 경(배 지)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한양시정	소	계	-	-	65	65	-	-	-	-	-	-	-	-	-	-	-	-	-	-	
	체력단련장	가	-	-	65	65	-	-	-	-	-	-	-	-	-	-	-	-	-	-	
		가-4	신사동 산93-1 6묘	(65)	(65)	-	-	-	-	-	-	-	-	-	-	-	-	-	-	-	-
	소	계	-	-	3,972	3,972	-	-	-	-	61	-	-	-	-	-	-	-	-	-	-
안남읍시정	나	-	-	3,972	3,972	-	-	-	-	61	-	-	-	-	-	-	-	-	-	-	-
	나-7	신사동 산48-2 임	(160)	(160)	-	-	-	-	-	(3)	-	-	-	-	-	-	-	-	-	-	-
	나-8	신사동 산48-2 임	(423)	(423)	-	-	-	-	-	(4)	-	-	-	-	-	-	-	-	-	-	-
	나-9	신사동 산48-2 임	(1,177)	(1,177)	-	-	-	-	-	(10)	-	-	-	-	-	-	-	-	-	-	-
	나-10	신사동 산93-8 묘	(128)	(128)	-	-	-	-	-	(4)	-	-	-	-	-	-	-	-	-	-	-
	나-11	신사동 산50임 일대	(236)	(236)	-	-	-	-	-	(3)	-	-	-	-	-	-	-	-	-	-	-
	나-12	신사동 산55임	(110)	(110)	-	-	-	-	-	(4)	-	-	-	-	-	-	-	-	-	-	-

구	부	시	설	명	기 정(시설지구와 '나' 구역)								변 경(배 지)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나-13	신사동	산93-8	모	(282)	(282)	(282)	-	-	-	(4)	-	-	-	-	-	-	-	-	-	-	-	
	나-14	신사동	산93-9	모	(1,456)	(1,456)	(1,456)	-	-	-	(20)	-	-	-	-	-	-	-	-	-	-	-	
부 지 면 적 기 다	소 계	-	-	-	337,065	337,065	-	-	-	-	-	-	-	-	-	-	-	-	-	-	-	-	
																							부 지

6-3 시설지구외 '나' 구역(폐지)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 지	합 계				2,457	2,948	-	-	-	폐지
폐 지		계			2,457	2,948	-	-	-	
폐 지	산책로	-	25	1.2	451	541.2	등산로	외곽경계부	체력단련장7	
폐 지		-	26	1.2	120	144	등산로	체력단련장7	체력단련장8	
폐 지		-	27	1.2	75	90	등산로	체력단련장8	체력단련장9	
폐 지		-	28	1.2	23	27.6	등산로	체력단련장9	외곽경계부	
폐 지		-	29	1.2	107	128.4	등산로	체력단련장7	체력단련장10	
폐 지		-	30	1.2	196	235.2	등산로	체력단련장10	체력단련장11	
폐 지		-	31	1.2	48	57.6	등산로	체력단련장11	체력단련장12	
폐 지		-	32	1.2	247	296.4	등산로	체력단련장10	체력단련장13	
폐 지		-	33	1.2	115	138	등산로	체력단련장13	등산로	
폐 지		-	34	1.2	117	140.4	등산로	등산로	유희시설2	
폐 지		-	35	1.2	200	240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 지		-	36	1.2	312	374.4	등산로	체력단련장13	등산로	
폐 지		-	37	1.2	140	168	등산로	등산로	휴게소4	
폐 지		-	38	1.2	306	367.2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7-1 시설지구외 '다' 구역(폐지) 총괄표

구 분	기 정(시설지구외 '다' 구역)						변 경(폐 지)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반 시 설	계	370,481.0	6,915.0	-	-	66	-	-	-	-	-	-	폐지
	소계	3,793.0	3,793.0	-	-	-	-	-	-	-	-	-	
	도로	3,793.0	3,793.0	-	-	-	-	-	-	-	-	-	
조경시설	-	-	-	-	-	6	-	-	-	-	-	-	
운동시설	3,095.0	3,095.0	-	-	-	60	-	-	-	-	-	-	
편익시설	27.0	27.0	-	-	-	-	-	-	-	-	-	-	
복지 및 기타	363,566.0	-	-	-	-	-	-	-	-	-	-	-	

7-2 시설지구외 '다' 구역(폐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시설지구외 '다' 구역)										변경(폐지)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합계		-	-	370,481	6,915	-	-	-	-	66	-	-	-	-	-	-	-	-	-	폐지
	기본시설	소계	-	-	3,793	3,793	-	-	-	-	-	-	-	-	-	-	-	-	-	
		도로	-	-	3,793	3,793	-	-	-	-	-	-	-	-	-	-	-	-	-	
조경시설	소계	-	-	-	-	-	-	-	-	6	-	-	-	-	-	-	-	-		
	파고라	①	-	-	-	-	-	-	-	5	-	-	-	-	-	-	-	-	-	
		①-7	신사동신9 2-16임	-	-	-	-	-	-	(1)	-	-	-	-	-	-	-	-	-	
		①-8	신사동신9 2-56묘	-	-	-	-	-	-	(1)	-	-	-	-	-	-	-	-	-	
		①-9	신사동신9 2-56묘	-	-	-	-	-	-	(1)	-	-	-	-	-	-	-	-	-	
		①-10	중신동신7 -9임	-	-	-	-	-	-	(1)	-	-	-	-	-	-	-	-	-	
		①-11	중신동신7 -7임	-	-	-	-	-	-	(1)	-	-	-	-	-	-	-	-	-	
	②	-	-	-	-	-	-	-	1	-	-	-	-	-	-	-	-	-		
	첼터	②-2	신사동신9 2-16묘	-	-	-	-	-	(1)	-	-	-	-	-	-	-	-	-	-	

구	부	시 설 명	기 정(시설지구외 '다' 구역)										변 경(배 지)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소 계			3,095	3,095	-	-	-	-	60	-	-	-	-	-	-	-	-	-	
		배드 민원장	다		1,113	1,113	-	-	-	-	-	-	-	-	-	-	-	-	-	-	
			다-4	중산동92 -56묘	(96)	(96)	-	-	-	-	-	-	-	-	-	-	-	-	-	-	
			다-5	중산동산7 -9임 신사동산1 00묘	(1,017)	(1,017)	-	-	-	-	-	-	-	-	-	-	-	-	-	-	
			나		1,982	1,982	-	-	-	-	60	-	-	-	-	-	-	-	-	-	
		체력 단원장	나-15	신사동산9 2-56묘	(334)	(334)	-	-	-	-	(4)	-	-	-	-	-	-	-	-	-	
			나-16	신사동92 -56묘	(280)	(280)	-	-	-	-	(6)	-	-	-	-	-	-	-	-	-	
			나-17	신사동92 -16묘	(65)	(65)	-	-	-	-	(4)	-	-	-	-	-	-	-	-	-	
			나-18	신사동92 -16묘	(207)	(207)	-	-	-	-	(7)	-	-	-	-	-	-	-	-	-	
			나-19	신사동92 -16묘	(307)	(307)	-	-	-	-	(3)	-	-	-	-	-	-	-	-	-	
			나-20	중산동산7 -9임	(161)	(161)	-	-	-	-	(7)	-	-	-	-	-	-	-	-	-	-
			나-21	중산동산7 -9임	(226)	(226)	-	-	-	-	(4)	-	-	-	-	-	-	-	-	-	-
			안 내 시 설																		

구	부	시	설	명	기 정(서울지구외 '다' 구역)								변 경(배 지)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면적 (㎡)	면적 (㎡)	건 축	면적 (㎡)	면적 (㎡)	공작물 (기)	
	나-22	나-22	증신동신7 -89일대				(110)	(110)	-	-	-	-	-	-	-	(15)	
	나-23	나-23	증신동신7 -7일				(109)	(109)	-	-	-	-	-	-	-	(4)	
	나-24	나-24	증신동신3 0-2일 증신동신3 1-1일				(183)	(183)	-	-	-	-	-	-	-	(6)	
편의시설	소계	소계	-	-	-	-	27	27	-	-	-	-	-	-	-	-	
편의시설	마-1	마-1	신시동신9 2-16묘				(18)	(18)	-	-	-	-	-	-	-	-	
편의시설	마-2	마-2	신시동신9 2-16묘				(9)	(9)	-	-	-	-	-	-	-	-	
편의시설	소계	소계	-	-	-	-	363,566	363,566	-	-	-	-	-	-	-	-	
편의시설	소계	소계	-	-	-	-	363,566	363,566	-	-	-	-	-	-	-	-	

7-3 시설지구외 '다' 구역(폐지)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합 계				3,027	3,793	-	-	-	폐지
폐지		계			3,027	3,793	-	-	-	
폐지	산책로	-	39	1.2	198	237.6	등산로	외곽경계부	등산로	
폐지		-	40	1.2	58	69.6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지		-	41	1.2	32	38.4	등산로	등산로	체력단련장17	
폐지		-	42	1.2	48	57.6	등산로	체력단련장17	체력단련장18	
폐지		-	43	1.2	51	61.2	등산로	등산로	약수터2	
폐지		-	44	1.2	139	166.8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지		-	45	1.2	79	94.8	등산로	등산로	체력단련장15	
폐지		-	46	1.2	86	103.2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지		-	47	1.2	82	98.4	등산로	등산로	배드민턴장5	
폐지		-	48	1.2	252	302.4	등산로	배드민턴장5	외곽경계부	
폐지		-	49	1.2	27	32.4	등산로	체력단련장20	체력단련장21	
폐지		-	50	1.2	13	15.6	등산로	배드민턴장5	체력단련장21	
폐지		-	51	1.2	57	68.4	등산로	배드민턴장5	등산로	
폐지		-	52	1.2	11	13.2	등산로	체력단련장21	등산로	
폐지		-	53	1.2	71	85.2	등산로	등산로	체력단련장23	
폐지		-	54	1.2	42	50.4	등산로	체력단련장22	외곽경계부	
폐지		-	55	1.2	132	158.4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지		-	56	1.2	39	46.8	등산로	등산로	체력단련장22	
폐지		-	57	1.3	54	70.2	등산로	체력단련장22	등산로	
폐지		-	58	1.3	118	163.4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지		-	59	1.3	220	286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지		-	60	1.3	136	176.8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	61	1.3	208	270.4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지		-	62	1.3	60	78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폐지		-	63	1.3	83	107.9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지		-	64	1.3	170	221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지		-	65	1.3	82	106.6	등산로	외곽경계부	등산로	
폐지		-	66	1.3	75	97.5	등산로	외곽경계부	등산로	
폐지		-	67	1.3	161	209.3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지		-	68	1.3	28	36.4	등산로	외곽경계부	등산로	
폐지		-	69	1.3	19	24.7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폐지		-	70	1.3	196	254.8	등산로	등산로	외곽경계부	

8-1 시설지구외 '라' 구역(폐지) 총괄표

구 분	기 정(시설지구외 '라' 구역)						변 경(폐 지)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1,789.0	2,624.0	-	-	-	14	-	-	-	-	-	-	폐지
기 반 시 설	소계	1,730.0	-	-	-	-	-	-	-	-	-	-	
	도로	1,730.0	1,730.0	-	-	3	-	-	-	-	-	-	
조경시설	-	-	-	-	-	11	-	-	-	-	-	-	
운동시설	894.0	894.0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69,165.0	-	-	-	-	-	-	-	-	-	-	-	

8-2 시설지구외 '라' 구역(폐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시설지구외 '라' 구역)										변경(폐지)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	연면적 (㎡)								비대면적 (㎡)	연면적 (㎡)			
조경시설	합계	-	-	171,789	2,624					14	-	-	-	-	-	-	-	-	-	폐지	
	기반시설	소계	-	-	1,730	1,730	-	-		-	-	-	-	-	-	-	-	-	-		
		도로	-	-	1,730	1,730	-	-		-	-	-	-	-	-	-	-	-	-		
	조경시설	소계	-	-	-	-	-	-		-	3	-	-	-	-	-	-	-	-	-	
		파고라	①	-	-	-	-	-		-	3	-	-	-	-	-	-	-	-	-	
①-12			수색동산7 -1일	-	-	-	-		-	(1)	-	-	-	-	-	-	-	-	-	-	
①-13			수색동산8 -17일	-	-	-	-		-	(1)	-	-	-	-	-	-	-	-	-	-	
야외배치시설		①-14	수색동산8 -8일	-	-	-	-		-	(1)	-	-	-	-	-	-	-	-	-		
	소계	-	-	894	894	-	-		-	11	-	-	-	-	-	-	-	-	-		
	체력 단련장	나	-	894	894	-	-		-	11	-	-	-	-	-	-	-	-	-		
		나-25	수색동산7 -1일	(262)	(262)	-	-		-	(3)	-	-	-	-	-	-	-	-	-		

구	부	시 설 명	기 정(시설지구와 '라' 구역)										변 경(배 지)							비 고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 호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나-26	수색동산8 -17일	(214)	(214)	-	-	-	-	(4)	-	-	-	-	-	-	-	-	-	-
			나-27	수색동산8 -8일	(418)	(418)	-	-	-	-	(4)	-	-	-	-	-	-	-	-	-	-
부 지 맞 기 단		소 계	-	-	169,165	-	-	-	-	-	-	-	-	-	-	-	-	-	-	-	-
		누 지	-	-	169,165	-	-	-	-	-	-	-	-	-	-	-	-	-	-	-	-

8-3 시설지구외 ‘라’ 구역(폐지)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합 계				1,331	1,730	-	-	-	폐지
폐지	-	계			1,331	1,730	-	-	-	
폐지	산책로	-	71	1.3	96	124.8	등산로	외곽경계부	외곽경계부	
폐지		-	72	1.3	107	139.1	등산로	등산로	체력단련장25	
폐지		-	73	1.3	26	33.8	등산로	외곽경계부	체력단련장25	
폐지		-	74	1.3	83	107.9	등산로	외곽경계부	체력단련장25	
폐지		-	75	1.3	120	156	등산로	체력단련장26	체력단련장25	
폐지		-	76	1.3	122	158.6	등산로	외곽경계부	체력단련장25	
폐지		-	77	1.3	123	159.9	등산로	체력단련장27	체력단련장25	
폐지		-	78	1.3	137	178.1	등산로	외곽경계부	체력단련장25	
폐지		-	79	1.3	285	370.5	등산로	외곽경계부	외곽경계부	
폐지		-	80	1.3	85	110.5	등산로	외곽경계부	외곽경계부	
폐지		-	81	1.3	147	191.1	등산로	외곽경계부	외곽경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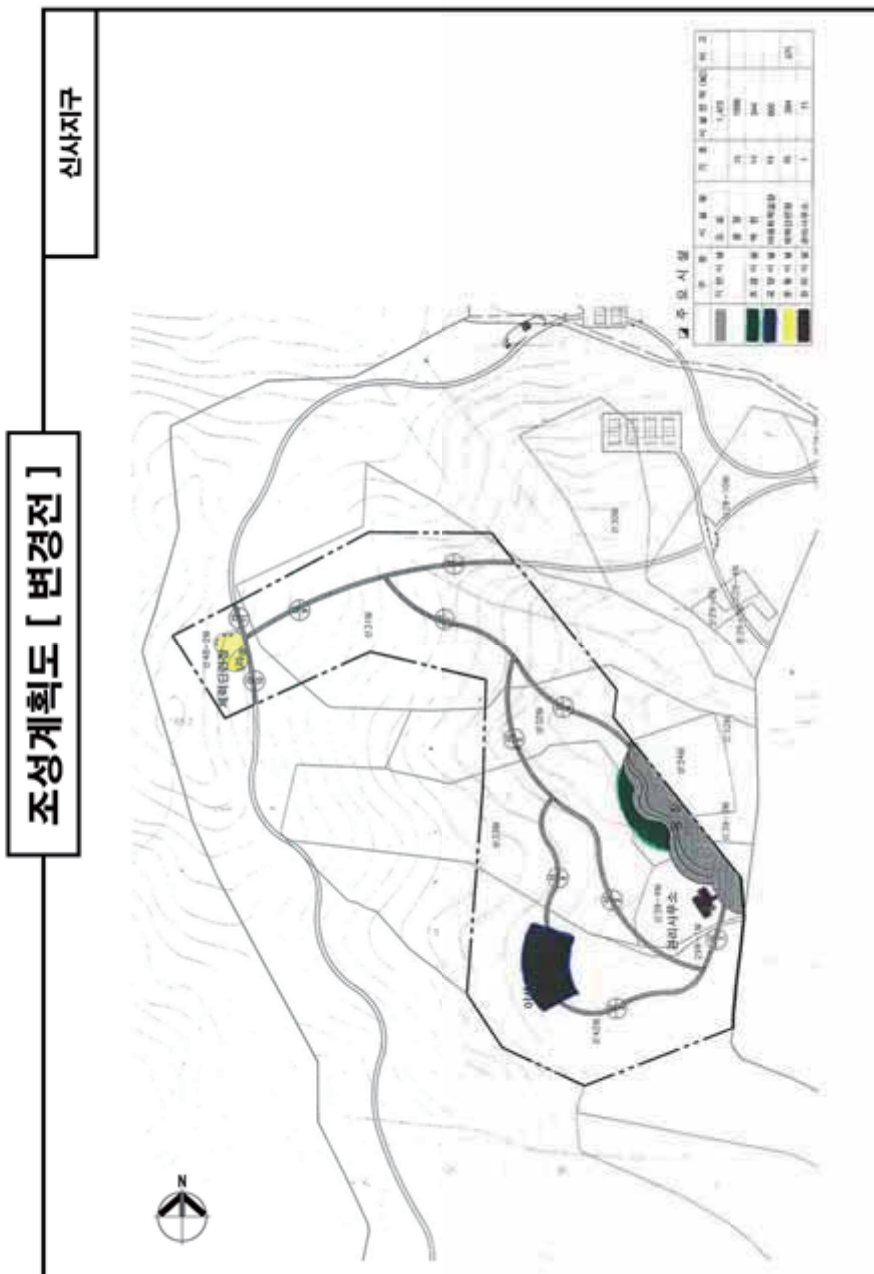
조성계획도 [변경전]

수곡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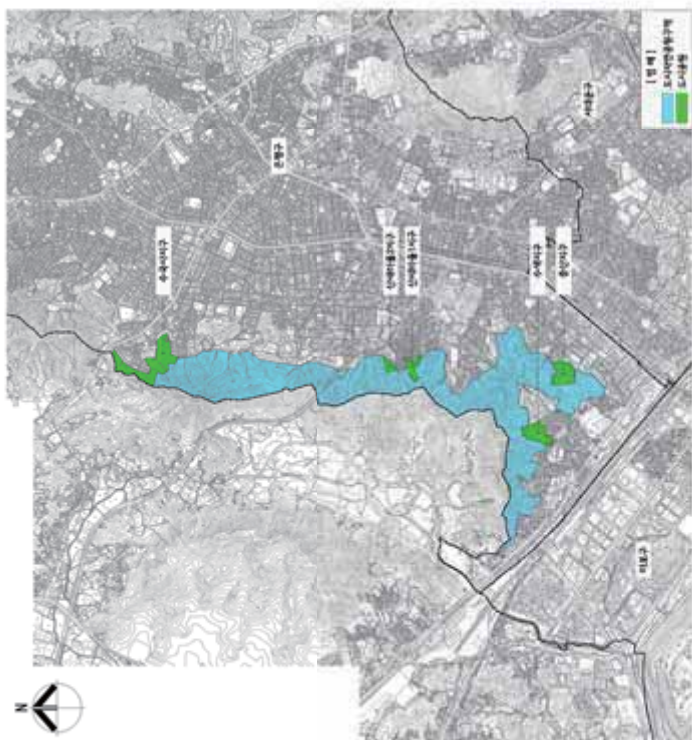
영평면사무소

구분	지점명	면적	지점명	면적	합계
국유지	영평면사무소	1,100.0	영평면사무소	1,100.0	2,200.0
민간지	영평면사무소	1,100.0	영평면사무소	1,100.0	2,200.0
합계		2,200.0		2,200.0	4,400.0



위 치 도

봉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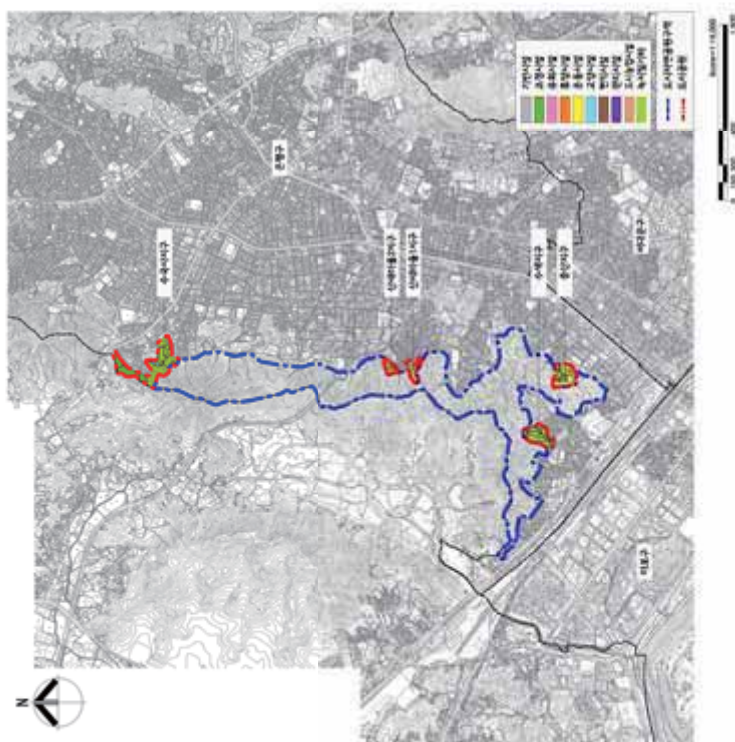


※ 개요

구분	구분	면적(㎡)	비율(%)
01	수목식재구	78,147.70	78.147.70
02	산책로구	10,000.00	10.000.00
03	산책로구	10,000.00	10.000.00
04	수목식재구	23,200.00	23.200.00
05	수목식재구	23,200.00	23.200.00

Scale 1:10,000
0 100 200 300
m

보사 그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

[illegible]

조성계획도 [변경후]

산새마을1지구



■ 사업현황서

구분	부지번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도 규모	건축용적률 (%)	용적률 (%)
합계		11,617.29	2,124.30			18
기타						
사설	소매	666.29	666.29			
도로	가	556.96	556.96			
공원	가	100.30	100.30			
소매	가	119.00	119.00			
소매	나	119.00	119.00			
소매	나-1	75.00	75.00			
소매	나-2	40.00	40.00			
소매	나-3	40.00	40.00			
소매	나-4	40.00	40.00			
소매	나-5	40.00	40.00			
소매	나-6	40.00	40.00			
소매	나-7	40.00	40.00			
소매	나-8	40.00	40.00			
소매	나-9	40.00	40.00			
소매	나-10	40.00	40.00			
소매	나-11	40.00	40.00			
소매	나-12	40.00	40.00			
소매	나-13	40.00	40.00			
소매	나-14	40.00	40.00			
소매	나-15	40.00	40.00			
소매	나-16	40.00	40.00			
소매	나-17	40.00	40.00			
소매	나-18	40.00	40.00			
소매	나-19	40.00	40.00			
소매	나-20	40.00	40.00			
소매	나-21	40.00	40.00			
소매	나-22	40.00	40.00			
소매	나-23	40.00	40.00			
소매	나-24	40.00	40.00			
소매	나-25	40.00	40.00			
소매	나-26	40.00	40.00			
소매	나-27	40.00	40.00			
소매	나-28	40.00	40.00			
소매	나-29	40.00	40.00			
소매	나-30	40.00	40.00			
소매	나-31	40.00	40.00			
소매	나-32	40.00	40.00			
소매	나-33	40.00	40.00			
소매	나-34	40.00	40.00			
소매	나-35	40.00	40.00			
소매	나-36	40.00	40.00			
소매	나-37	40.00	40.00			
소매	나-38	40.00	40.00			
소매	나-39	40.00	40.00			
소매	나-40	40.00	40.00			
소매	나-41	40.00	40.00			
소매	나-42	40.00	40.00			
소매	나-43	40.00	40.00			
소매	나-44	40.00	40.00			
소매	나-45	40.00	40.00			
소매	나-46	40.00	40.00			
소매	나-47	40.00	40.00			
소매	나-48	40.00	40.00			
소매	나-49	40.00	40.00			
소매	나-50	40.00	40.00			
소매	나-51	40.00	40.00			
소매	나-52	40.00	40.00			
소매	나-53	40.00	40.00			
소매	나-54	40.00	40.00			
소매	나-55	40.00	40.00			
소매	나-56	40.00	40.00			
소매	나-57	40.00	40.00			
소매	나-58	40.00	40.00			
소매	나-59	40.00	40.00			
소매	나-60	40.00	40.00			
소매	나-61	40.00	40.00			
소매	나-62	40.00	40.00			
소매	나-63	40.00	40.00			
소매	나-64	40.00	40.00			
소매	나-65	40.00	40.00			
소매	나-66	40.00	40.00			
소매	나-67	40.00	40.00			
소매	나-68	40.00	40.00			
소매	나-69	40.00	40.00			
소매	나-70	40.00	40.00			
소매	나-71	40.00	40.00			
소매	나-72	40.00	40.00			
소매	나-73	40.00	40.00			
소매	나-74	40.00	40.00			
소매	나-75	40.00	40.00			
소매	나-76	40.00	40.00			
소매	나-77	40.00	40.00			
소매	나-78	40.00	40.00			
소매	나-79	40.00	40.00			
소매	나-80	40.00	40.00			
소매	나-81	40.00	40.00			
소매	나-82	40.00	40.00			
소매	나-83	40.00	40.00			
소매	나-84	40.00	40.00			
소매	나-85	40.00	40.00			
소매	나-86	40.00	40.00			
소매	나-87	40.00	40.00			
소매	나-88	40.00	40.00			
소매	나-89	40.00	40.00			
소매	나-90	40.00	40.00			
소매	나-91	40.00	40.00			
소매	나-92	40.00	40.00			
소매	나-93	40.00	40.00			
소매	나-94	40.00	40.00			
소매	나-95	40.00	40.00			
소매	나-96	40.00	40.00			
소매	나-97	40.00	40.00			
소매	나-98	40.00	40.00			
소매	나-99	40.00	40.00			
소매	나-100	40.00	40.00			

조성계획도 [변경후]

수색지구



■ 시설분서

구분	종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로 길이	연면적 (㎡)	용적률 (%)
기타	합계	50,374.00	4,269.71	-	-	21
	소계	2,000.00	2,000.00	-	-	-
	소계	2,000.00	2,000.00	-	-	-
	소계	100.00	100.00	-	-	-
소방	합계	363.32	363.32	-	-	-
	소계	271.22	271.22	-	-	-
	소계	146.70	146.70	-	-	-
	소계	17.1	17.1	-	-	-
문화	합계	27.1	27.1	-	-	-
	소계	27.1	27.1	-	-	-
	소계	27.1	27.1	-	-	-
	소계	27.1	27.1	-	-	-
체육	합계	46.04	46.04	-	-	-
	소계	20.00	20.00	-	-	-
	소계	26.04	26.04	-	-	-
	소계	26.04	26.04	-	-	-
공원	합계	326.86	326.86	-	-	-
	소계	326.86	326.86	-	-	-
	소계	326.86	326.86	-	-	-
	소계	326.86	326.86	-	-	-
도로	합계	337.67	337.67	-	-	-
	소계	337.67	337.67	-	-	-
	소계	337.67	337.67	-	-	-
	소계	337.67	337.67	-	-	-
기타	합계	44.23	44.23	-	-	-
	소계	44.23	44.23	-	-	-
	소계	44.23	44.23	-	-	-
	소계	44.23	44.23	-	-	-
합계	합계	50,374.00	4,269.71	-	-	-
	소계	50,374.00	4,269.71	-	-	-
	소계	50,374.00	4,269.71	-	-	-
	소계	50,374.00	4,269.71	-	-	-

Scale: 1:5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3호

향림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2호(1997.2.13.)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9호(2013.8.1.)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향림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458-1 일대

3. 공원면적 : 202,993㎡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1-800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향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총괄표 (위치 : 은평구 불광동 458-1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250,437.7	44,085.5	8.0	3,088.1	12,440.8	82	202,993	37,530	7	3,088.1	12,440.8	74	감) 6,555.5㎡
	소 계	12,268.9	12,268.9					9,343	9,343					감) 2,925.9㎡
	도 로	10,977.0	10,977.0					8,051	8,051					감) 2,926.0㎡
	광 장	1,291.9	1,291.9					1,292	1,292					증) 0.1㎡
조 경 시 설		2,050.0	2,050.0				18	2,035	2,035				15	감) 15㎡
휴 양 시 설		2,816.0	2,816.0				27	1,241	1,241				25	감) 1,575㎡
유 희 시 설		131.0	131.0					131	131					
교 양 시 설		6,380.0	6,380.0					6,380	6,380					
편 의 시 설		2,232.3	2,232.3	2.0		3,796.7	4	2,330	2,330	3	97.4	3,894.1	2	증) 97.7㎡
운 동 시 설		17,492.3	17,492.3	1.0	2,488.5	8,044.5	19	15,452	15,452	1	2,488.5	8,044.5	19	감) 2,040.3㎡
관 리 시 설		890.2	715.0	4	599.6	599.6	13	793	618	3	502.2	502.2	13	감) 97㎡
녹지·기타		206,352.2						165,288						감) 41,064.2㎡
공원시설율(법정40%)		44,085.5 / 250,437.7 x 100 = 17.60%						37,530 / 202,993 x 100 = 18.49%						
공원건폐율(법정10%)		3,088.1 / 250,437.7 x 100 = 1.23%						3,088.1 / 202,993 x 100 = 1.52%						
특정시설율(법정20%)		17,492.3 / 44,260.7 x 100 = 39.52%						15,452 / 37,705 x 100 = 40.98%						
※ 특정시설을 규정 -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부지면적)은 실제로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시설을 규정

※ -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해설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부지면적)은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시설조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광장	합 계			250,437.7	44,085.5		8.0	3,088.1	12,440.8	82		202,993	37,530		7	3,088.1	12,440.8	74	감) 6,555.5㎡	
	소계			12,268.9	12,268.9							9,343	9,343						감) 2,925.9㎡	
	도로		전지역	10,977.0	10,977.0						전지역	8,051	8,051						감) 2,926.0㎡	
		가	6개소	1,291.9	1,291.9						가	7개소	1,292	1,292						증) 0.1㎡
		가-1	진관외동 산19	424.0	424.0						가-1	진관외동 산19	424	424						
		가-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514.9	514.9						가-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515	515						증) 0.1㎡
		가-3	"	21.0	21.0						가-3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21	21						
	가-4	"	16.0	16.0						가-4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16	16							
	가-5	불광동 458-2	243.0	243.0						가-5	불광동 458-2	243	243							
	가-6	불광동 467-1	34.0	34.0						가-6	불광동 467-1	34	34							
	가-7	불광동 457	39.0	39.0						가-7	불광동 457	39	3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소계			2,050.0	2,050.0					18			2,035	2,035					15	감) 15㎡
	①	진관외동 240-20	(285)	(285)						15	①	10개소							13	
	①-1	진관외동 240-20 외 1	(32)	(32)	목재				(2)	①-1	진관외동 240-20 외 1				목재				2	
	①-3	진관외동 189-3	(16)	(16)					(1)	①-3	진관외동 189-3								1	
	①-4	불광동 산156-1	(16)	(16)					(1)	①-4	불광동 산156-1								1	
	①-6	진관외동 산19-5	(41)	(41)					(1)	①-6	진관외동 산19-5								1	
	①-7	진관동 산109-25 일원	(41)	(41)					(2)											폐지
	①-8	"	(32)	(32)					(2)	①-8	진관동 산109-25 일원								2	
	①-9	"	(16)	(16)					(1)	①-9	진관동 산109-25 일원								1	
	①-10	불광동 463-2	(35)	(35)					(2)	①-10	불광동 463-2								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①-11	불광동 산152	(23)	(23)					(1)	①-11	불광동 산152							1		
		①-12	불광동 458-2	(19)	(19)					(1)	①-12	불광동 458-2							1		
		①-13	불광동 458-2	(14)	(14)					(1)	①-13	불광동 458-2							1		
		첼터									②	불광동 458-2							1	시설변경 (휴양→조경) 부호변경 (②-3→②) 감) 52㎡	
조경 시설	돌담	④	진관동 산109-25 일원			조적				2	④	1개소						1			
		④-1	"							(1)									폐지		
		④-2	"							(1)	④	진관동 산109-25 일원						1	부호변경 (④-2→④)		
	폭포	⑤	"	15.0	15.0	석재				1									폐지		
	연못	거		986.0	986.0						거	4개소	986	986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거-1	불광동 459-5	(188.0)	(188.0)						거-1	불광동 459-5	188	188								
	거-2	불광동 464	(28.0)	(28.0)						거-2	불광동 464	28	28								
	거-3	불광동 458-1	(253.0)	(253.0)						거-3	불광동 458-1	253	253								
	거-4	불광동 457	(517.0)	(517.0)						거-4	불광동 457	517	517								
습지원	너	불광동 457	749.0	749.0						너	불광동 457	749	749								
계류	더	불광동 458-1 일원	300.0	300.0						더	불광동 458-1 일원	300	300								
유하 시설	소계		131.0	131.0								131	131								
	전통 놀이장	카	131.0	131.0						카	불광동 463-2전	131	131								
휴양 시설	소계		2,816.0	2,816.0					28			1,241	1,241						25	감) 1,57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비대면적	연면적		(기)									
정의자	셸터		전지역				목재							1					1	
		②	불광동 산156-1	89.0	89.0										3					감) 89㎡
		②-1	불광동 산156-1	16.0	16.0										(1)					폐지 (구역편입)
		②-2	불광동 산17	21.0	21.0										(1)					폐지 (구역편입)
		②-3	불광동 458-2	52.0	52.0										(1)					시설변경 (휴양→조경) 부호변경 (②-3→②)
휴양 시설	휴게소	나	진관외동 192-1	912.0	912.0										나	6개소	1,039	1,039		증) 127㎡
		나-1	진관외동 192-1	167.0	167.0															폐지 (구역편입)
		나-2	불광동 산18	157.0	157.0															폐지 (구역편입)
		나-3	불광동 산5-1	108.0	108.0															폐지 (구역편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4	불광동 산152	73.0	73.0					나-4	불광동 산152	73	73					
	나-5	불광동 산152	93.0	93.0					나-5	불광동 산152	93	93					
	나-6	불광동 458-2	142.0	142.0					나-6	불광동 458-2	194	194					증) 52㎡
	나-7	불광동 산463-2	100.0	100.0					나-7	불광동 산463-2	100	100					
	나-8	불광동 산458-2	72.0	72.0					나-8	불광동 산458-2	72	72					
									나-9		507	507					시설변경 (은동→충양) 시설면적 (배드민턴장→ 휴게소) 부호변경 (나-3→나-9) 증) 507㎡
									러	2개소	202	202					증) 202㎡
설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평의자												라-1	진관동 367	95	95						
											라-2	진관동 367-6	107	107							
	⑥	진관동 산109-25일원			목제				13	⑥	3개소									13	
	⑥-1	"						(4)	⑥-1	진관동 산109-25일원										4	
	⑥-2	"						(3)	⑥-2	진관동 산109-25일원										3	
	⑥-3	불광동 458-1 일원						(6)	⑥-3	불광동 458-1 일원										6	
맞음버	⑦	진관동 산109-25 일원						11	⑦	3개소										11	
	⑦-1	"			조적			(1)	⑦-1	진관동 산109-25 일원					조적					1	
	⑦-2	불광동 458-1 일원						(9)	⑦-2	불광동 458-1 일원										9	
스텐드		⑦-3	불광동 458-2					(1)	⑦-3	불광동 458-2										1	
휴양 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피크닉장	다	진관외동 4375-18	1,815.0	1,815.0																폐지
	소계			17,492.3	17,492.3		1.0	2,488.5	8,044.5	19			15,452	15,452		1	2,488.5	8,044.5	19		감) 2,040.3㎡
	테니스장	라	진관외동 산245-4 외 3	1,600.0	1,600.0						라	진관외동 산245-4 외 3	1,600	1,600							
	축구장	마	진관외동 242-6 외	7,600.0	7,600.0						마	진관외동 242-6 외	7,600	7,600							
운동 시설		아		1,320.5	1,320.5						아	1개소	480	480							감) 840.5㎡
		아-1	불광동 21-1외	893.0	893.0						아	불광동 21-1외	480	480							부호변경 (아-1→아) 감) 413㎡
		아-3	진관동 산109-25 일원	427.5	427.5																시설변경 (운동→휴양) 시설면적변경 (베드민턴장→ 휴게소) 부호변경 (아-3→나-9) 감) 427.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배드민턴 지구	㉔	진관동 산109-25 일원								8	㉔	불광동 21-1외								8	
	자		1,757.8	1,757.8							자	4개소	558	558							감) 1,199.8㎡
체력 단련장	자-1	불광동 산17	284.0	284.0																	폐지 (구역편입)
	자-3	불광동 산156-1	639.0	639.0																	폐지 (구역편입)
	자-7	불광동 산19-3	343.0	343.0							자-7	불광동 산19-3	343.0	343.0							
	자-8	진관동 산109-25 일원	277.3	277.3																	폐지
	자-9	"	130.5	130.5							자-9	진관동 산109-25 일원	131	131							증 0.5㎡
	자-11	진관외동 242-6 외	84.0	84.0							자-11	진관외동 242-6 외	84	8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체육 단련 시설	⑨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11	⑨	2개소							11		
	⑨-1	"						(6)	⑨-1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6		
	⑨-2	"						(5)	⑨-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5		
운동 시설	1	진관외동 산242-23	4,610.0	4,610.0	철근콘 크리트	1.0	2,488.5	8,044.5		1	진관외동 산242-23	4,610	4,610	철근콘 크리트	1.0	2,488.5	8,044.5			
	차	불광동 458-2전	604.0	604.0						차	불광동 458-2전	604	604							
	소계			6,380.0	6,380.0							6,380	6,380							
교양 시설	타	진관외동 산19-5	957.0	957.0						타	진관외동 산19-5	957	957							
	파		5,423.0	5,423.0						파	9개소	5,423	5,423							
	체 험 장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타	터발	파-1	불광동 466-3	3,593.0	3,593.0						파-1	불광동 466-3	3,593	3,593						
	농업 진흥 전시장	파-2	불광동 464	187.0	187.0						파-2	불광동 464	187	187						
	학습장	파-3	불광동 467-1	143.0	143.0						파-3	불광동 467-1	143	143						
	실습장	파-4	불광동 460-1	127.0	127.0						파-4	불광동 460-1	127	127						
	식용 식물원	파-5	불광동 458-1	406.0	406.0						파-5	불광동 458-1	406	406						
	안양 식물원	파-6	불광동 458-1	602.0	602.0						파-6	불광동 458-1	602	602						
	치유 정원	파-7	불광동 463-2	158.0	158.0						파-7	불광동 463-2	158	158						
	터버전	파-8	불광동 466	84.0	84.0						파-8	불광동 466	84	84						
	초화원	파-9	불광동 463-3	123.0	123.0						파-9	불광동 463-3	123	123						
계 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차장 편익 시설	소계		2,232.3	2,232.3		2.0		3,796.7	4			2,330	2,330		3	97.4	3,894.1	2	증 97.7㎡	
		하	진관외동 242-9 일원	2,232.3	2,232.3		2.0		3,796.7	(2)	하	5개소	2,232	2,232		2		3,796.7	2	감 0.3㎡
		하-1	진관외동 242-9	1,450.0	1,450.0						하-1	진관외동 242-9	1,450	1,450						
		하-2	테니스장 지하	(803)		1.0		802.7	(1)	하-2	테니스장 지하		(803)		1		802.7	1		
		하-3	축구장 지하	(2994)		1.0		2,994.0	(1)	하-3	축구장 지하		(2,994)		1		2,994.0	1		
		하-4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349.3	349.3						하-4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349	349						감 0.3㎡
화장실		하-6	불광동 457	433.0	433.0					하-6	불광동 457	433	433							
										3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98	98		1	97.4	97.4		시설변경 관리-편익 부호변경 (④-1-3) 증) 98㎡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 시설	소계		890.2	715.0		4	599.6	599.6	13			793	618		3	502.2	502.2	13	감) 97㎡
	2	진관외동 산184-3	759.8	584.6		3.0	502.2	502.2	1	2	3개소	760	585		3	502.2	502.2	1	증) 0.4㎡
	2-1	진관외동 산184-3	158.0	158.0	철근콘 크리트	1.0	99.0	99.0	(1)	2-1	진관외동 산184-3	158	158	철근콘 크리트	1	99.0	99.0	1	
	2-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262.8	262.8		1.0	262.8	262.8		2-2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263	263		1	262.8	262.8		증) 0.2㎡
	2-3	불광동 462-2전	339.0	163.8	철근콘 크리트	1.0	140.4	140.4		2-3	불광동 462-2전	339	164	철근콘 크리트	1	140.4	140.4		증) 0.2㎡
휴지 통	㉞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2	㉞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2	
공원 안내판	㉟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2	㉟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2	
시설 안내판	㊱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3	㊱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공영등 관리 시설	㉓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4	㉓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철재				4	
	㉔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130.4	130.4		1.0	97.4	97.4	1										감) 130.4㎡
	㉔-1	진관외동 산109-25 일원	97.4	97.4		1.0	97.4	97.4											시설변경 관리→편의 감) 97.4㎡
	㉔-2	불광동466-1	33.0	33.0					(1)										시설변경 관리→편의 감) 33.0㎡
농기구 관리실										4	불광동466-1	33	33					1	시설변경 (화장실→ 농기구관리실) 부호변경 (㉔-2→4) 증) 33㎡
복지 및 기타			206,352.2									165,288							감) 41,064.2㎡

3. 도로조서 (변경결정)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당초	합 계				5,559.0	10,977.0				
변경					3,857	8,051				
당초	소로	계			78.0	390.0				
변경					71	359				
당초		3류	1	5	78.0	390.0	연결로	불광동 43-1	불광동 산5-9임	
변경		3류	1	5	71	359	연결로	불광동 43-1	불광동 산6-1	
당초		산책로	계			5,481.0	10,587.0			
변경					3,786	7,692				
당초	3류		1	2	274.0	548.0	연결로	피크닉장(다)	구민체육센터(1)	
폐지										
당초			2	2	120.0	240.0	연결로	산책로(4-9)	체육시설(자-3)	구역 편입
폐지										
당초			3	2	571.0	1,142.0	산책로	휴게소(나-1)	산책로(4-5)	구역 편입
폐지										
당초			4	2	75.0	150.0	산책로	불광동 산194	불광동 산138-1	구역 편입
변경			4	2	401	803	산책로	진관동 364	산책로 5	
당초			5	2	413.0	826.0	산책로	불광동 산134	산책로(4-11)	구역 편입
변경			5	2	452	904	산책로	불광동 473	진관동 산52	
당초			8	2	97.0	194.0	연결로	불광동 산155임	체력단련장(자-3)	구역 편입
폐지										
당초			9	2	139.0	278.0	산책로	진관외동189-1	산책로(4-5)	구역 편입
변경			9	2	65	130	산책로	진관동 125-1	진관동 125-1	
당초			10	2	86.0	172.0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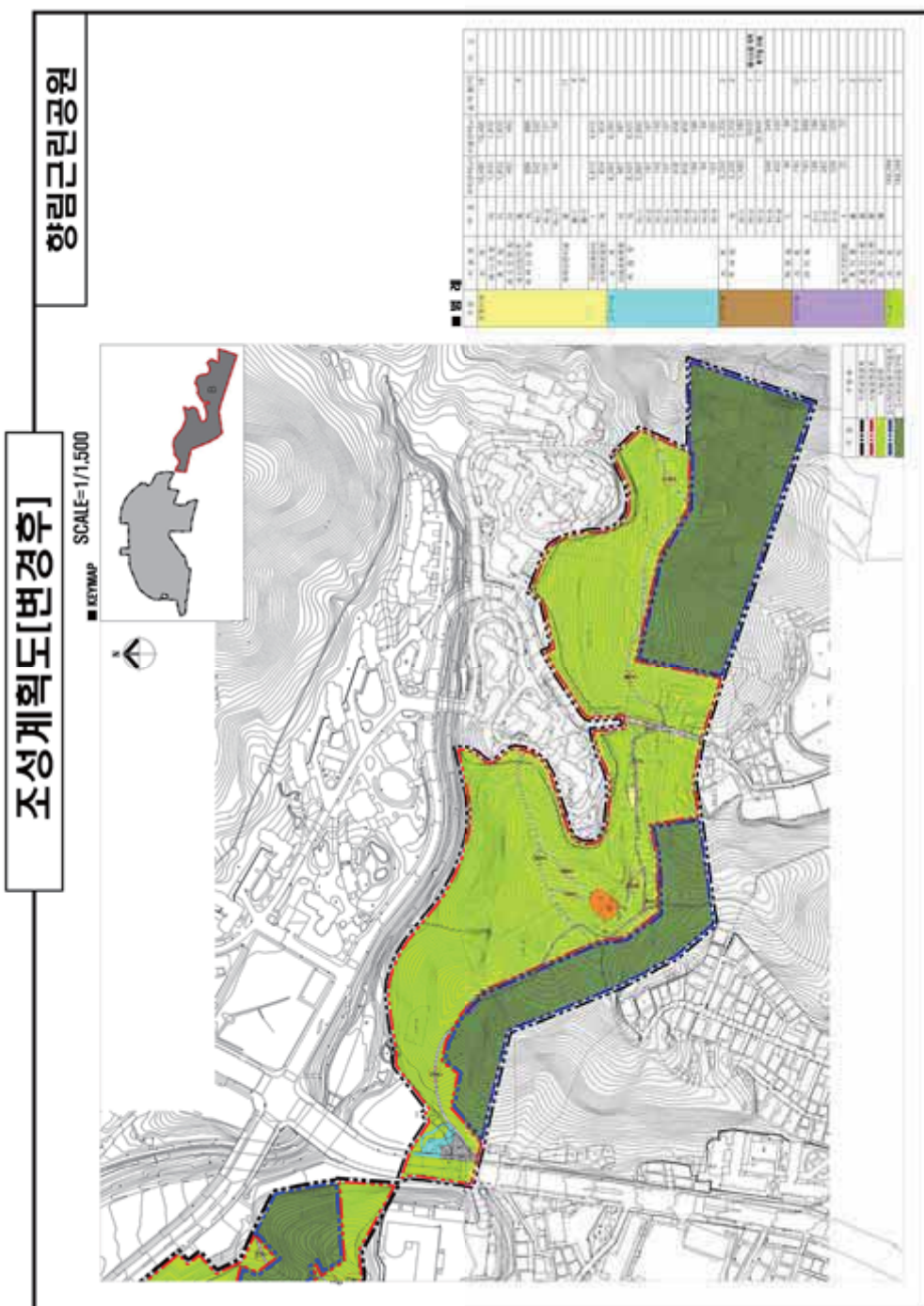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폐지										
당초			11	3	71.0	213.0	부진입로	불광동 산21-1임	배드민턴장(아-1)	구역 편입
변경			11	2	7	15	부진입로	진관동 산21-1	진관동 산52	
당초			13	2	71.0	142.0	연결로	진관외동 산186-2임	배구장(사)	구역 편입
변경			13	2	67	114	연결로	산책로 5	진관동 산52-3	
당초	산 책 로	3류	15	2	634.0	1,268.0	산책로	야생초화류원(차)	소로(3-2)	구역 편입
변경			15	2	433	867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16	2	145.0	290.0	산책로	소로(3-2)	불광동산5-1임	
폐지										
당초			17	2	91.0	182.0	산책로	불광동산4-6임	불광동4-4임	구역 편입
변경			17	2	77	135	산책로	불광동 산4-5	불광동 산109-42	
당초			18	2	49.0	98.0	산책로	불광동산16임	체력단련장(자-1)	구역 편입
폐지										
당초			19	2	40.0	80.0	연결로	진관외동 475-33	산책로(4-4)	
폐지										
당초			20	2	83.0	166.0	산책로	축구장(마)	배드민턴장(아-1)	
변경			20	2	173	347	산책로	구민체육센터 (1)	진관동 산54-10	
당초			21	2	45.0	90.0	산책로	산책로(4-21)	산책로(4-5)	
폐지										
당초			23	2	3.0	6.0	산책로	파크닉장(다)	체력단련장(자-8)	
폐지										
당초			24	2	6.0	12.0	산책로	체력단련장(자-8)	진관동 239-19	
폐지										
당초			25	2	12.0	25.0	산책로	광장(가-2)	산책로 2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변경	당초	3류	25	2	12.0	25.0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 26	구역 편입
당초			26	2	129.0	155.0	산책로	산책로(4-24)	진관동 산110	
변경			26	2	136	273	산책로	산책로 25	진관동 산125-1	
당초			27	2	190.0	380.0	산책로	광장(가-3)	배드민턴장 (아-3)	구역 편입
폐지										
당초			28	2	15.0	31.0	산책로	산책로(4-26)	진관동 산109-26	
변경			28	2	15.0	31.0	산책로	산책로 15	불광동 산6-10	구역 편입
당초			29	2	28.0	56.0	산책로	산책로(4-27)	진관동 산109-23	
변경			29	2	59	119	산책로	휴게소 (나-9)	불광동 산109-22	
당초	산책로	3류	30	2	77.0	150.0	산책로	배드민턴장 (아-3)	진관동 산109-25	구역 편입
변경			30	2	63	127	산책로	휴게소 (나-9)	산책로 32	
당초			31	2	41.0	83.0	산책로	진관동 산109-25	진관동 산109-25	
변경			31	2	37	75	산책로	휴게소 (나-9)	산책로 32	구역 편입
당초			32	2	180.0	361.0	산책로	진관동 산109-25	진관동 산109-25	
변경			32	2	122	345	산책로	불광동 산109-47	산책로 15	
당초			33	1.5	40.0	60.0	산책로	진관동 152-29	산책로(4-31)	구역 편입
폐지										
당초			34	1.5	79.0	119.0	산책로	광장(가-4)	불광동 산5-5	
변경			34	2	223	446	산책로	소로 3-1	불광동 산109-42	구역 편입
당초			35	1.5	156.0	234.0	산책로	산책로(4-33)	진관동 152-15	
폐지										
당초			36	3	142.0	426.0	산책로	진입광장	가-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변경	당초	3류	36	3	140	420	산책로	불광동 457	광장 (가-5)	
당초			37	3	84.0	252.0	산책로	광장(가-5)	산책로 38	
변경			37	3	84.0	252.0	산책로	광장(가-5)	산책로 38	
당초			38	3	175.0	525.0	산책로	불광동 산143-13	불광동 산155-1	
변경			38	3	178	534	산책로	불광동 산143-13	불광동 산155	
당초			39	2	177.5	355.0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 38	
변경			39	2	177.5	355.0	산책로	산책로 36	산책로 38	
당초			40	2	55.0	110.0	산책로	산책로 39	산책로 37	
변경			40	2	55.0	110.0	산책로	산책로 39	산책로 37	
당초			41	2	44.5	89.0	산책로	산책로 39	광장 (가-5)	
변경			41	2	44.5	89.0	산책로	산책로 39	광장 (가-5)	
당초			42	1.5	96.0	144.0	산책로	산책로 39	산책로 36	
변경			42	1.5	51	76	산책로	산책로 39	산책로 36	
당초	산책로	3류	43	1.5	52.0	78.0	산책로	산책로 36	산책로 36	
변경			43	1.5	52.0	78.0	산책로	산책로 39	산책로 36	
당초			44	1.5	20.0	30.0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48	
변경			44	1.5	20.0	30.0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48	
당초			45	1.5	38.0	57.0	산책로	산책로 40	산책로 37	
변경			45	1.5	38.0	57.0	산책로	산책로 39	산책로 36	
당초			46	1.2	27.5	33.0	산책로	산책로 43	산책로 42	
변경			46	1.5	25	38	산책로	산책로 43	산책로 42	
당초			47	1.2	80.0	96.0	산책로	산책로 36	불광동 산21-1	구역 편입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변경			47	1.5	63	95	산책로	산책로 36	불광동 산21-1	
당초			48	1.2	177.5	213.0	산책로	산책로 47	산책로 38	
변경			48	1.5	177	266	산책로	산책로 47	산책로 38	
당초			49	1.2	167.5	201.0	산책로	산책로 47	산책로 54	구역 편입
변경			49	1.5	104	156	산책로	산책로 47	산책로 54	
당초			50	1.2	35.0	42.0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9	
변경			50	1.5	34	51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9	
당초			51	1.2	27.5	33.0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9	
변경			51	1.5	26	39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9	
당초			52	1.2	45.0	54.0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 48	
변경			52	1.5	45	68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 48	
당초			53	1.2	35.0	42.0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 38	
변경			53	1.5	35	53	산책로	산책로 49	산책로 38	
당초			54	1.2	35.0	42.0	산책로	산책로 38	불광동 산156-5	
변경			54	1.5	43	64	산책로	산책로 38	불광동 산151-2	
당초			55	2	7.0	14.0	산책로	진입도로	산책로 39	
변경			55	2	7	14	산책로	산책로 39	불광동 459	
신설			56	2	22	45	연결로	산책로 5	불광동 산137-3	
신설			57	2	23	46	연결로	산책로 5	불광동 산 148-8	구역 편입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개명교	개봉동 314-117	구로구 도로과	- 다중이 이용하는 교량시설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손상에 대해 보수·보강 실시	
개웅교	개봉동 370-40	구로구 도로과			
구로2교	구로동 125	구로구 도로과			
신도림1교	신도림동 349-75	구로구 도로과			
신도림교	구로동 3-55	구로구 도로과			
철산2교	개봉동 277-17	구로구 도로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변경(폐지)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을 시행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주차장	서초구 신원동 225일대	11,979	감)11,97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5호 (2009.06.11.)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나.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11,979㎡ → 0㎡	“주차장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부정정보” (국토부)로 인하여 집행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지역공공시설(노인요양시설, 보건지소), 주민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노인복지정책의 거점공간 마련

다. 지형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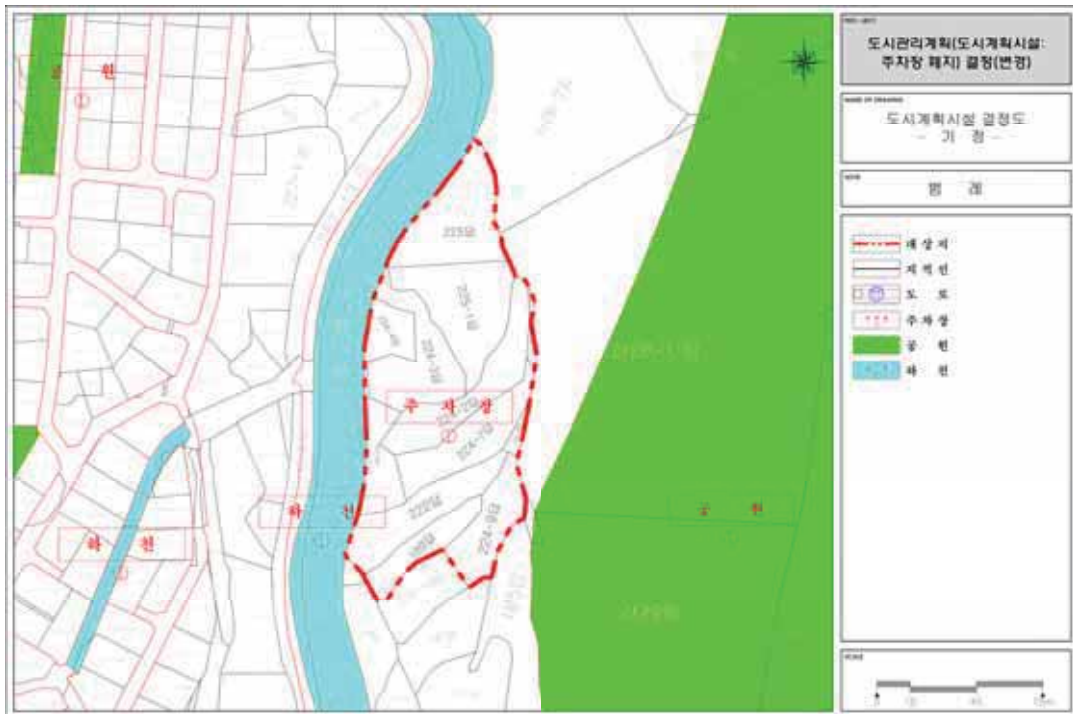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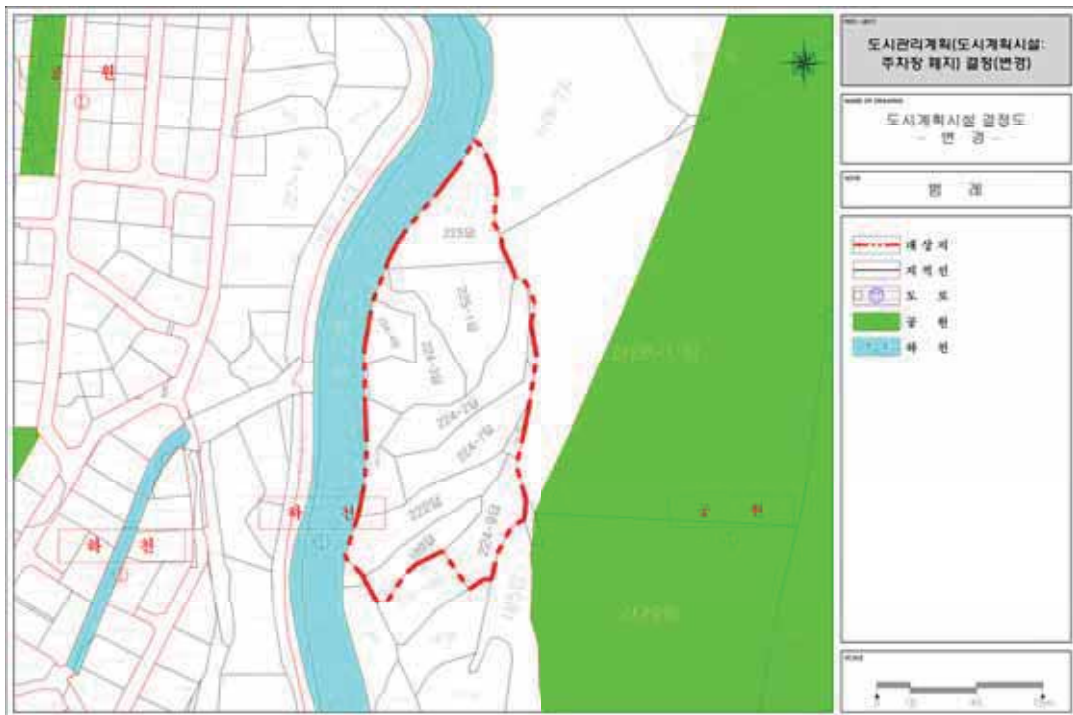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54)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2155-6791)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83호 (2021.07.22.)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노원구 상계동 690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종류: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노원구 상계동 690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칭	대표자	주소
(주)엘애피개발	박경훈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13, 2층 228호 (현암동)

※ 담보신탁 : 위탁자(주식회사 엘애피개발), 수탁자(주식회사 우리은행)

4. 사업의 시행기간
 - 지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 나. 대지면적: 2,892.30㎡
 - 다. 건 폐 율: 59.94% (건축면적: 1,733.67㎡)
 - 라. 용 적 륜
 - 지정 : 762.08%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2,041.5041㎡)
 - 변경 : 762.0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2,039.2970㎡)
 - 마. 용 도: 공동주택(공공임대 22세대/민간임대 280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 바. 규 모
 - 지정 : 1개동, 지하4층/ 지상23층, 연면적 30,342.0467㎡

- 변경 : 1개동, 지하4층/ 지상23층, 연면적 30,302.4163㎡
- 사.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 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7호

돌산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265호(2015.09.10.)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4호(2021.02.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체육)된 강남구 돌산체육공원에 대하여 2021년 제1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공원의 경계, 면적 등이 변경,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 결정된 돌산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반영하고 체육공원의 기능에 부합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산1-7번지 일대

3. 면 적 : 43,96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342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돌산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세곡동 산1-7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면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 시설	계	98,417.00	37,443.57	2	823.19	823.19	225	43,968.00	21,927.83	1	136.83	136.83	80	감 54,449㎡ (도시자연공원구역 52,748.9㎡ / 근린공원 1,700.1㎡) 시설면적 감 15,515.74㎡ (감 14571)				
		11,038.95	11,038.95					5,302.00	5,302.00					감 5,736.95㎡				
		9,480.70	9,480.70					4,078.00	4,078.00					감 5,402.70㎡				
		1,558.25	1,558.25					1,224.00	1,224.00					감 334.25㎡				
조 경 시 설		1,552.68	1,552.68				2	1,059.00	1,059.00					감 483.68㎡ (감 2기)				
유 희 시 설		3,883.44	3,883.44				2	-	-					감 3,883.44㎡ (감 2기)				
휴 양 시 설		10,253.73	10,253.73				63	101.00	101.00				55	감 10,152.73㎡ (감 8기)				
교 양 시 설		224.31	224.31					-	-					감 224.31㎡				
운 동 시 설		7,262.40	7,262.40				1	13,255.00	13,255.00				11	증 5,992.80㎡ (증 107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편 의 시 설	1,230.89	1,230.89	2	823.19	823.19	6	2,167.99	2,167.99	1	93.99	93.99	증 937.10㎡ (감 6기)	
관 리 시 설	1,997.17	1,997.17				151	42.84	42.84	1	42.84	42.84	감 1,954.33㎡ (감 137기)	
녹 지 및 기 타	60,973.43						22,040.17	-				녹지면적 감소 감 38,933.26㎡	
시 설 율 (법정 50%)	$(37,443.57 / 98,417.00) \times 100 = 38.05\%$						$(21,927.83 / 43,968.00) \times 100 = 49.87\%$						
건 폐 율 (법정 15%)	$(823.19 / 98,417.00) \times 100 = 0.84\%$						$(136.83 / 43,968.00) \times 100 = 0.3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 의 시 설	파고라 ①									(2)									(감 2기)
	소계			3,883.44					2										감 3,883.44㎡ (감 2기)
	유아실	마	을현동 산10-1	1,404.01															감 1,404.01㎡
	체험시설A ①								(1)										(감 1기)
	모험놀이실 바		을현동 산7	2,479.43															감 2,479.43㎡
체험시설B ②									(1)										(감 1기)
후 앙 시 설	소 계			10,253.73					63			101.00	101.00					55	감10,152.73㎡ (감 8기)
	휴게소	다		717.50															감 717.50㎡
		다-1	을현동 산10-1	(216.54)	(216.54)														감 216.54㎡
		다-2	을현동 산10	(23.47)	(23.47)														감 23.4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터	다-3	월현동 산10	(229.38)	(229.38)														감 229.38㎡	
	다-4	월현동 산4	(248.11)	(248.11)														감 248.11㎡	
	하										101.0	101.0						증 101.0㎡	
	하-1									하-1	세곡동 산1-7	(49.00)	(49.00)					증 49.0㎡	
캠핑장	하-2									하-2	세곡동 산1-7	(52.00)	(52.00)					증 52.0㎡	
	라			9,536.23	9,536.23													감 9,536.23㎡	
	라-1	월현동 산10-1	(4,633.38)	(4,633.38)														감 4,633.38㎡	
	라-2	월현동 산10-1	(2,869.09)	(2,869.09)														감 2,869.09㎡	
임대주택	라-3	세곡동 산1-7	(2,033.76)	(2,033.76)														감 2,033.76㎡	
	②								(13)									(감 13기)	
	③								(31)	③								(증 9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평의자	④									(9)	(감 3기)
										(1)	(증 1기)
										(4)	(증 4기)
										(1)	(증 1기)
평상	⑤										(감 1기)
아외 테이블	⑥										(감 6기)
교양 시설	소계		224.31	224.31							감 244.31㎡
	생태학습원 아	울현동 산7	224.31	224.31							감 244.31㎡
야외 시설	소 계		7,262.40	7,262.40				13,255.00	13,255.00	11	증 5,992.60㎡ (증 10기)
	축구장	사	울현동 산10-1	7,262.40	7,262.40			9,430.00	9,430.00		증 2,167.60㎡
	테니스장							2,405.00	2,405.00		증 2,405.00㎡

구	분	본				경				전				본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담면적	연면적								비담면적	연면적					
스탠드	⑨									(1)	⑨	세곡동 산10-2								(1)			
											너		475.00	475.00							증 475.00㎡		
											너-1	세곡동 산10-2	(161.00)	(161.00)							증 161.00㎡		
											너-2	세곡동 산10-2	(130.00)	(130.00)							증 130.00㎡		
아외 운동시설											너-3	세곡동 산1-7	(184.00)	(184.00)							증 184.00㎡		
											㉔									(10)	(증 1071)		
											더	세곡동 산10-2	945.00	945.00							증 945.00㎡		
			1,230.89	1,230.89		2	823.19	823.19	6				2,167.99	2,167.99		1	93.99	93.99			증 937.10㎡ (감 671)		
평민이사설	범문자센터	자	세곡동 산1-7	680.96					1	528.97	528.97										감 680.96㎡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차	월현동 산10-1	448.14		1	294.22	294.22													감 448.14㎡		
	화장실	카	세곡동 산1-7	20.15						(1)	카	세곡동 산1-7	93.99	93.99		1	93.99	93.99			증 73.84㎡ (감 17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영센터	타		81.64	81.64					(2)										감 81.64㎡ (감 27기)
	타-1	월현동 산10-1	(38.44)	(38.44)					(1)										감 38.44㎡ (감 1기)
	타-2	월현동 산7	(43.20)	(43.20)					(1)										감 43.20㎡ (감 1기)
주차장										파	세곡동 산1-7	2,074.00	2,074.00						증 2,074.0㎡
음수전	㉑								(3)										(감 3기)
소계			1,997.17	1,997.17					151			42.84	42.84		1	42.84	42.84	14	감1,954.33㎡ (감 137기)
주차장	파	세곡동 산1-7	1,997.17	1,997.17															감1,997.17㎡
휴지통	㉒								(19)										(감 19기)
조명탑	㉓								(2)										(감 2기)
공관등	㉔								(88)										(감 88기)
경관등	㉕								(17)										(감 17기)

관리시설

관 리 시 설

구분	경 전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인내판	㉔											(감 20기)		
	㉕											(감 9기)		
인내판							㉔					(증 14기)		
관리실							러	세곡동 산1-7	42.84	42.84	1	42.84	42.84	증 42.84㎡
소계			60,973.43						22,040.17					감 38,933.26㎡
	복지 및 기타		60,973.43						22,040.17					감 38,933.26㎡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273.3	9,480.70				
변경					1,212.0	4,078.00				
신설	소로	2	1	7.0	17.0	138.00	주진입로	공원경계	주차장 파	
당초		3	1	4	719.4	2,914.13	주진입로	소로 3-19	소로 3-19	
변경										
당초		3	2	6	35.0	212.08	연결로	진입광장	소로 3-3	
변경										
당초		3	3	4	208.5	855.12	순환로	소로 3-1	소로 3-1	
변경										
당초		3	4	4	148.3	599.66	연결로	소로 3-3	소로 3-1	
변경										
당초		3	5	4.0~ 6.3	102.7	450.08	연결로	진입광장	소로 3-1	
변경										
당초		3	6	3	31.1	93.18	산책로	소로 3-5	소로 3-3	
변경										
당초		3	7	3	46.2	138.61	산책로	소로 3-5	소로 3-3	
변경										
당초		3	8	3	47.0	140.84	산책로	소로 3-5	소로 3-1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9	3	29.0	87.03	산책로	소로 3-5	소로 3-1	
변경										
당초		3	10	3	29.0	87.12	산책로	소로 3-5	소로 3-1	
변경										
당초	소로	3	11	3	17.8	53.31	산책로	소로 3-5	소로 3-1	
변경										
당초		3	12	2	77.1	154.92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변경										
당초		3	13	2	67.4	134.86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변경										
당초		3	14	2	48.6	97.06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변경										
당초		3	15	2	11.3	22.83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7	
변경										
당초		3	16	2	24.2	48.59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7	
변경										
당초		3	17	2	50.8	101.68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9	
변경										
당초		3	18	2.5	4.7	11.59	산책로	소로 3-19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당초		3	19	2	73.2	149.83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4	
변경										
당초		3	20	2	40.7	107.88	산책로	소로 3-19	소로 3-4	
변경										
당초		3	21	2	64.0	127.95	산책로	소로 3-4	소로 3-22	
변경										
당초		3	22	2	71.8	152.41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변경										
당초	소로	3	23	3	107.2	329.87	산책로	소로 3-3	소로 3-23	
변경										
당초		3	24	2.5	14.2	21.99	산책로	소로 3-1	공원경계	
변경										
당초		3	25	2	21.1	42.19	산책로	소로 3-1	휴게소2	
변경										
당초		3	26	1.5	32.2	48.15	산책로	소로 3-11	소로 3-30	
변경										
당초		3	27	1.5	30.4	45.38	산책로	소로 3-25	소로 3-25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28	1.5	31.2	46.55	산책로	소로 3-25	휴게소2	
변경										
당초		3	29	2	69.8	139.78	연결로	휴게소2	소로 3-30	
변경										
당초		3	30	2.0~ 4.0	257.5	537.73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4	
변경										
당초		3	31	2.0	89.8	179.40	진입로	휴게소4	공원경계	
변경										
당초		3	32	2.0	103.8	207.67	산책로	소로 3-30	소로 3-30	
변경										
당초		3	33	2.0	127.1	254.27	부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5	
변경										
당초		3	34	2.0	199.3	398.30	부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3	
변경										
당초		3	35	2.0	129.8	260.22	산책로	휴게소3	소로 3-30	
변경										
당초		3	36	2.0	97.3	195.44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34	
변경										
당초		3	37	2.0	14.8	33.0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1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38	3.0	32.0	103.0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	
신설		3	39	3.0	580.0	1,739.00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1	
신설		3	40	3.0	77.0	241.0	산책로	소로 3-39	소로 3-43	
신설		3	41	3.0	48.0	147.0	산책로	소로 3-43	소로 3-44	
신설		3	42	3.5	31.0	109.0	산책로	소로 3-39	소로 3-44	
신설		3	43	3.0	113.0	340.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39	
신설		3	44	6.0	115.0	693.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39	
신설		3	45	3.0	134.0	434.0	산책로	소로 3-39	광장 가-1	
신설		3	46	2.0	18.0	36.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9	
신설		3	47	2.0	20.0	43.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9	
신설		3	48	2.0	27.0	55.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9	

조성계획도(변경전)_S = 1/140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項目	単位	数量	金額	備考
① 雑費	円	100	100	
② 雑費	円	100	100	
③ 雑費	円	100	100	
④ 雑費	円	100	100	
⑤ 雑費	円	100	100	
⑥ 雑費	円	100	100	
⑦ 雑費	円	100	100	
⑧ 雑費	円	100	100	
⑨ 雑費	円	100	100	
⑩ 雑費	円	100	100	
⑪ 雑費	円	100	100	
⑫ 雑費	円	100	100	
⑬ 雑費	円	100	100	
⑭ 雑費	円	100	100	
⑮ 雑費	円	100	100	
⑯ 雑費	円	100	100	
⑰ 雑費	円	100	100	
⑱ 雑費	円	100	100	
⑲ 雑費	円	100	100	
⑳ 雑費	円	100	100	
㉑ 雑費	円	100	100	
㉒ 雑費	円	100	100	
㉓ 雑費	円	100	100	
㉔ 雑費	円	100	100	
㉕ 雑費	円	100	100	
㉖ 雑費	円	100	100	
㉗ 雑費	円	100	100	
㉘ 雑費	円	100	100	
㉙ 雑費	円	100	100	
㉚ 雑費	円	100	100	
㉛ 雑費	円	100	100	
㉜ 雑費	円	100	100	
㉝ 雑費	円	100	100	
㉞ 雑費	円	100	100	
㉟ 雑費	円	100	100	
㊱ 雑費	円	100	100	
㊲ 雑費	円	100	100	
㊳ 雑費	円	100	100	
㊴ 雑費	円	100	100	
㊵ 雑費	円	100	100	
㊶ 雑費	円	100	100	
㊷ 雑費	円	100	100	
㊸ 雑費	円	100	100	
㊹ 雑費	円	100	100	
㊺ 雑費	円	100	100	
㊻ 雑費	円	100	100	
㊼ 雑費	円	100	100	
㊽ 雑費	円	100	100	
㊾ 雑費	円	100	100	
㊿ 雑費	円	100	100	
① 雑費	円	100	100	
② 雑費	円	100	100	
③ 雑費	円	100	100	
④ 雑費	円	100	100	
⑤ 雑費	円	100	100	
⑥ 雑費	円	100	100	
⑦ 雑費	円	100	100	
⑧ 雑費	円	100	100	
⑨ 雑費	円	100	100	
⑩ 雑費	円	100	100	
⑪ 雑費	円	100	100	
⑫ 雑費	円	100	100	
⑬ 雑費	円	100	100	
⑭ 雑費	円	100	100	
⑮ 雑費	円	100	100	
⑯ 雑費	円	100	100	
⑰ 雑費	円	100	100	
⑱ 雑費	円	100	100	
⑲ 雑費	円	100	100	
⑳ 雑費	円	100	100	
㉑ 雑費	円	100	100	
㉒ 雑費	円	100	100	
㉓ 雑費	円	100	100	
㉔ 雑費	円	100	100	
㉕ 雑費	円	100	100	
㉖ 雑費	円	100	100	
㉗ 雑費	円	100	100	
㉘ 雑費	円	100	100	
㉙ 雑費	円	100	100	
㉚ 雑費	円	100	100	
㉛ 雑費	円	100	100	
㉜ 雑費	円	100	100	
㉝ 雑費	円	100	100	
㉞ 雑費	円	100	100	
㉟ 雑費	円	100	100	
㊱ 雑費	円	100	100	
㊲ 雑費	円	100	100	
㊳ 雑費	円	100	100	
㊴ 雑費	円	100	100	
㊵ 雑費	円	100	100	
㊶ 雑費	円	100	100	
㊷ 雑費	円	100	100	
㊸ 雑費	円	100	100	
㊹ 雑費	円	100	100	
㊺ 雑費	円	100	100	

[illegible]

조성계획도(변경)

S = 1/1400

돌산체육공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8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8호(2007.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5호(2007.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5호(2010.03.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2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2호(2012.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32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4호(2016.07.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5호(2017.08.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5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9호(2018.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36호(2018.05.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5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호(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2호(2021.07.2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 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360,941.2	-	360,941.2	· 강서구 방화동로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 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년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변경없음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60,941.2	-	360,941.2	100.0
택 지	소 계	251,798.2	-	251,798.2	69.7
	주택건설용지	251,798.2	-	251,798.2	69.7
기반시설	소 계	107,080.0	-	107,080.0	29.7
	도 로	61,135.0	-	61,135.0	16.9
	공원 및 녹지	12,976.0	-	12,976.0	3.6
	광 장	2,744.0	-	2,744.0	0.8
	학 교	27,723.0	-	27,723.0	7.7
	공 공 청 사	1,496.0	-	1,496.0	0.4
	사회복지시설	1,006.0	-	1,006.0	0.3
기 타	종 교 시 설	2,063.0	-	2,063.0	0.6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13,200인/5,136세대 : 변경없음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존 치 구 역 (존치관리, 존치정비구역)	904	-	904	2,323	-	2,323	방화2구역, 존치아파트(해태, 청성)
재정비촉진구역 (4개소)	4,232	-	4,232	10,877	-	10,877	건등마을구역, 방화3구역, 방화6구역, 방화5구역
계	5,136	-	5,136	13,200	-	13,200	인구: 2.57인/세대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육시설	계	2	27,723	-	27,723	-
	방화중학교	1	13,515	-	13,515	-
	공향중학교	1	14,208	-	14,208	-
공공청사 복지시설	계	4	2,502	-	2,502	
	사회복지시설	3	1,006	-	1,006	어린이집(방화3구역) 어린이집 및 경로당(방화5구역) 어린이집(방화6구역)
	공공청사	2	1,496	-	1,496	방화2동주민센터(방화3구역) 공공청사(방화6구역)

4) 공원·녹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	12,976.0	-	12,976.0	-
공원시설	계	4	12,649.0	-	12,649.0	-
	어린이공원	4	12,649.0	-	12,649.0	· 방화2, 3, 5, 긴등마을구역 (구역별 1개소)
녹지시설	계	1	327.0	-	327.0	-
	경관녹지	1	327.0	-	327.0	· 긴등마을구역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7)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60,941.2	-	360,941.2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계		252,342.2	-	252,342.2	-	-
	간등마을		31,668.0	-	31,668.0	주택재건축사업	기정
	방화6구역		31,554.2	-	31,554.2	주택재건축사업	기정
	방화3구역		90,383.0	-	90,383.0	주택재건축사업	기정
	방화5구역		98,737.0	-	98,737.0	주택재건축사업	기정
준치 지역	준치 정비구역	방화2구역	35,390.0	-	35,390.0	-	-
	준치 관리구역	기반시설 및 준치구역	73,209.0	-	73,209.0	-	-

8)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9)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역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재정비 촉진구역	간등마을구역	공동주택	30	180	239.69	15	• 해발 57.86m 미만
	방화6구역	공동주택	60	210	236.00	16	• 해발 57.86m 미만
	방화3구역	공동주택	30	180	220.00	15	• 해발 57.86m 미만
	방화5구역	공동주택	60	180	220.11	15	• 해발 57.86m 미만
준치 정비구역	방화2구역	공동주택	60	180	230.00	15	• 해발 57.86m 미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시설 ⑤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기 정	간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31,668.0	3,809.0	183.0	634.0	-	2,992.0	9.4
기 정	방화6재정비 촉진구역	31,554.2	5,410.95	2,602.3	1,822.62	-	986.03	3.1
기 정	방화3재정비 촉진구역	90,383.00	15,016.0	2,979.0	5,599.3	-	6,437.7	7.1
기 정	방화5재정비 촉진구역	98,737.0	18,238.7	5,347.0	6,205.0	-	6,472.7	6.5

※ 계획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 + 공공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내 KH건축물(준치)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2017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17.7.11) 의견에 따라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함(214㎡)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계획세대수 (분양+임대)	분양	임대		비고
				세대	비율(%)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4,232	4,004	228	5.4	
	간등마을	603	544	59	9.8	-
	방화6구역	557	537	20	3.6	
	방화3구역	1,415	1,327	88	6.2	-
	방화5구역	1,657	1,596	61	3.7	-

-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13)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14)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15) 기타계획(정보화계획, 에너지계획, 방재계획, 특성화계획 등) : 변경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가. 긴등마을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나.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없음
라.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

■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위치,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 (방화동 608-97)일대	31,554.2	-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554.2	-	31,554.2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4,653.0	-	4,653.0	14.7	-
	도 로		4,257.0	-	4,257.0	13.5	-
	공 원		396.0	-	396.0	1.2	• 중복결정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획 지	소 계		26,901.2	-	26,901.2	85.3	-
	공동 주택 용지	획지1	26,415.2	-	26,415.2	83.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324.0	-	324.0	1.0	-
		획지3	162.0	-	162.0	0.5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5	집산 도로	100	방화대로 29길 4	초원로 16길 17	일반	-	서고 제2010-105호 (2010.3.25)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2	방화대로 29길 4-5	방화대로 29길 4-5	일반	-	-	-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공청사	초원로16길 17-6 (방화동 217-62)	396	-	396	서고제2016-194호(2016.7.7.)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전 (관리청:강서구청)
		사회복지시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공공청사(지하1~2층, 지상4~6층), 사회복지시설(지상1~지상3층)

※ 관리부서협의를 따른 세부시설 결정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청사	초원로16길 17-6 (방화동 217-62)	396	-	396	서고제2016-194호(2016.7.7.)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우리동네커뮤니티 (관리청:강서구청)
		사회복지시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공공청사(지하1~2층, 지상4~6층), 사회복지시설(지상1~지상3층)

※ 관리부서협의를 따른 세부시설 결정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방화6 재정비 촉진구역	31,554.2	획 지 (1-1)	26,415.2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 (방화동 608-97)일대	136	-	-	136	-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 설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방화6 재정비 촉진구역	31,554.2	획지 Ⅰ-1	26,415.2	방화대로25길13 (방화동608-97)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 설	60이하	236이하	해발 57.86m 미만	16층	
			획지 Ⅰ-2	324.0	방화대로29길 4-13 (방화동217-49)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 Ⅰ-3	162.0	방화대로29길 4-4 (방화동217-43)일대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총세대수 : 557세대								
			구분(전용면적)		세대수(세대)		구성비(%)		비고		
			합 계		557		100.0				
			임대	60㎡이하	20		3.6				
			분양	소 계		537		96.4			
				60㎡이하		103		18.5			
				60㎡~85㎡		370		66.4			
				85㎡초과		64		11.5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β+((허용용적률+β)×1.3α) = 210+5+((210+5)×1.3×0.03772) = 225.54% ※ α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986.03㎡/26,143.25㎡ = 0.03772 ※ β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986.03㎡ - 토지 기부채납(순부담) : 228.08㎡ (도로 -167.92㎡, 공공청사부지 396㎡) - 시설물 기부채납(환산부지면적) : 757.95㎡ (공공청사 512.20㎡ + 사회복지시설 245.75㎡)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4.08) 및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2017) 적용								
			○ 예정 법정상한용적률 : 235.12%								
○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률 = (235.12%-225.54%) × 50% = 4.790%											
○ 소형임대주택건설 연면적 = 26,415.2㎡×4.790% = 1,265.29㎡ 이상 확보 필요.											
전용면적		공공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세대수		연면적	
44.93㎡		16.20㎡		61.13㎡		35.77㎡		14		1,344.80㎡	
59.97㎡		21.53㎡		81.50㎡		47.77㎡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40m도로변: 건축한계선 5m ○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5m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8m - 대상지 중앙부 동서축 공공보행통로 지정								

※ 시설물기부채납 최소확보 연면적 : 공공청사 1,080㎡, 사회복지시설 480㎡

※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라 무상양도 되는 면적은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에서 제외하고 용적률을 재산정할 것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단독주택재건축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2019.4.25.)반영. 현 사업단계에서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손실보상에 대한 용적률인센티브 5%를 적용하고, 향후 관리처분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계획등을 재조정(최대 10%이내)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방화6 재정비 촉진구역	31,554.2	획지 I-1	26,415.2	방화대로25길13 (방화동608-97)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 설	60이하	236이하	해발 57.86m 미만	16층
			획지 I-2	324.0	방화대로29길 4-13 (방화동217-49)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 I-3	162.0	방화대로29길 4-4 (방화동217-43)일대	-				
○ 총세대수 : 557세대										
구분(전용면적)						세대수(세대)	구성비(%)	비고		
합 계						557	100.0			
임대		60㎡이하				20	3.6			
분양		소 계				537	96.4			
		60㎡이하				131	23.5			
		60㎡~85㎡				318	57.1			
		85㎡초과				88	15.8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허용용적률 + β) × 1.3α) = 210 + 5 + ((210 + 5) × 1.3 × 0.03772) = 225.54% ※ α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986.03㎡ / 26,143.25㎡ = 0.03772 ※ β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공공시설 제공 면적 : 986.03㎡ - 토지 기부채납(순부담) : 228.08㎡ (도로 -167.92㎡, 공공청사부지 396㎡) - 시설물 기부채납(환산부지면적) : 757.95㎡ (공공청사 512.20㎡ + 사회복지시설 245.75㎡)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4.08) 및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2017) 적용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35.12%								
		○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률 = (235.12% - 225.54%) × 50% = 4.790%								
		○ 소형임대주택건설 연면적 = 26,415.2㎡ × 4.790% = 1,265.29㎡ 이상 확보 필요.								
		전용면적		공공면적	공급면적	기타공공면적	세대수	연면적	공급연면적	
44.84㎡		16.72㎡	61.56㎡	37.89㎡	14	1,347.55㎡	2,179.75㎡			
59.53㎡		21.40㎡	80.93㎡	50.30㎡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40m도로변: 건축한계선 5m ○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5m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8m - 대상지 중앙부 동서측 공공보행통로 지정								

※ 시설물기부채납 최소확보 연면적 : 공공청사 1,080㎡, 사회복지시설 480㎡

※ 사업시행인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라 무상양도 되는 면적은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에서 제외하고 용적률을 재산정할 것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 인센티브(5%)

- 단독주택재건축세입자대책(주거사업과-4568.2019.4.25.) 반영. 현 사업단계에서 손실보상 규모와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손실보상에 대한 용적률인센티브 5%를 적용하고, 향후 관리처분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계획등을 재조정(최대 10%이내)

(5) 정비사업 시행 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재건축 조합	- 기존세대수 : 527세대 - 계획세대수 : 557세대 - 증가세대수 : 30세대	-

(6)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계	-	27,297.2	-	27,297.2	-	27,297.2	100.0	-
①	Ⅰ	26,901.2	Ⅰ-1	26,415.2	-	26,415.2	96.8	택 지
			Ⅰ-2	324.0	-	324.0	1.2	택 지
			Ⅰ-3	162.0	-	162.0	0.6	택 지
	Ⅱ	396.0	Ⅱ-1	396.0	-	396.0	1.4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7)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건립위치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기정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	2,131.70㎡	14세대	44.93㎡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6세대	59.97㎡	
변경		2,179.75㎡	14세대	44.84㎡	
			6세대	59.53㎡	

■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 방화6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의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일함을 근거로 작성됨. 금번 고시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항목이나 계획이 신규 수립된 사항은 아님.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방화6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 (방화동 608-97번지) 일대	31,554.2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31,554.2	-	31,554.2	100.0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628.0	-	2,628.0	8.3	-
제3종일반주거지역	28,926.2	-	28,926.2	91.7	-

(3)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5	집산 도로	100	방화대로 29길 4	초원로 16길 17	일반	-	서고 제2010-105호 (2010.3.25)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2	방화대로 29길 4-5	방화대로 29길 4-5	일반	-	-	-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공청사	초원로16길 17-6 (방화동 217-62)	396	-	396	서고제2016-194호(2016. 7.7.)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전 (관리청:강서구청)
		사회복지시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공공청사(지하1~2층, 지상4~6층), 사회복지시설(지상1~지상3층)

※ 관리부서협의를 따른 세부시설 결정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청사	초원로16길 17-6 (방화동 217-62)	396	-	396	서고제2016-194호(2016. 7.7.)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우리동네케어센터 (관리청:강서구청)
		사회복지시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공공청사(지하1~2층, 지상4~6층), 사회복지시설(지상1~지상3층)

※ 관리부서협의를 따른 세부시설 결정

(4)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	계	-	27,297.2	-	27,297.2	-	27,297.2	100.0	-
기정	①	Ⅰ	26,901.2	Ⅰ-1	26,415.2	-	26,415.2	96.8	택 지
				Ⅰ-2	324.0	-	324.0	1.2	택 지
				Ⅰ-3	162.0	-	162.0	0.6	택 지
		Ⅱ	396.0	Ⅱ-1	396.0	-	396.0	1.4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5)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 변경없음

구분	주용도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상한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기정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60	210	236	16	·해발 57.86m 미만

(6)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40m도로변: 건축한계선 5m ◦ 15m도로변: 건축한계선 5m	-

(7) 기타사항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폭 8m	-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주거유형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360,941.2	-	360,941.2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60,941.2	-	360,941.2	100.0	-
주거 지역	소 계	360,724.2	-	360,724.2	99.9	-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92,096.0	-	92,096.0	25.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28,498.0	-	228,498.0	63.3	-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30.2	-	40,130.2	11.1	-
자 연 녹 지 지 역		217.0	-	217.0	0.1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가) 도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9	40~120	주간선 도로	35,096 (125)	삼전동 (공항동 1-1)	방화동 53-1 (방화동 217-123)	일반	-	건고198호 (71.4.7)	방화로
기정	중로	1	121	20	보조 간선	901 (365)	방화대로 301	방화동 648-7	일반	-	-	-
기정	중로	1	123	20	보조 간선	2,650 (370)	공항동 (금남화로 26)	방화동 (방화동614-282)	일반	근린 공원	-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45	금남화로 13	초원로6길 15	일반	-	서고 제2012-192호 (2012. 7. 26)	방화3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385	방화대로21길 26 (공항동 14-101)	초원로16길 17 (방화동 217-57)	일반	-	서고 제2017-305호 (2017. 8. 17)	방화5
기정	중로	2	4	15~18	집산 도로	375	방화동 543-6	개화동로27길 13	일반	-	서고 제2012-192호 (2012. 7. 26)	방화3

< 계 속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08	초원로16길 24 (방화동 608-140)	방화동로 68 (방화동 607-214)	일반	-	서고 제2017-305호 (2017. 8. 17)	방화5
기정	중로	2	6	15	집산 도로	100	방화대로29길 4 (방화동 217-37)	초원로16길 17 (방화동 217-57)	일반	-	서고 제2010-105호 (2010.3.25.)	방화6
기정	중로	2	7	15	집산 도로	120	방화동 217-262	방화동 217-205	일반	-	서고 제2007-218호 (2007. 7. 5)	긴등마을
기정	중로	2	8	18~21	집산 도로	163	방화대로 251 (공향동 3-5)	방화대로21길 34 (공향동 14-82)	일반	-	서고 제2017-305호 (2017. 8. 17)	방화5
기정	중로	3	1	8~14	집산 도로	302	방화대로21길 40 (공향동 14-91)	방화동로 44 (방화동 609-187)	일반	-	서고 제2017-305호 (2017. 8. 17)	방화5
기정	소로	1	104	10	-	252	방화동 606-15	방화동 249-58	-	-	서고 제1969-3호 (1969. 1. 18)	-
기정	소로	2	143	8	집산 도로	84	방화동 217-198	방화동 247-244	일반	-	-	-
기정	소로	3	1	4~7	국지 도로	19	방화대로 266	방화동 217-110	일반	-	서고 제2007-218호 (2007. 7. 5)	긴등마을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0	방화동 596-1	금녕화로1길 7	일반	-	-	방화3
기정	소로	3	8-2	6~7	국지 도로	87	방화동 587-83	방화동 601-3	일반	-	-	방화2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2	방화대로29길 4-5	방화대로29길 4-5	일반	-	서고 제2016-194호 (2016. 7. 7)	방화6
기정	소로	3	4	8	국지 도로	23	방화대로21길 76 (공향동 18-80)	공향동 431-1	일반	-	서고 제2017-305호 (2017. 8. 17)	방화5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29	공향동 18-108	공향동 18-108	일반	-	서고 제2017-305호 (2017. 8. 17)	방화5
기정	중로	1	11	20	집산 도로	353 (28)	마곡동 730-7	마곡동 730-35	일반	-	서고 제2008-498호 (2008.12.30)	-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광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광장	근린광장	방화동로 45-1 (방화동 614-52)	1,045	-	1,045	서고제2012-192호 (2012. 7. 26)	3구역
기정	4	광장	근린광장	공향동 14-22	326	-	326	서고제2017-305호 (2017. 8. 17)	5구역

나) 녹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방화동 217-153	327	-	327	서고제2007-218호 (2007. 7. 5)	긴등 마을

다) 공원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개화동로27나길 8-9 (방화동 616-22)	4,520	-	4,520	서고제2012-192호 (2012. 7. 26)	3구역
기정	9	공원	어린이공원	공향동 4-36	1,187	-	1,187	서고제2005-312호 (2005. 10. 13)	긴등 마을
기정	6	공원	어린이공원	방화대로21가길 8 (공향동 14-107)	5,172	-	5,172	서고제2017-305호 (2017. 8. 17)	5구역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근린 공공시설	금남화로5길 81 (방화동 587-17)	1,100	-	1,100	서고제2012-192호 (2012. 7. 26)	3구역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방화2동 주민센터)
기정	2	공공청사	-	초원로16길 17-6 (방화동 217-62)	396	-	396	서고제2016-194호 (2016. 7. 7)	6구역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전) (관리청:강서구청)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방화대로249-30 (공향동 2-74)	656	-	656	서고제2017-305호 (2017. 8. 17)	5구역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개화동로27나길 28-9 (방화동 617-20)	350	-	350	서고제2012-192호 (2012. 7. 26)	3구역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국립 어린이집)
기정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초원로16길 17-6 (방화동 217-62)	396	-	396	서고제2016-194호 (2016. 7. 7)	6구역 (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우리동네 키움센터) (관리청:강서구청)

다) 학교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방화중학교	개화동로27길 9 (방화동 636-1)	14,050	-	14,050	서고제50호 (1982.2.4)	3구역
기정	2	학교	공향중학교	방화대로 241 (공향동 12-3)	14,208	-	14,208	강서구고시 제1992-40호 (92.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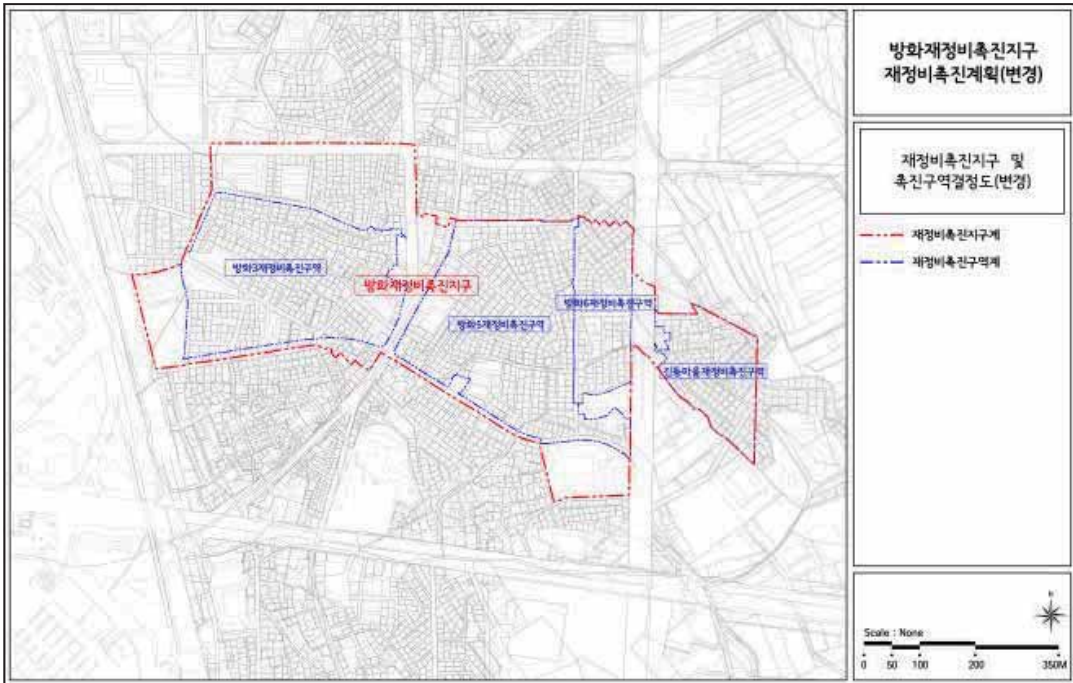
5. 기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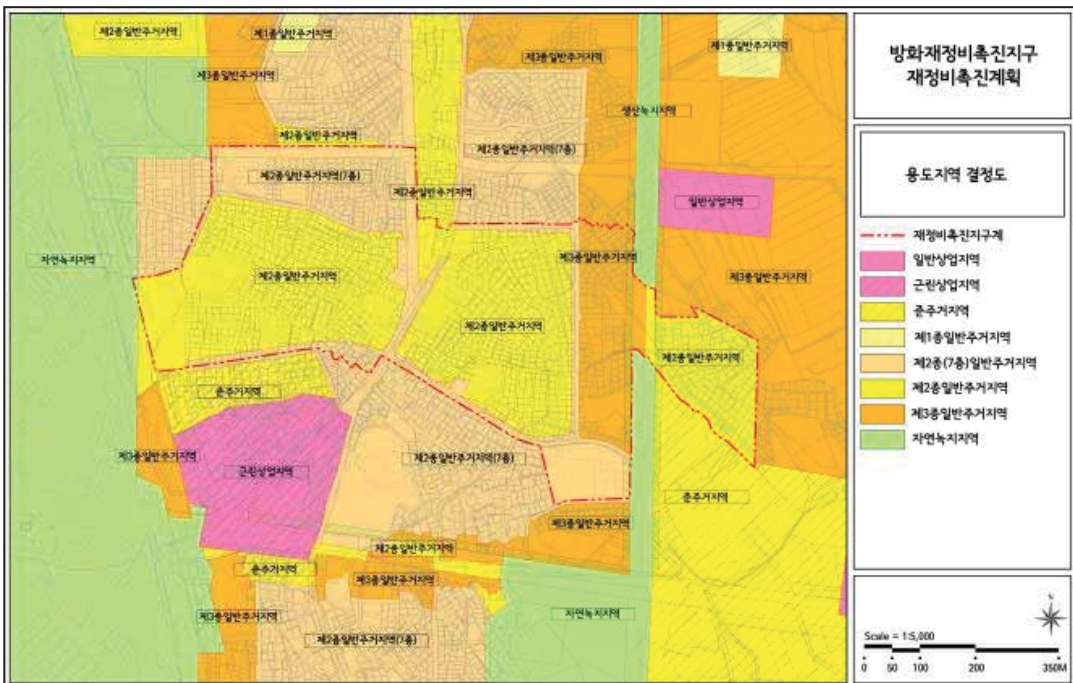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2) 강서구 도시재생과(☎02-2600-674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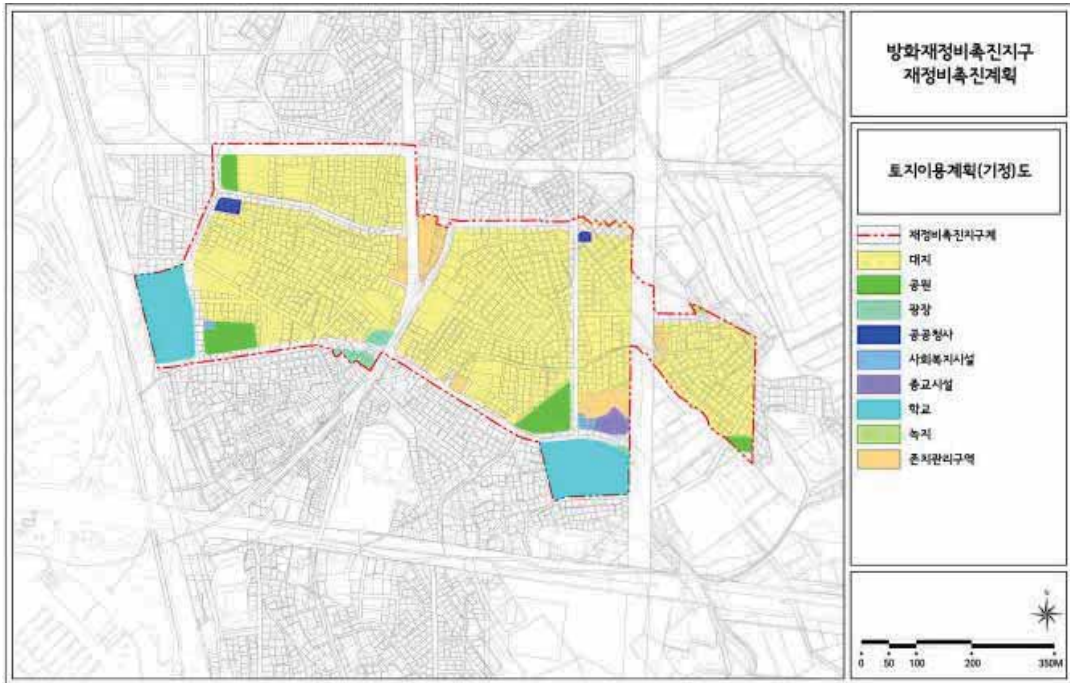
■ 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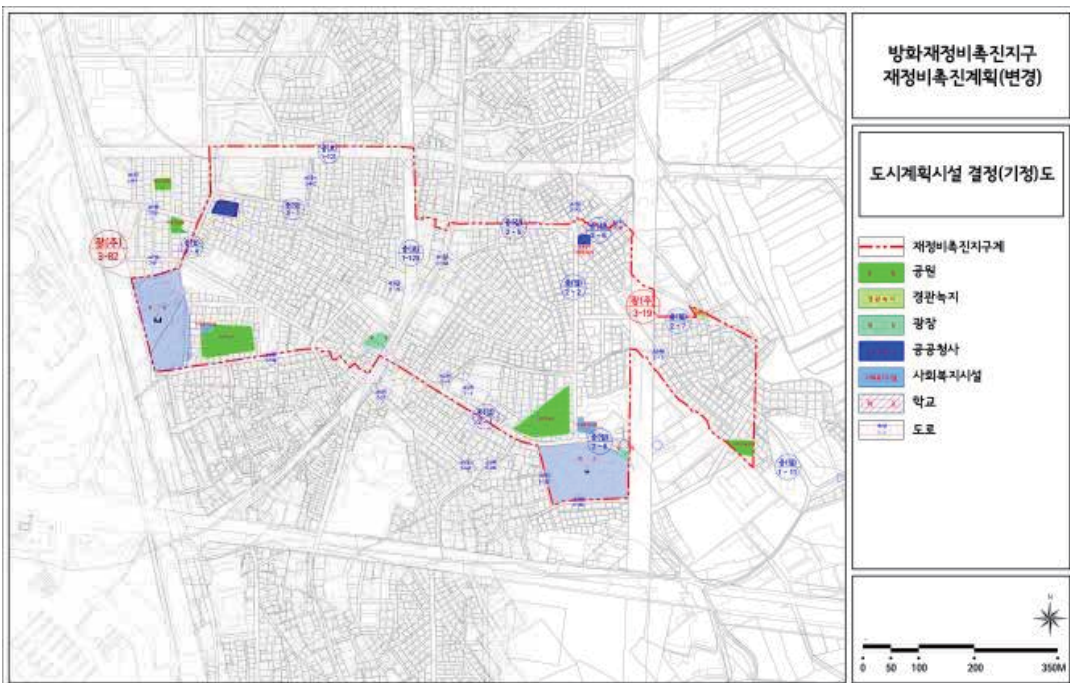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79호

도시관리계획(원효로4가 114 - 36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4-36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1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1.12.3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원효로4가 114-36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현대자동차 최초의 서비스센터 부지에 대해 미래 연구소 건립에 따른 지원시설 도입을 위한 건축물 용도완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원효로4가 114-36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원효로4가 114-36번지 일대	-	증)20,413.2	20,413.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신설	원효로4가 114-36일대	20,413.2	• 현대자동차 최초의 서비스센터로서 기술 축적의 공간역사성을 살리며, 미래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미래기술을 축적·연구하는 미래산업 도심 R&D 거점 마련 • 이를 위해 연구소 건립 및 건축물 용도완화(업무시설 바닥면적 제한 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함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413.2	-	20,413.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9,241.8	-	19,241.8	94.3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1.4	-	1,171.4	5.7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강변북로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변북로변	156,959.57 (1,509.12)	8,200 (133.26)	12m	용산구고시 제1999-39호 (1999.1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	12	-	200	원효로4가 114	원효로4가 118	일반도로	서고시 제643호 (78.12.15)	
변경	중로	3	-	12	-	200	원효로4가 114-62	원효로4가 118-54	일반도로	서고시 제643호 (78.12.15)	

※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도로(중로 3-) 정비(지정을 철회, 지중화, 녹지)는 건축인허가 전 관리청(용산구)과 협의하여 결정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	중로 3-	- 도로 기·종점 변경 - 기점 : 원효로4가 114 → 원효로4가 114-62 - 종점 : 원효로4가 118 → 원효로4가 118-54	- 구역계 변경 및 계획취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추가 - 기존 지번 말소 등의 사유로 도로 기·종점 변경

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가.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지번			
신설	①	원효로4가	113-25 대	18,240.7	획지①	-
			113-36 임			
			113-40 대			
			113-58 대			
			113-66 대			
			113-67 대			
			113-71 대			
			114-36 대			
			114-40 대			
			114-57 대			
			114-59 도			
			114-67 도			
			118-14 대			
			118-35 잡			
			118-38 대			
			118-46 도			
			118-47 대			
			118-49 대			
			118-51 잡			
			118-53 잡			
			118-55 도			
			118-59 잡			
	-	원효로4가	114-63 대	49.3	-	-
-	-	원효로4가	118-68도 외	2,123.2	도로	-

○ 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가구 및 획지	• 도로로 둘러싸인 독립적인 블록으로 단일 용도로 개발코자 획지로 계획

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가. 허용용도

도면표시	적용구역	허용용도	비 고
허용용도 (A)	획지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에서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제3호, 제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불허용도

도면표시	적용구역	불허용도	비 고
불허용도 (B)	획지①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다. 용도완화

도면표시	적용구역	용도완화	비 고
용도완화 (C)	획지①	•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용도완화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계획

■ 건폐율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나.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토지 + 0.7 × α 건축물)

다. 높이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획지①	높이(층수)	7층 이하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계획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획지①	건축한계선 • 강변북로변 : 3m • 원효로(12m)변 : 3m • 원효로(25m)변 : 3m	
	벽면한계선 • 강변북로변 : 5m(1층부) • 원효로(12m)변 : 4m(1층부) • 원효로(25m)변 : 6.5m (1층부)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이격)
	전면공지 • 벽면한계선 후퇴부분까지 기존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보도부속형)	

※ 기존 건축물 보존을 위해 존치된 구간은 건축한계선 등 적용 제외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획지①	형태 • 도시 전체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되도록 함	
	옥상 • 향후 미래도심항공교통(UAM) 도입에 대비하여 옥상은 평탄하게 조성 ※ 법령 제정에 따라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 옥상에 이착륙 공간 계획 검토	
	재료 및 색채 • 외벽재료는 반사유리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 (‘서울 상징생 적용 가이드라인’ 에 따른 수변경관 색상 및 인접주거지에 어울리는 저명도, 저채도 색상 사용 권장)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존 건축물 보존	- 역사성과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보존(면적 : 약 1,770㎡, 층수:2층) - 원효로(12m)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램프 하부 옹벽을 철거하고 보행로 폭원 확보	
	야간경관 조명	-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 R&D연구소 인프라에 맞는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한강변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3) 기타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역기여 시설	- 지역사회 제공을 통해 교육, 포럼 및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1,400㎡ 이상) - 용산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공간활용계획, 운영계획 마련	
친환경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1%이상 권장	
담장의 설치	- 사업대상지와 재활용 선별장 사이 담장 설치 - 담장은 벽면녹화 등을 통해 주변 지역과의 위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강변북로로 직접적인 차량진출입 규제 - 도로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을 통한 교통 혼잡 예방	결정도 참고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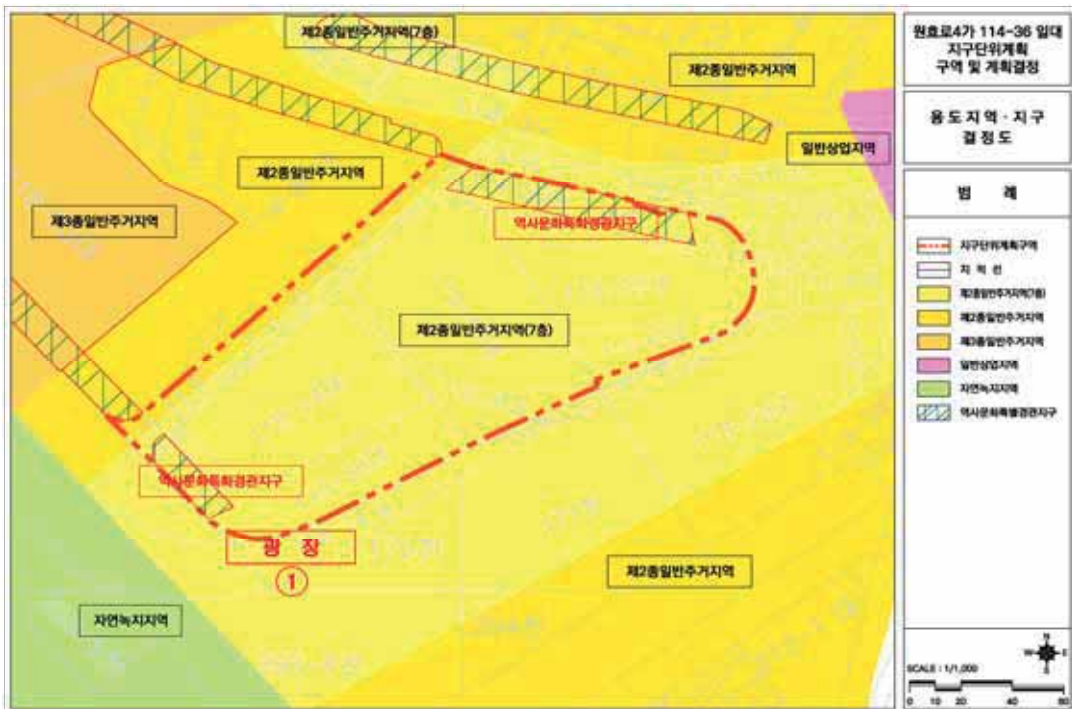
IV.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0),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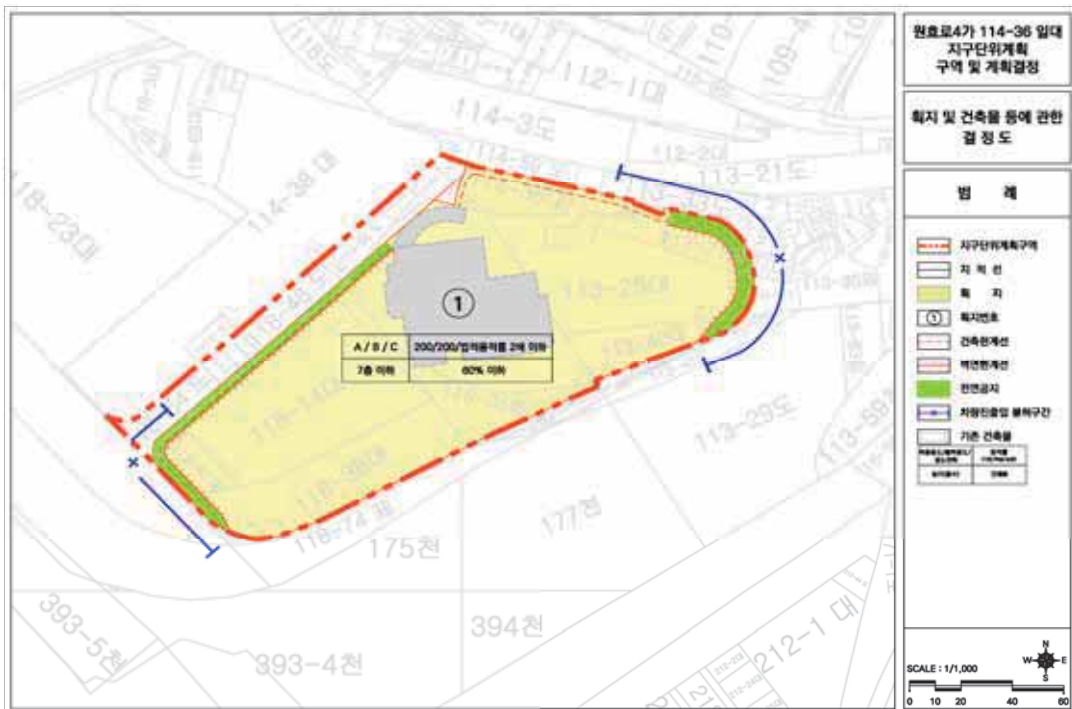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80호

도시관리계획(공동 108 - 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2020.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공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1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2.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실효에 대응, 실효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에 대해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유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공동 108-1 일대	9,185.0	-	9,185.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 (2020.6.25.)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9,185.0	-	9,185.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185.0	-	9,185.0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유형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105	2,020.7	-	-	-	1	105	2,020.7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05	2,020.7	-	-	-	1	105	2,020.7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521	15	집산 도로	105	공동 108-13답	공동 113-2답	일반 도로	-	-	현행 도로

※ 향후 측량성과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 2-521	•신설 (폭원 : 15m, 연장 : 105m)	• 도로이용현황 및 향후 하천 개거회를 고려하여 도로 결정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고
신설	A	5,556.0	-
	B	1,608.3	-

■ 가구 및 획지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가구계획 신설 (A : 5,556.0㎡, B : 1,608.3㎡)	•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다수의 필지관리를 위하여 신설

2) 공동개발 결정조서

구분	가구		공동개발		대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위치	면적(㎡)		
신설	A	5,556.0	①	5,385.0	108-1답	1,427.0	특별계획구역	
					108-2답	3,852.0		
					108-11답	8.0		
					267도	98.0		
			②	171.0	108-13답	171.0	주차장	
	B	1,608.3	③	1,029.1	113-2답	145.1	-	공동 개발 (권장)
					138-6전	132.0	-	
					139-2답	376.0	-	
					139-6답	327.0	공동 개발 (지정)	
					141-2대	49.0		
			④	579.2	140-2대	579.2	단독개발	

※ 108-1답, 267도, 113-2답, 140-2대는 CAD 구적 값으로,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동개발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공동개발(지정) : 139-6답 ⊕ 141-2대	- 소유현황, 세장형, 부정형 필지 형상 등을 고려한 공동개발 계획 - 동일소유의 필지인 경우
	공동개발(권장) : 139-2답⊕139-6답⊕141-2대⊕113-2답⊕138-6전	- 소유현황, 세장형, 부정형 필지 형상 등을 고려한 공동개발 계획 - 부정형필지 및 과소필지와 연접한 경우

2.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분	위치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신설	108-13답	P1	•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주차전용건축물 제외)	-

■ 허용용도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허용	•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주차장 용도 계획

2)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위치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	R1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관련시설, 장의사, 물품의 제조 등을 위한 시설,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이면부			

※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 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만 허용

■ 불허용도 결정 사유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주거 위해용도 불허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주변 건축물 (주거용도) 현황을 고려하여 불허용도 계획

3)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위치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신설	특별계획구역	R1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의원, 노유자 시설	-
	이면부			

■ 권장용도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주거지원 용도 권장	•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원서비스시설 용도 권장 계획

나. 건축물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용도지역	위치	건폐율(%)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60% 이하	-
	주차장	20% 이하	108-13답

■ 건폐율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 6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 계획
	• 주차장 : 20% 이하	• 주차장 부속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2) 용적률 결정조서

용도지역	위치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18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주차장	50% 이하			108-13답

※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 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용적률은 기준170%/허용 190%/상한250% 적용

■ 용적률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 기준180%/허용 200%/상한 법적2배이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용적률 체계 적용
	• 주차장 : 50% 이하	• 주차장 부속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3) 최고높이 결정조서

용도지역	위치	높이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30m 이하	-
	주차장	3m 이하	108-13답

※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 대상(사업부지 면적이 5천㎡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높이는 평균 7층이하 적용

■ 최고높이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 30m 이하	• 용도지역(제2종7층) 및 주변 건축물 현황을 고려한 높이 계획
	• 주차장 : 3m 이하	• 주차장 부속시설 설치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한 높이 계획

다. 건축물 배치 및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간	건축한계선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 오리로	3m	-
		• 오리로22나길	1m ~ 6m	-
		• 오리로22길, 오리로22가길	1m	중로 2-521

■ 건축물 배치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오리로 : 3m	건축물 배치를 통한 공지 확보
	• 오리로22나길 : 1m~6m	
	• 오리로22길, 오리로22가길 : 1m	

2) 대지내 공지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전면공지	• 오리로 : 보도형 3m	지침도 참조
		• 오리로22나길(특별계획구역 내) : 보도형 3m, 차도형 3m	
		• 오리로22길, 오리로22가길, 오리로22나길(특별계획구역 외) : 보도형 1m	
	공개(쌈지형)공지	• 1개소 권장	

■ 대지 내 공지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전면공지 - 오리로 : 보도형 3m - 오리로22나길(특별계획구역 내) : 보도형 3m, 차도형 3m - 오리로22길, 오리로22가길, 오리로22나길(특별계획구역 외) : 보도형 1m	• 보행공간 및 차량통행 공간 확보
	공개(쌈지형)공지 : 1개소 권장	• 오리로22가길, 오리로22나길 결정부에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간	비고
신설	차량출입 불허구간	• 오리로변 및 오리로22가길(중로2-521)번 차량출입불허	-

■ 교통처리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차량출입불허구간 - 오리로, 오리로22가길(중로2-521)	• 오리로 통행차량과의 상충방지 및 중로2-521 하천 개거(장기)를 고려하여 불허구간 계획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궁동 108-1 일대 특별계획구역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5,623.0	-

■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특별계획구역 신설 : 5,623.0㎡	•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 공동 108-1번지 일대	-
면적		• 5,623.0㎡	-
용도지역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공공기여계획		• 도로 (238.0㎡)	조성 후 기부채납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관련시설, 장의사, 물품의 제조 등을 위한 시설,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의원, 노유자 시설	-
건축물 개발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80% / 200%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높이	• 30m 이하	-
배치 및 형태	건축한계선	• 오리로 : 3m • 오리로22나길 : 6m • 오리로22가길(중로 2-521)번 : 1m	결정도 참조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이격부분 전면공지 조성	
	공개(빚지형)공지	• 1개소 권장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오리로번 및 오리로22가길(중로 2-521)번 차량출입불허	

※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 기준」 적용 대상 (사업부지 면적이 5천 ㎡ 이상 또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경우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만 허용하고, 용적률은 기준170%/허용190%/상한250% 적용하며, 높이는 평균 7층이하 적용

5.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계획기준

- ①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주1)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주2)와 중점 인센티브(주3)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② 허용용적률 산정 시,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합은 해당 인센티브 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중점 인센티브의 합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권장용도의 면적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1)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적용받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함

주2) 계획유도 인센티브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유도 및 규제항목을 준수 시 적용받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함

주3) 중점 인센티브라 함은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항목을 준수 시 적용받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함

나. 인센티브 항목 및 세부기준

■ 유형 1(특별계획구역)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기준 / 허용용적률	180% / 200%
인센티브 유도계획	중점 인센티브 : 친환경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 건축물 용도, 대지 내 공지 (70% 이하)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중점	친환경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5	• 법적 조정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 까지만 허용 • 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 시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15	
계획유도	건축물 용도	전층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의 연면적/연면적) × 0.1 • 20%이상 설치 시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0.4 -
		공개(쌍지형) 공지조성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0.35 -

■ 유형 1 (특별계획구역_공동주택 건립형 계획 수립기준 적용 시)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60%
기준 / 허용용적률	170% / 190%
인센티브 유도계획	기준용적률+우수디자인 등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20%이내)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 초과	20% 이하 15% 초과	15% 이하 10% 초과
	3%	2%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15%	12%	9%
합계	최대 20% 이내		

■ 유형 2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기준 / 허용용적률	180% / 200%
인센티브 유도계획	중점 인센티브 : 친환경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 건축물 용도, 대지 내 공지 (70% 이하)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중점	친환경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6대지면적) × 0.1	- 법적 조정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 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시
	자연지반보존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5	
계획유도	건축물 용도	전층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의 연면적/연면적) × 1.2	20%이상 설치 시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0.4	-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α	1필지 : $\alpha = 0.01$ 2필지 : $\alpha = 0.02$ 3필지 : $\alpha = 0.04$

■ 유형 3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기준 / 허용용적률	180% / 200%
인센티브 유도계획	중점 인센티브 : 친환경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 건축물 용도, 대지 내 공지 (70% 이하)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중점	친환경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 법적 조정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 지하구조물 미설치, 자연토양 및 식생 가능시
	자연지반보존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5	
계획유도	건축물 용도	전층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의 연면적/연면적) × 1.2	20%이상 설치 시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1.2	-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α	1필지 : $\alpha = 0.01$ 2필지 : $\alpha = 0.02$ 3필지 : $\alpha = 0.04$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항 목	산 정 방 식	비 고
상한 용적률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times \alpha \text{건축물})$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 지분' 포함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개공지, 씌지형공지, 대지 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 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2. 전면공지의 조성 방법의 변경
③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④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한다.
⑤	경미한 사항 변경의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경미한 변경기준'을 준용한다.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6)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303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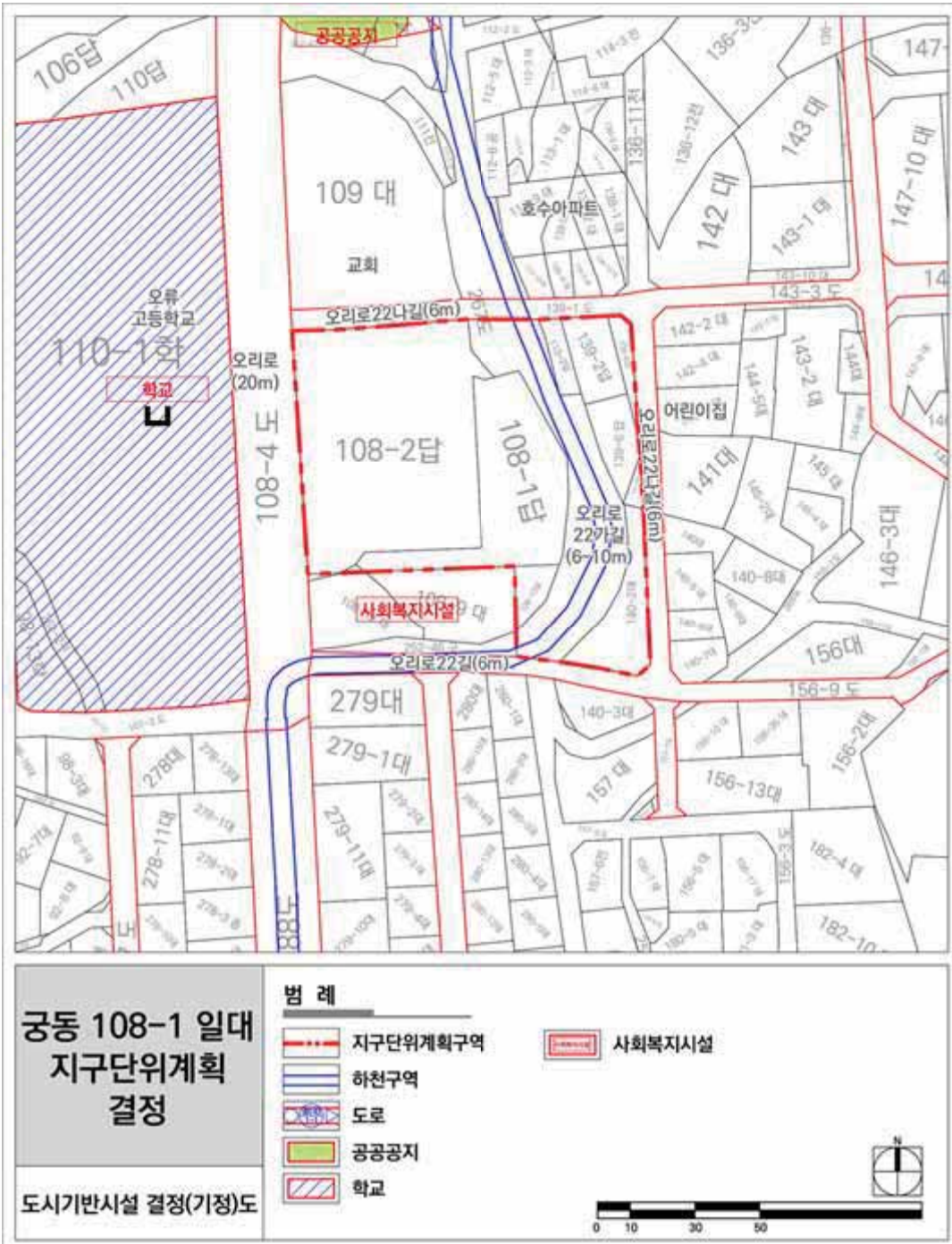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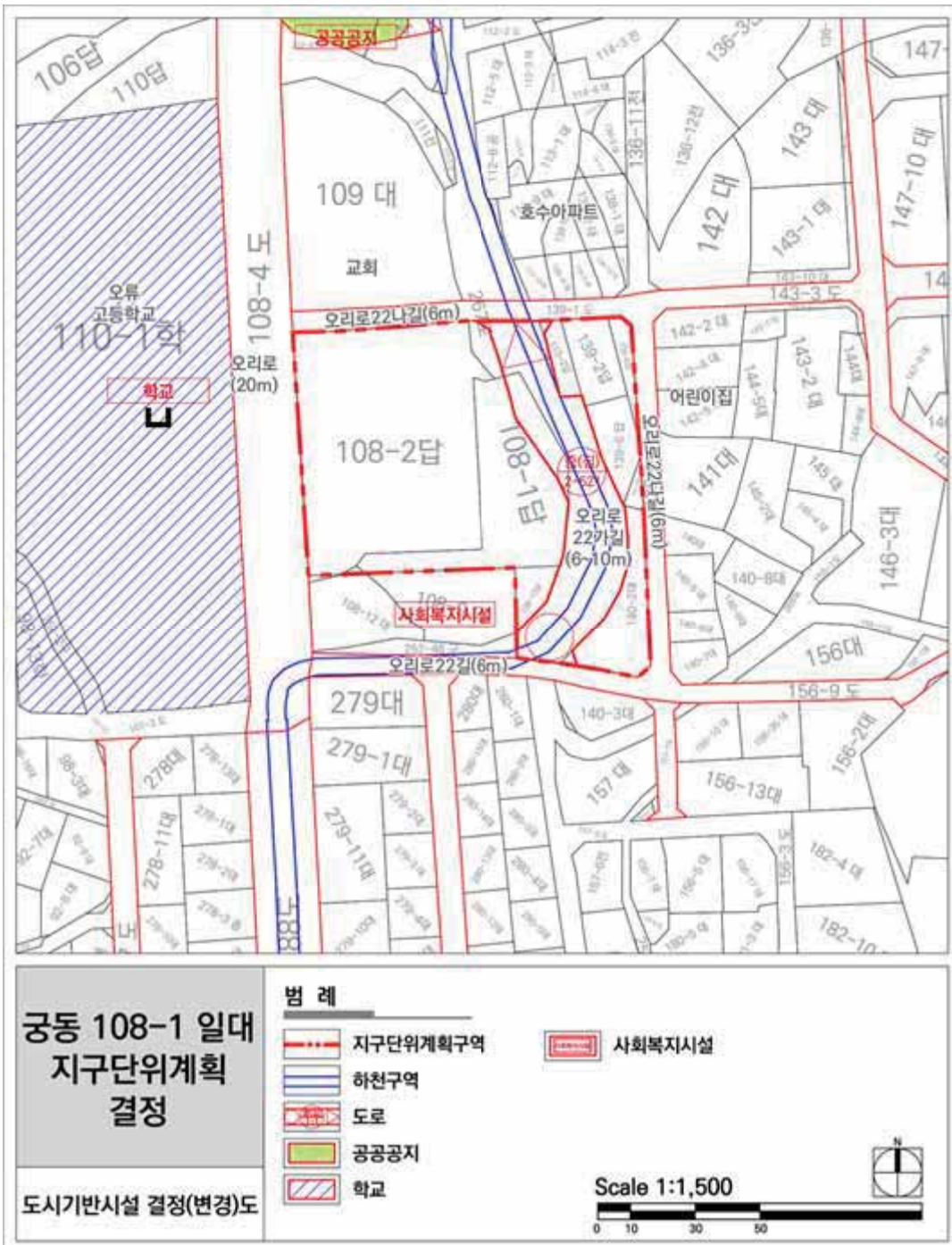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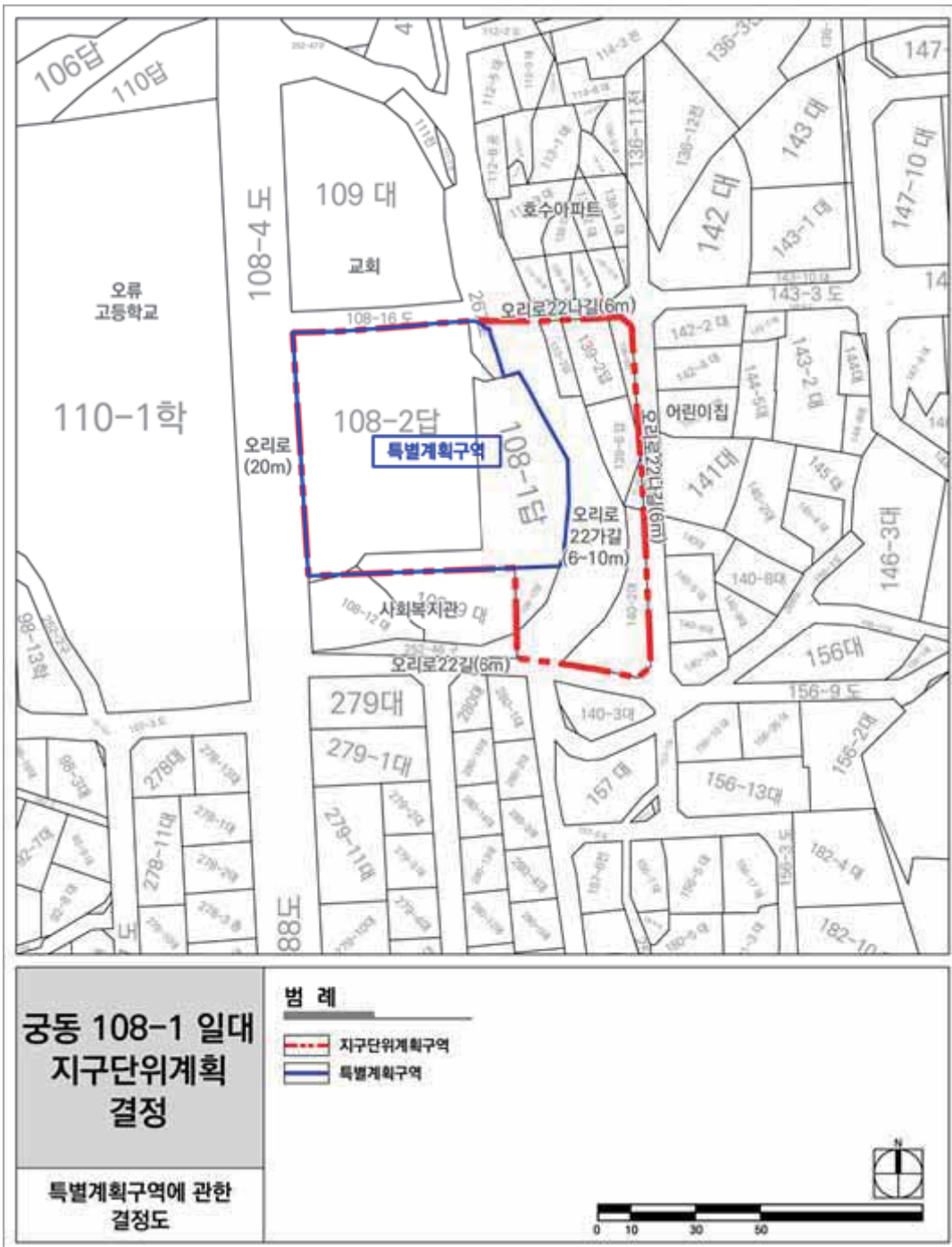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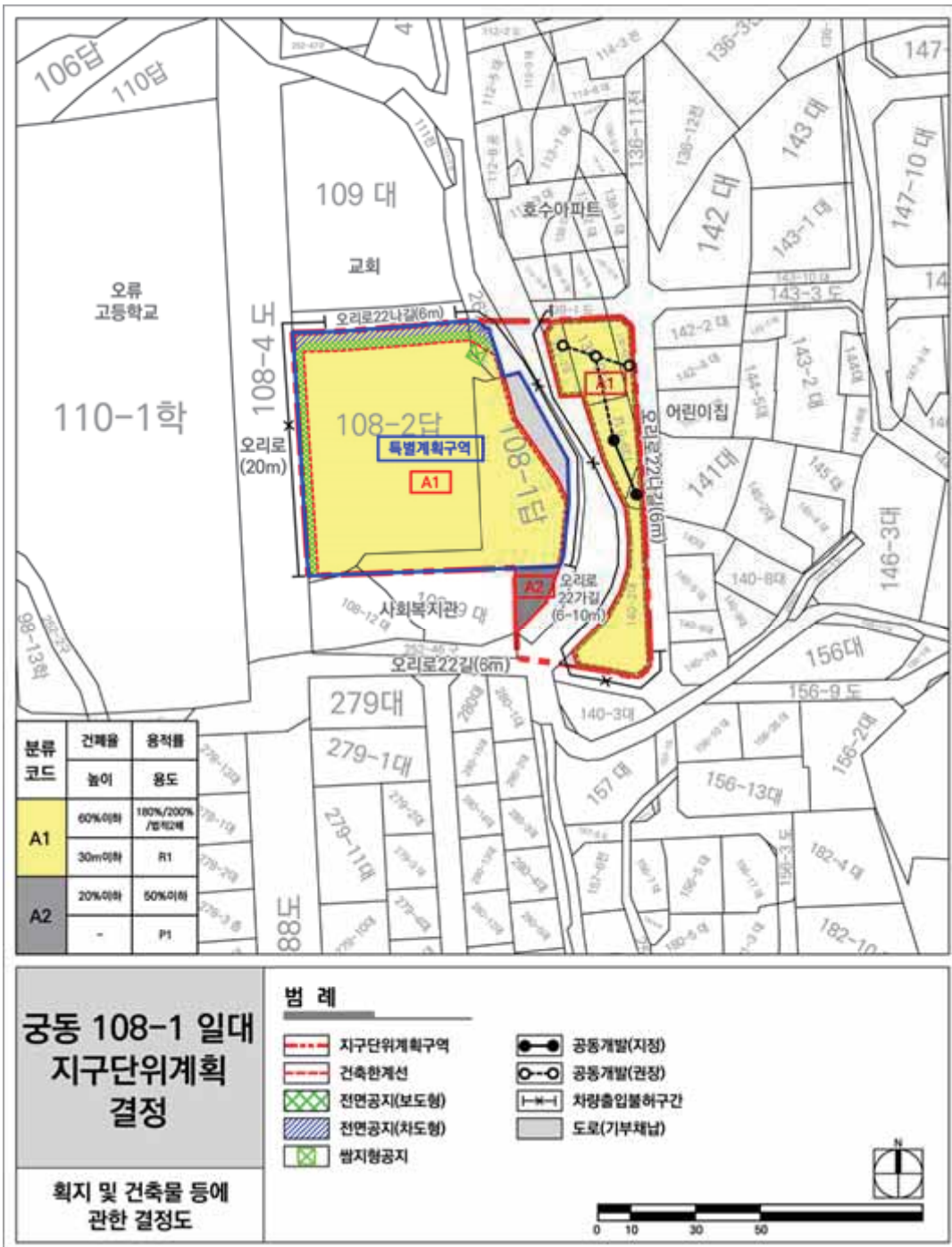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83호

**강남구 도곡동 954 - 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1호(2021.12.30.)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1) 수용인구 : 267인
 - 2) 주택건설계획 : 209세대

[기정]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2TYPE	39	18.66	39	14.61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공급
	24TYPE	10	4.78	10	3.75	
	42TYPE	6	2.87	16	5.99	
	47TYPE	2	0.96	5	1.87	
	55TYPE	8	3.83	21	7.87	
	소 계	65	31.10	91	34.08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2TYPE	89	42.58	89	33.33	
	24TYPE	36	17.22	36	13.48	
	42TYPE	6	2.87	16	5.99	
	47TYPE	9	4.31	24	8.99	
	55TYPE	4	1.91	11	4.12	
	소 계	144	68.90	176	65.92	
합 계		209	100	267	100	

[변경]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2TYPE	39	18.66	39	14.61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공급
	24TYPE	10	4.78	10	3.75	
	42TYPE	6	2.87	16	5.99	
	47TYPE	2	0.96	5	1.87	
	55TYPE	8	3.83	21	7.87	
	소 계	65	31.10	91	34.08	
공공임대주택 (SH공사선매입)	22TYPE	11	5.26	11	4.12	
	소 계	11	5.26	11	4.12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2TYPE	78	37.32	78	29.21	
	24TYPE	36	17.22	36	13.48	
	42TYPE	6	2.87	16	5.99	
	47TYPE	9	4.31	24	8.99	
	55TYPE	4	1.91	11	4.12	
	소 계	133	63.64	165	61.80	
합 계		209	100	267	100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84호

성동구 마장동 783 - 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 면 적: 1,047.3㎡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2년 2월 24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한 상
- 대표자 성명: 한 석 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2길 4 (마장동)
- 법인등록번호: 898-61-0035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마장동	783	5	대	387.8	한석일	성동구 마장동 783-5	1	-	-	-
2	마장동	783	7	대	329.9	강성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4-39	1/3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한수길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6동	1/3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한수만	서초구 논현로1길 1, 701호	1/3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3	마장동	783	8	대	329.6	강성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4-39	23/84	-	-	-
						한석일	성동구 마장동 783-5	21/84	주식회사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한수길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6동	20/84	-	-	-
						한수만	서초구 논현로1길 1, 701호	20/84	-	-	-

2) 물건조사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마장동	783	5	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소매점, 대중음식점, 사무소, 다방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슬래브	636.34	3	4	한석일	주식회사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
2	마장동	783	7	대	사무실 및 주택 및 점포	벽돌조 세멘기와 지붕	232.15	-	2	강성자 한수길 한수만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3	마장동	783	8	대	근린생활시설	세멘트복조 스래트집	194.98		1	강성자 한석일 한수길 한수만	주식회사우 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	지구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마장동 783-5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	증) 1,047.3	1,047.3	-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047.3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계	1,047.3	-	1,047.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47.3	감) 1,047.3	1,047.3	-	
	준주거지역	-	증) 1,047.3	1,047.3	100.0	

■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47.3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4)와 성동구 청 1층 건축과(건축민원팀)(02-2286-565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 면 적: 1,047.3㎡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마장역세권 일대의 대학생·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한 상
- 대표자 성명: 한 석 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2길 4 (마장동)
- 법인등록번호: 898-61-00354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1,047.3	100.0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합 계	1,047.3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수용계획

- 1) 수용인구: 152인
- 2) 주택건설계획: 130세대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임대주택	23A TYPE	4	3.1	4.0	2.6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3B TYPE	16	12.3	16.0	10.7	
	24 TYPE	2	1.5	2.0	1.3	
	23C TYPE	4	3.1	4.0	2.6	
	25 TYPE	7	5.4	7.0	4.6	
	55 TYPE	4	3.1	10.6	7.0	
	소 계	37	28.5	43.6	28.8	
SH선매입	23A TYPE	1	0.8	1.0	0.7	
	23B TYPE	3	2.3	3.0	2.0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24 TYPE	1	0.8	1.0	0.7	
	23C TYPE	4	3.0	4.0	2.6	
	25 TYPE	3	2.3	3.0	2.0	
	55 TYPE	1	0.8	2.65	1.7	
	소 계	13	10.0	14.65	9.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3A TYPE	8	6.2	8.0	5.3	
	23B TYPE	33	25.4	33.0	21.8	
	24 TYPE	10	7.7	10.0	6.5	
	23C TYPE	18	13.7	18.0	11.9	
	25 TYPE	3	2.3	3.0	2.0	
	55 TYPE	8	6.2	21.2	14.0	
	소 계	80	61.5	93.2	61.5	
합 계		130	100.0	151.5 → 152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시행시 대상지 내 생태면적율은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을 통한 피복형유형과 식재유형 적용한 결과 생태면적율은 31.73%로 산정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 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계획구역 내 조경녹지를 조성하여 녹지축 형성으로 주변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지구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태양복사 변화에 대한 열섬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충분한 녹지조성, 투수성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시설계시 에너지

- 효율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임
- 계획구역의 운영시 에너지 소비 절약형 건물의 유도를 위하여 열부하감소, 에너지 기기의 효율증대, 에너지 수송시스템에 대한 동력부하감소 등과 에너지 공급설비의 경우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채택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제한 및 절약이 이루어지도록 본 사업에 도입 가능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건축물 실시설계시 최대한 반영할 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마장동 783-5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	증) 1,047.3	1,047.3	-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047.3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계	1,047.3	-	1,047.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47.3	감) 1,047.3	1,047.3	-	
	준주거지역	-	증) 1,047.3	1,047.3	100.0	

-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성동구 마장동 783-5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47.3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

기정				신설				비고
가구 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가구 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	-	-	-	A	783-5대	387.8	획지선 지정 및 공동개발 지정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783-7대	329.9		
					783-8대	329.6		

-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
A	-	• 획지 신설 - 면적 1,047.3㎡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을 위한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나)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 : 신설

-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신설	비고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불허용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역세권2030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 사유
-	권장용도 폐지, 지정용도 신설, 불허용도 변경	•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의 실현성 확보

다)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 신설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신설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주1)}	준주거지역
높이	• 최고높이 60m 이하 ^{주2)}	-

주1) 역사권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 준용

주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높이 기준 및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준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 사유
-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본용적률 400% 이하 상한용적률 500% 이하 • 높 이 : 최고높이 60m 이하	• 역사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용한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도입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신설

구분	자침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마장로 42길변 : 2m • 마장로 18길변 : 2m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 사유
-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결정	• 역사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대상지와 인접한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결정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공지(보도부속형) 결정

5)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 : 신설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원화내용
공공 기여율	공공임대주택 등 설치·제공	• 부지면적의 15%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주택 제공	• 기본공공기여 : 15.15%(158.69㎡)	기본용적률 1,0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완화용적률의 50%(49.77%) 공공임대 주택 제공	• 상한공공기여 : 용적률 50.04% (연면적 524.02㎡)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율		• 용적률 기준 15%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주거비율	• 주거 및 비주거비율 - 주거 : 비주거 = 90.29% : 9.71% (용적률기준)	
		공공지원민간 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비율 - 주거 전체 130세대 중 80세대(61.5%) - 주거 전체 5,012.5㎡ 중 3,052.6㎡(60.9%)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효율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 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6) 공공기여 계획 : 신설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율 ^{주1)}	공공기여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본용적률 400% 이하	부지면적의 15% 이상 (157.1㎡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지환산면적 : 158.69㎡(15.15%)	-
	상한용적률 500% 이하	완화용적률의 50%(49.77%)이상 (연면적 521.27㎡ 이상)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 524.02㎡(50.04%)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내수재해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표강수량 고려한 우수관로 용량 결정, 기존 배수체계유지하여 배수처리 계획 수립

2) 지반 및 지진 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3) 기타재해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등 발생 저감을 위해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사업지구 경계부로 가설벽 등 설치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마장동	783	5	대	387.8	한석일	성동구 마장동 783-5	1	없음	-	-
2	마장동	783	7	대	329.9	강성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4-39	1/3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한수길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6동	1/3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한수만	서초구 논현로1길 1, 701호	1/3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3	마장동	783	8	대	329.6	강성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4-39	23/84	-	-	-
						한석일	성동구 마장동 783-5	21/84	주식회사우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한수길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6동	20/84	-	-	-
						한수만	서초구 논현로1길 1, 701호	20/84	-	-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마장동	783	5	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소매점, 대중음식점, 사무소, 다방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슬래브	636.34	3	4	한석일	주식회사우 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2	마장동	783	7	대	사무실 및 주택 및 점포	벽돌조 세멘기와 지붕	232.15	-	2	강성자 한수길 한수만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
3	마장동	783	8	대	근린생활시설	세멘부록조 스테드집	194.98		1	강성자 한석일 한수길 한수만	주식회사우 리은행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

3) 토지취득 방법 : 구역면적의 100% 사업시행자 소유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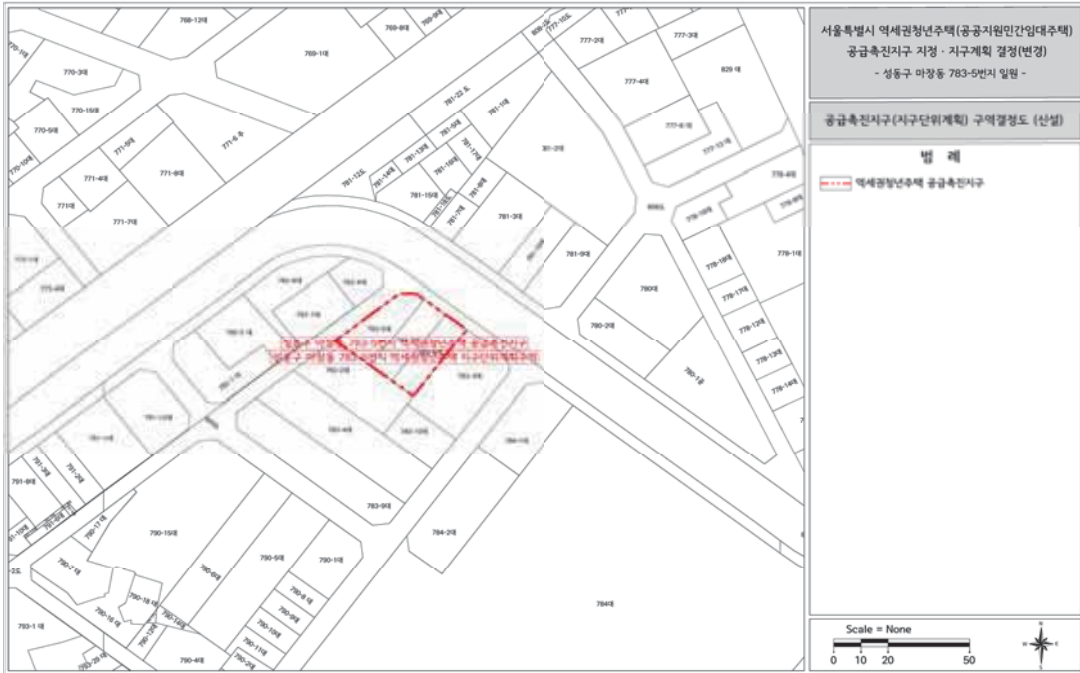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성동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계	1,047.3	100.0	-	-	-
주택건설용지	1,047.3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

관계도면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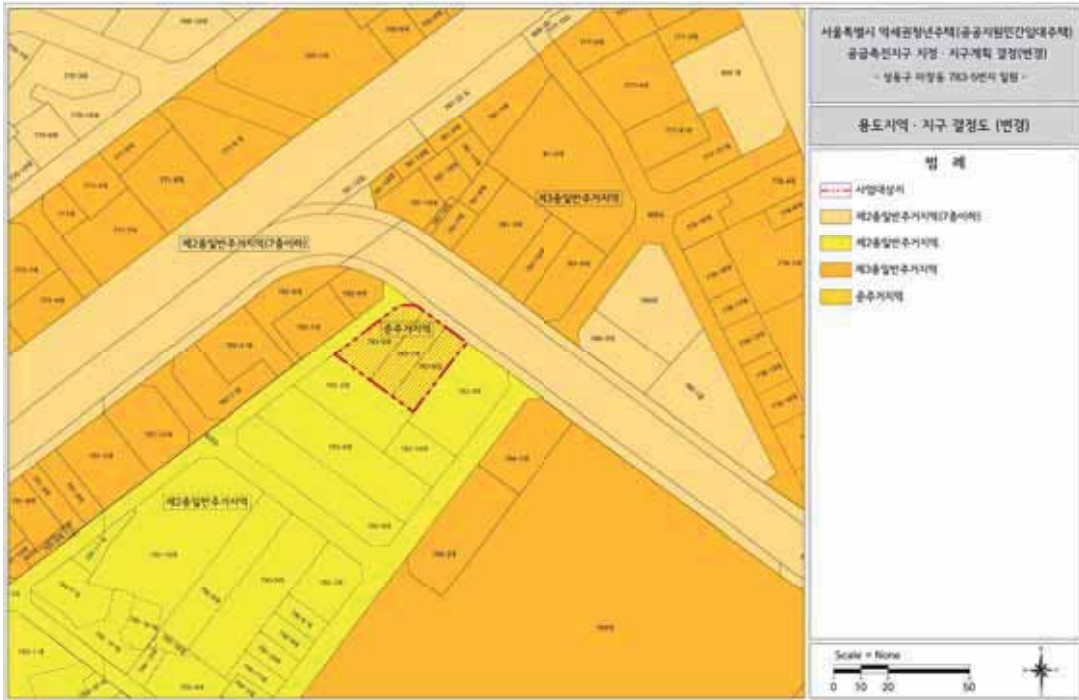
■ 공급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도 (신설)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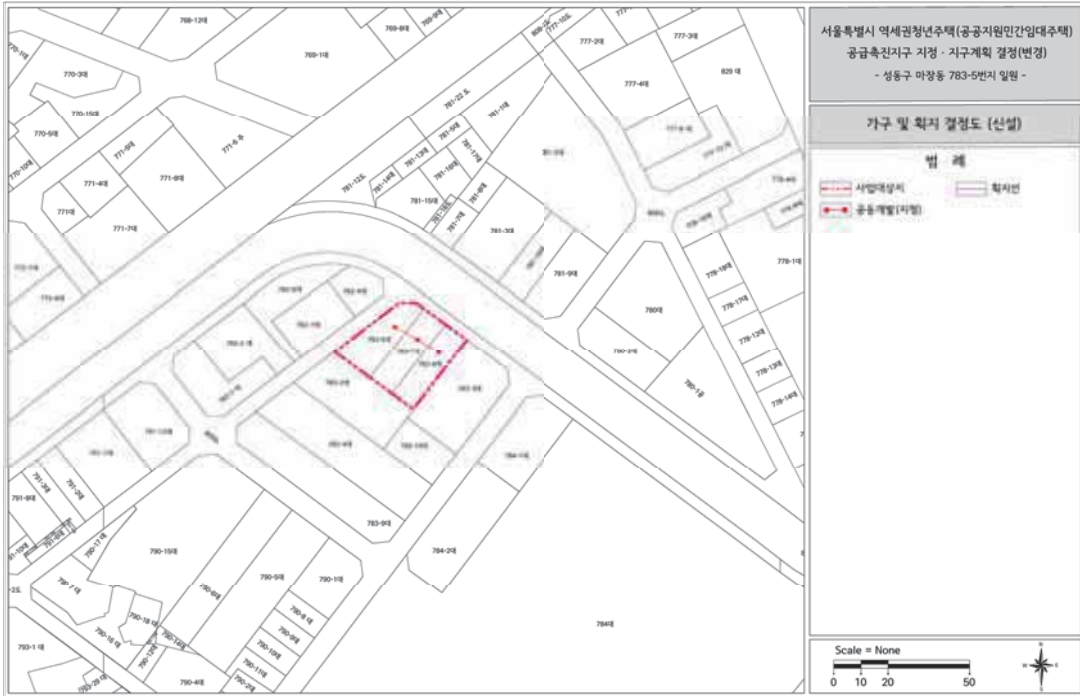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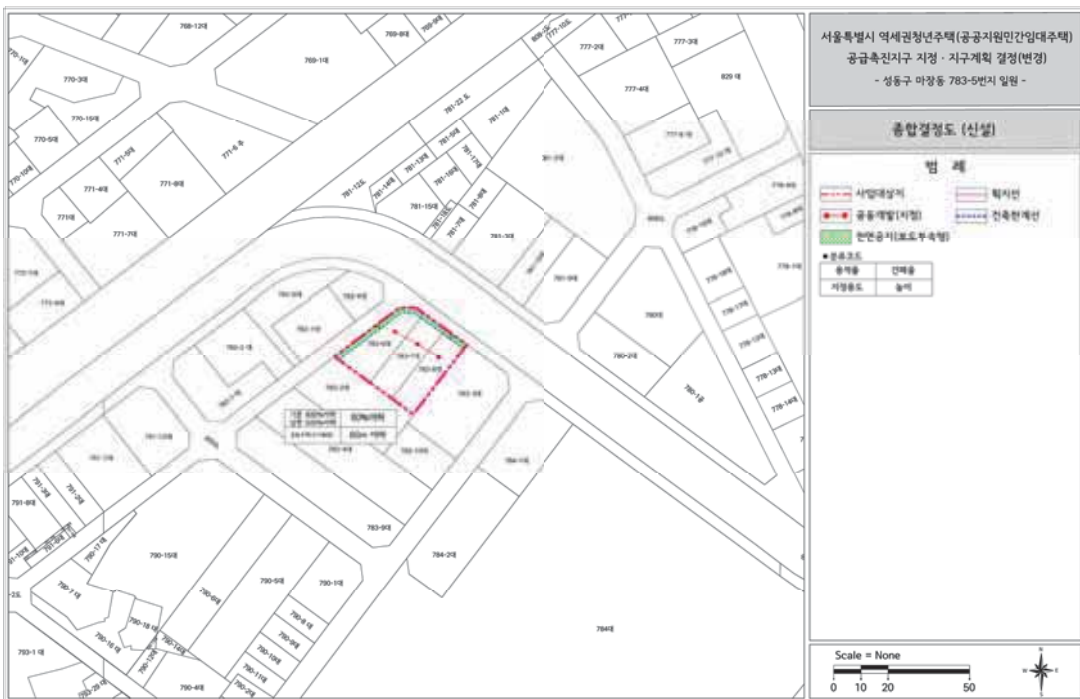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 결정도(신설)



■ 종합결정도(신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85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27호(2021.5.13.)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되고 ‘2021년 1차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51,604.27㎡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에 대하여 선정조건(구역경계 정형화 등) 반영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60,380.50㎡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기정	2021. 5. 13.	• 변경되어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기존 지정구역 변경 없음)
변경	2022. 2. 24.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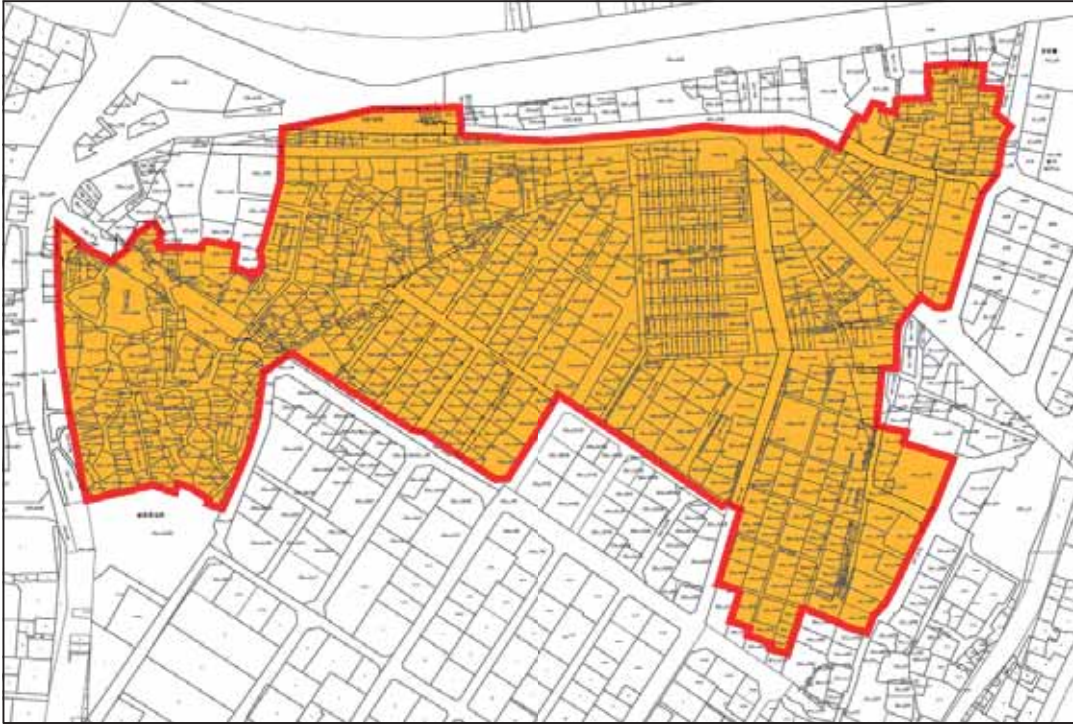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변경)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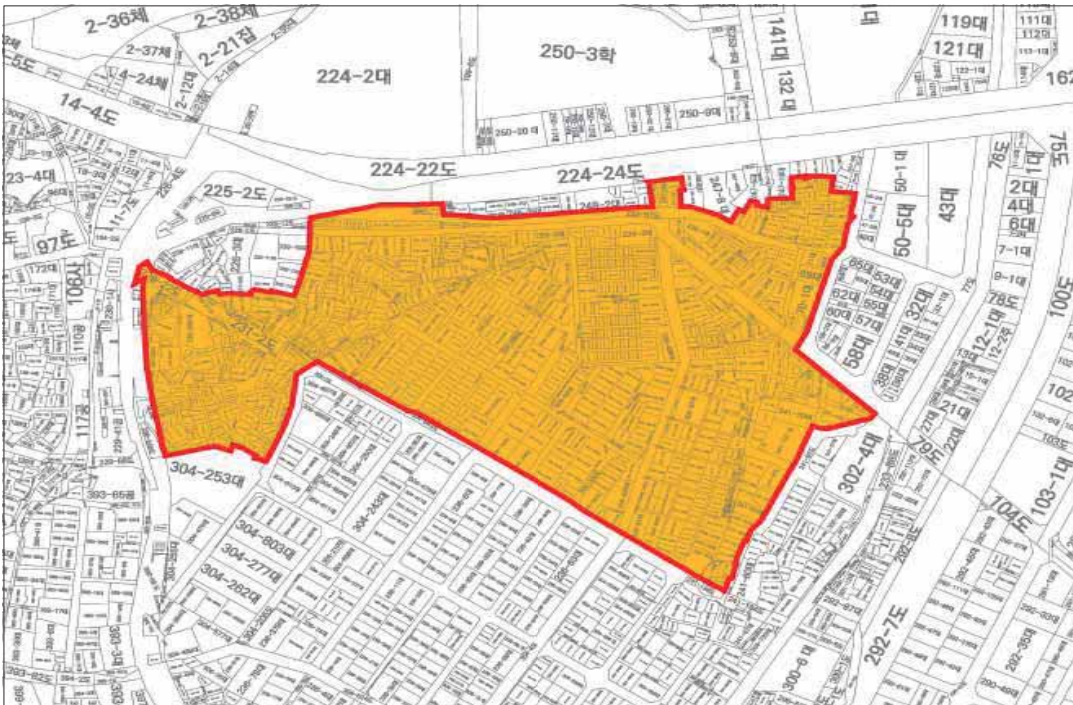
6. 안내사항 :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및 중구 도심재생
과(☎02-3396-5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행위제한 지역도면

○ 기 존



○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86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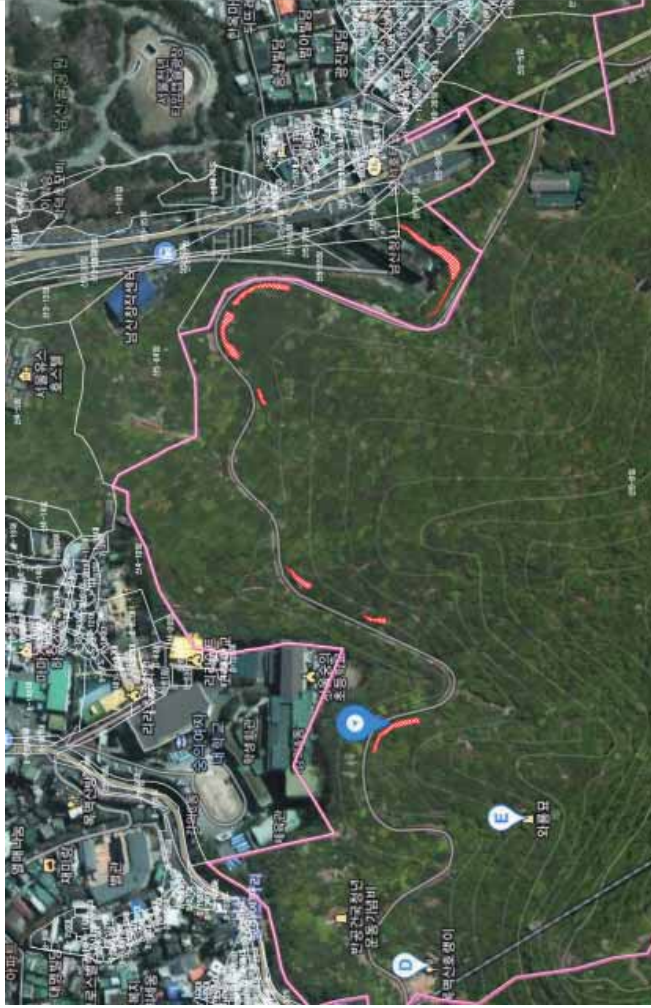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1. 고 시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6번지 외 2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22. 02. 24.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산지방재과 (☎02-2133-218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02-3783-594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토지조서 및 구역도면 각1부.

번호: 2022년도 제 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남산공원 부속순환로)	임야	439,171	764	

【붙임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토지 조서

구 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 고
	시·군·읍·면·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계				737,965	1,226			
2022-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남산공원 북측화로)	임야	439,171	764	국 (신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022-2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 일대 (남산청사 위림절토사면)	임야	12,219	403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022-3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일대 (구립중구노인센터 뒤)	임야	286,575	59	국 (신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8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서울시고시 제77호(2009.3.5.)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개운산근린공원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 공원형태로 이용중인 인접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입하여 중복결정 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수도공급설비	돈암동 산6-23 일대	4,500	-	4,500	서고 제2009-77호 (2009.3.5.)	개운산 배수지 (4,500㎡)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결정(1,377㎡) - 상부 : 공원 - 하부 : 배수지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수도공급설비	돈암동 산 6-18 등 2필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결정	- 기존 중복결정(공원, 수도공급설비)된 인근 필지 연계, 수도공급설비(2필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편입, 중복결정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개운산 근린공원	근린 공원	성북구 돈암동 산 3-15 일대	208,618	증)1,884	210,502	총고 208 (1940.3.12.)	면적증가 및 중복결정 - 상부 : 공원 - 하부 : 배수지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개운산 근린공원	· 공원 면적 변경(증가) - 면적 : 208,618㎡ → 210,502㎡ (증 1,884㎡)	- 기존 공원시설로 이용중인 공원 인접토지 편입 (돈암동 산6-8 등 3필지)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59) 및 성북구청 도시계획과(☎2241-2764)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30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2. 2. 24.~2022. 3. 10.(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납세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시간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	20212708	000047339214201 20211025001158	140호7996	카니발	세종로	2021-09-22	13:07	2021-09-22	15:46	002:39	13,700	13,700	0	(주)원콘텐츠	서울성동구아차산로17길 49	이사불명	2022-02-28
2	20212762	000047339214201 2021102500736	36호2165	모닝	북정역	2021-09-28	20:19	2021-09-28	20:26	000:07	100	100	0	고O주	서울광진구광나루로	폐문부재	2022-02-28
3	20212899	000047339214201 20211125001576	34호0443	카니발	개화역	2021-10-23	13:34	2021-10-23	14:15	000:41	1,500	1,500	0	(주)한강베스 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 로24길9	이사불명	2022-02-28
4	20212930	000047339214201 20211125001279	29호6494	쏘나타(SO NATA)	천호역	2021-10-24	11:04	2021-10-25	11:57	024:53	38,800	38,800	0	권O기	서울강서구화곡동	폐문부재	2022-02-28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43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 전 명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변상금 사전통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공시송달 내용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반송사유
기○석 (68년생)	시유재산 변상금 (2017~2021년) 사전통지	- 무단점유재산 : 마포구 대흥동 442 - 점유기간 : 2017.01.06.~2021.12.31. - 점유면적 : 0.75㎡ - 사전통지 내역 : 총액 1,253,76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 40 **	폐문부재(2회)

※ 공시송달기간 : 2022.02.24.~ 2022.03.10.

※ 공시송달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8)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44호

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확정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건 명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고기간 : 2022.2.24 ~ 2022.3.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대상자

성명	점유시유지	주소
박0운 (72년생)	종로구 가회동 4-24	종로구 북촌로12길 29-9(가회동)

- 처분원인사실 및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무단점유재산 : 종로구 가회동 4-24, 대, 2.5㎡ -점유기간 : 2017.1.6.~2021.12.31 -점유면적 : 2.5㎡	-변상금 사전통지 : 1,450,500원(2021.12.31.기준)

- 공고기간 : 2022.2.24 . ~ 2022.3.10.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 가. 의견 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공휴일 포함)
 - 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 의견제출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일 내 별도로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재산처분팀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 ☎02-3410-7188)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51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 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변상금 사전통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공시송달 내용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반송사유
이○심 (개명 전:이○재) (49년생)	시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무단점유재산 : 서초구 방배동 2908-14 - 점유기간 : 2021.01.01.~2021.12.31. - 점유면적 : 32㎡ - 사전통지 내역 : 총액 1,319,420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전원말*길 **)	폐문부재

※ 공시송달기간 : 2022.02.24~2022.03.10

※ 공시송달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55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개별건축물 등과 타행위에 부과·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

처리 구역	단 위	건설단가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2.2.24.~2023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2.2.24.~2023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 량	천원/㎥	921	704
난 지	천원/㎥	804	531
탄 천	천원/㎥	1,163	909
서 남	천원/㎥	832	57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5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송광용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2 **1호(신읍동)	일시 : 2021-12-07 20:25 장소 : 서울시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9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김영일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8, **2호(천곡동)	일시 : 2021-12-08 03:30 장소 : 서울시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9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2.03.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62호

과학관 등록말소 공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한 과학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말소연월일 : 2022. 2. 15.
2. 등록번호 : 제 기-2호
3. 명 칭 : LG사이언스홀
4.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5. 설 립 자 : (주)LG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28
7. 규 모 : 연면적 2,115.7㎡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 : 한유리(02-2133-525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6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2. 2. 24.~2022. 3. 10.(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 번호	차량 번호	납세번호	차종	주차장	주차 시간	입차 일자	입차 시각	출차 일자	출차 시각	부과 금액	가산금	주차 요금	소유자	주소	우편 번호	반송 사유	납부 기한
1	20213788	1841000	000047339 214201202 202250001 03	S63 AMG 4Matic L	수서역	192:00	2021-11-29	00:00	-	-	7,372,800	0	7,372,800	이O형	서울특별시 강북구도봉 로54길	01133	폐문 부재	공고 기간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7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홍*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134번길 6-1, 40*호 (하대원동, 대원빌라)	위반일시 : 2021-12-08 14:55 위반장소 :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부근 위반내용 :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4.15m, 초과값:0.15m, 82마72**)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2-01-25 납기일 : 2022-03-31
문*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57번길 *, (주안동)	위반일시 : 2021-12-10 13:43 위반장소 :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마을금고앞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2t, 초과값:1.2t, 경기06조56**)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22-01-25 납기일 : 2022-03-31
문*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57번길 *, (주안동)	위반일시 : 2021-12-10 15:49 위반장소 :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마을금고앞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8t, 초과값:1.8t, 경기06조63**)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22-01-25 납기일 : 2022-03-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윤*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12*동 10**호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위반일시 : 2021-10-02 14:02 위반장소 :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초입 위반내용 :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4.15m, 초과값:0.15m, 90마84**)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11-27 납기일 : 2022-01-31
김*훈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3*, (신장동)	위반일시 : 2021-10-15 06:43 위반장소 : 중구 예장동 남산1호터널입구 위반내용 :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66m, 초과값:0.16m, 서울07나51**)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11-27 납기일 : 2022-01-31
정*학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20, 10*동 10**호 (목동동, 산내마을1단지)	위반일시 : 2021-10-16 20:29 위반장소 : 서대문구 북아현동 신촌로323 위반내용 :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5m, 초과값:0.25m, 서울07가66**)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1-11-27 납기일 : 2022-01-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22. 03.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77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 공람 공고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및 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 나.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술밭공원역(우이신설선)~도봉구 방학역(경원선)
- 다. 규모: 3.93km, 정거장 3개소
- 라. 사업기간: 2021년~2029년
- 마. 시행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 가. 일시: 2022. 3. 15.(화) 10:00~
- 나. 장소: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 다. 주요내용: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라. 참석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
- 마. 진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기본계획(안) 공청회 순으로 진행
- 바. 기본계획(안) 의견발표신청 및 의견서 제출 방법
 - 1) 기본계획(안) 자료는 2022. 3. 4.(금)에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에 게시 예정입니다.
 - 2) 공청회 당일 의견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2.3.11.(금)까지 첨부한 “의견발표 신청서(양식1)”에 의견요지를 작성하여 전자우편(jaeryen@seoul.go.kr)으로 보내 주시면 10명 이내 대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3)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청회 의견서(양식2)”를 작성하여 공청회 폐회 후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고, 추후 제출을 원하시는 분은 2022. 3. 17.(목)까지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및 방문(도시기반시설본부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이머플레이스 빌딩 10층)
 - 전자우편(jaeryen@seoul.go.kr), 팩스(02-772-7304)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으로 접종완료자 등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며,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공청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접종완료자 기준 299명까지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방역패스 적용연령 이하자,
접종불가자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공람기간: 2022. 2. 24.(목)~2022. 3. 25.(금)

나.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 - 772 - 7174),

도봉구청 환경정책과(☎02 - 2091 - 3234),

강북구청 환경과(☎02 - 901 - 673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관계도서: 공람장소 비치

※ 평가서 초안 요약서: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게시

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시

라. 주민의견 제출방법

1) 제출기간: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 제출방법: 서면 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 양식 3

3) 제출장소: 공람장소, 전자우편(jaeryen@seoul.go.kr), 팩스(02 - 772 - 7304),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 - 772 - 717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79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범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일시: 2021-07-16 16:40 위반장소: 아차산로(왕십리 ~ 천호동) 내용: 경기98사3758 (트레일러5축, 폭초과 (실측값:2.78m, 초과값:0.28m), 적재물:크레인)	처분일: 2021. 08. 24.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1.10.31. 독촉일: 2021. 11. 11.
김*철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일시: 2021-08-06 06:00 위반장소: 강변북로(역삼동 ~ 남양주) 내용: 서울15가7948 (펌프카5축, 폭초과 (실측값:2.74m, 초과값:0.24m), 적재물:펌프카)	처분일: 2021. 09. 17.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1.11.30. 독촉일: 2021. 12. 10.
이*명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일시: 2021-08-14 07:39 위반장소: 이문로(회기동 ~ 하남) 내용: 서울07가8865 (크레인5축, 폭초과 (실측값:2.75m, 초과값:0.25m), 적재물: 기중기)	처분일: 2021. 09. 17.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1.11.30. 독촉일: 2021. 12. 10.
조*제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4안길	일시: 2021-09-06 15:16 위반장소: 이문로(회기동 ~ 신정동) 내용: 경기92아5305(카고3축, 폭 초과 (실측값:2.78m, 초과값:0.28m, 적재물: 컨테이너)	처분일: 2021. 10. 21. 과태료: 30만원 최초납기일: 2021.12.31. 독촉일: 2022. 01. 2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2. 2. 28.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보
2. 공고기간 : 2022.02.24. ~ 2022.3.10.(15일간)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여*아 포함 14명 (내역서 별첨)
5.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 02-2133-3468, 3491, 3474, 3460, 3486, 349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시송달[2022년 2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번호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 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660-140003-202109-2-531-100009	법인지방소득세	문*호	2022.02.0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1, 101동 1404호(연산동, 성일이안사티)	폐문부제	2022.02.24.	19,188,050
2	545-104003-201808-1-510-005071	주민세 법인공동분	문*일	2022.02.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204동 1118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폐문부제	2022.02.24.	64,370
3	545-104003-201808-1-510-010632	주민세 법인공동분	문*일	2022.02.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204동 1118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폐문부제	2022.02.24.	64,370
4	545-106001-202006-1-510-010195	자동차세 자동차	문*일	2022.02.11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204동 1117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폐문부제	2022.02.24.	445,480
5	545-104003-202008-1-510-001628	주민세 법인공동분	문*일	2022.02.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204동 1118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폐문부제	2022.02.24.	64,370
6	545-140004-202010-2-510-10090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문*일	2022.02.13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204동 1118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폐문부제	2022.02.24.	389,550
7	545-106001-202012-1-510-006837	자동차세 자동차	문*일	2022.02.14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204동 1120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폐문부제	2022.02.24.	431,980
8	545-140004-202104-2-510-10079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문*일	2022.02.15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204동 1121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폐문부제	2022.02.24.	1,054,230
9	545-140003-202106-2-510-100367	법인지방소득세	문*일	2022.02.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06, 204동 1122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폐문부제	2022.02.24.	28,408,120
10	410-101501-202102-2-585-000006	취득세 부동산	이*숙	2022.02.0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거품소길 273(유포리)	이사불명	2022.02.24.	547,122,940
11	410-104003-202008-1-585-000976	주민세 법인공동분	이*숙	2022.02.0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거품소길 273(유포리)	이사불명	2022.02.24.	64,370
12	410-104010-202012-2-585-000008	주민세 재산분	이*숙	2022.02.0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거품소길 273(유포리)	이사불명	2022.02.24.	562,960
13	410-104102-202110-2-585-001084	주민세(사업소분)	이*숙	2022.02.0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거품소길 273(유포리)	이사불명	2022.02.24.	496,010
14	650-140004-201704-2-651-10004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조*례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24,070
15	650-140003-201706-2-651-100126	법인지방소득세	조*례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24,44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범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 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6	650-140004-201707-2-651-10011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조*래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200
17	650-140003-201708-1-652-001619	주민세 법인균등분	조*래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3,200
18	650-140004-201804-2-652-10035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조*래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2,550
19	650-140003-201806-2-652-100125	법인지방소득세	조*래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46,160
20	650-140003-201906-2-652-100126	법인지방소득세	조*래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1,190
21	650-140003-202101-2-652-500004	법인지방소득세	조*래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3,194,830
22	650-140003-202101-2-652-500005	법인지방소득세	조*래	2022.02.04.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로42번길 21(상동)	주소불명	2022.02.24.	3,687,130
23	710-140004-202007-2-562-10013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재	2022.02.0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8길 6-3 303호(삼성동)	폐문부재	2022.02.24.	102,710
24	710-140003-202106-2-562-500043	법인지방소득세	이*재	2022.02.0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8길 6-3 303호(삼성동)	폐문부재	2022.02.24.	18,139,220
25	680-140003-201810-2-640-100016	법인지방소득세	연*훈	2021.11.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103동 3102호 (원효로7가, 용산더프라임)	폐문부재	2022.02.24.	44,220,270
26	680-140003-201706-2-640-100214	법인지방소득세	연*훈	2021.11.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103동 3102호 (원효로7가, 용산더프라임)	폐문부재	2022.02.24.	250,990
27	680-140003-202106-2-565-100030	법인지방소득세	최*태 이	2022.0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8층(삼성동)	이사감	2022.02.24.	15,054,530
28	200-202106-140003-2-690-500025	법인지방소득세	이*원	2022. 2.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발로 285, 124동 514호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폐문부재	2022.02.24.	11,614,560
29	500-202107-140004-2-605-10001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손*준	2022. 2.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41번길 14-4, 703호 (법환동, 스마트블루빌)	수취인불명	2022.02.24.	114,793,500
30	200-202106-140003-2-660-500002	법인지방소득세	김*규	2022. 2.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8길 13, 201호 (역삼동, 역삼동자연이집)	수취인불명	2022.02.24.	11,561,570
31	680-140004-201604-2-521-10032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추*식	2022.01.17.	경기도 하남시 덕동로 111-50, 트윈백스오피스텔 B동 307호(덕동동)	수취인불명	2022.02.24.	61,99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범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 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32	660-104003-201608-1-521-000490	주민세 법인균등분	추*식	2022.01.17.	경기도 하남시 덕평동로 111-50, 트윈렉스오피스텔 B동 307호(덕평동)	수취인불 명	2022.02.24.	64,370
33	660-140004-201610-2-521-10034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추*식	2022.01.17.	경기도 하남시 덕평동로 111-50, 트윈렉스오피스텔 B동 307호(덕평동)	수취인불 명	2022.02.24.	45,230
34	660-140003-202004-2-521-500012	법인지방소득세	추*식	2022.01.17.	경기도 하남시 덕평동로 111-50, 트윈렉스오피스텔 B동 307호(덕평동)	수취인불 명	2022.02.24.	41,004,490
35	560-104003-201908-1-620-000633	주민세 법인균등분	이*천	2022.01.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성량리동)	수취인불 명	2022.02.24.	64,370
36	560-104003-202008-1-620-000953	주민세 법인균등분	이*천	2022.01.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성량리동)	수취인불 명	2022.02.24.	64,370
37	560-140003-202110-2-620-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이*천	2022.01.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5(성량리동)	수취인불 명	2022.02.24.	13,138,880
38	620-104003-201908-1-595-000319	주민세 법인균등분	여*아	2022.0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6호(백석동)	폐문부재	2022.02.24.	64,370
39	620-104010-201909-2-595-000007	주민세 재산분	여*아	2022.0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6호(백석동)	폐문부재	2022.02.24.	118,610
40	620-140004-201909-2-595-10002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여*아	2022.0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6호(백석동)	폐문부재	2022.02.24.	58,090
41	620-140004-202003-2-605-10001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여*아	2022.0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6호(백석동)	폐문부재	2022.02.24.	369,000
42	620-104004-202004-2-595-10001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여*아	2022.0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6호(백석동)	폐문부재	2022.02.24.	634,390
43	620-140004-202005-2-605-10002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여*아	2022.0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6호(백석동)	폐문부재	2022.02.24.	706,000
44	620-140003-202006-2-605-100014	법인지방소득세	여*아	2022.0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6호(백석동)	폐문부재	2022.02.24.	2,726,770
45	620-104102-202109-2-605-000008	주민세(사업소분)	여*아	2022.01.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더루벤스카운티 1036호(백석동)	폐문부재	2022.02.24.	182,070
46	620-140004-202008-2-605-10000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권*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8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537,68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주민·법인명	발송일자	주소	공시·송달 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47	620-140004-202009-2-605-10002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관*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1,273,370
48	620-140004-202010-2-605-10004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관*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3,778,370
49	620-140004-202011-2-605-100028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관*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3,323,890
50	620-140004-202012-2-605-10002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관*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3,625,810
51	620-140004-202101-2-605-10002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관*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3,483,750
52	620-140004-202102-2-605-10003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관*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1,398,380
53	620-140004-202104-2-605-10000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관*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205,490
54	620-140003-202106-2-605-100011	법인지방소득세	관*구	2022.01.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683번길 6(풍덕천동)	주소불명	2022.02.24.	20,071,440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87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위반 기관에 대하여 제24조(등록취소)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및 내용
 - 불임1 등록취소 공시송달 대상 목록(10개소)
3. 공고 기간 : 2022.2.24~2022.3.19.(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근거법령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9호
5. 이의제기 안내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전자소송(ecfs.scourt.go.kr)도 가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54, songyi94@seoul.go.kr)

[붙임] 등록취소 대상 외국인환자유치기관(10개소)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 의료기관	M-2012-01-08-2298	진성형외과의원 (진*훈)	강남구 강남대로 412, 501호 (역삼동, 역삼빌딩 5층)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2-3920	리얼미(조*라 외1명)	성동구 독서당로 344, 102동 603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901	제이엔메디컬 주식회사 (JIN*A)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17, 502호(논현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7-01-01-2867	쥬더제이메디컬(김*한)	강남구 논현로 529, 502호(역삼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20-01-01-4010	주식회사 메디젠시 (김*진)	강남구 논현로135길 23 (논현동, 조복빌딩) 502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678	(유) 비엔에이치커뮤니 케이션즈(홍*주)	강남구 논현로30길 50(도곡동, 소망빌딩)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924	케이퍼뷰티 주식회사 (이*주)	강남구 압구정로30길 18, 310호(신사동)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705	웰니스트립 주식회사 (신*근)	관악구 과천대로 939, 104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9-01-01-3754	(유)비즈트리 (윤*희)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4층 4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유치업자	A-2016-01-01-2597	주식회사 붐써저리코리아 (수*****얏)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1213호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8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주재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10, ***동 ****호 (원곡동)	일시: 2021-12-01 09:50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35m 초과	처분일: 2022. 1.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3. 31.
김응래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60, *동 ***호 (가양동)	일시: 2021-12-03 09:34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30m 초과	처분일: 2022. 1. 26.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22. 3. 31.
박경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전상미로1067번길 **-*호 (모가면)	일시: 2021-12-24 10:54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22. 1. 26. 과태료: 15만 원 납기일: 2022. 3.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리영훈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2, ***동 ****호 (문산읍)	일시: 2021-11-03 14:20 장소: 용산역세권 개발 부지 오염토 정화공사 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처분일: 2021. 11.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1.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2. 3.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90호

2022년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2022. 2. 16.(수)~2. 17.(목)
-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 다. 심의대상: 일반안건 18건 30작품
- 라. 심의결과: 승인 21작품, 부결 9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1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조각	Tower of ten billion star	○		
1-2		조각	YOUR STELLA	○		
2-1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1	조각	공든탑Ⅲ		○	
2-2		조각	365개의 수직의 정원	○		
2-3		조각	BUD	○		
2-4		조각	The history of Human	○		
2-5		조각	약속의 정원	○		

2022년 제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2-6	강서구 특별계획구역 CP2블럭	회화	The Eternal Flame-Light Garden	○		
3-1		조각	Moon&Tree-White Dream	○		
3-2		조각	Leaf-자연으로	○		
3-3		조각	Public Dance	○		
4-1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2	조각	Forest Tale	○		
4-2		조각	Dialectic-Circulation	○		

2022년 제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5-1	강동구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조각	사랑의 꽃		○	
5-2		조각	하늘, 바람, 그리고 꿈		○	
5-3		조각	모여라! 6곰이의 말뚝박기		○	
5-4		조각	으랏차차!-청곰, 백곰이 태권도 시합		○	
6	중랑구 묵동 165일대	조각	사계(四季)-III	○		
7	용산구 한남동 76-6	조각	Wind Lion	○		

2022년 제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8	서초구 서초동 1445-1번지 외 1필지	조각	Shapes in nature	○		
9	중구 필동1가 43-1	조각	충무로 아카이브(Chungmuro Archive)		○	
10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조각	내리사랑-사랑의 형상	○		
11	마포구 신수동 91-90번지	조각	희망의 향해		○	
12	강남구 논현동 40	조각	마음의 축	○		
13	금천구 가산동 459-14	조각	꿈꾸는 사람들	○		

2022년 제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4	동대문구 전농동 620-15일원	조각	구름비		○	
15	서초구 서초동 1595-1 외 4필지	조각	happy & lucky	○		
16	금천구 가산동 60-23	조각	Symmetry	○		
17	동작구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조각	유연한 풍경		○	
18	중구 충무로1가 21-17 외 1	조각	통하는 숲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9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3개월) 조치 통보 공고

소방시설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 하여야 하나 현재 영업소재지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2. 24.(목) ~ 2022. 3. 10.(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확정 조치 통보

귀 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3개월)을 통보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2차 -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 명	대표 전기성 [(주)지디에스이엔지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 소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0길 14, 801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2022. 2. 17.(목) ~ 2022. 5. 18.(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제4조 ○ 처분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2항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개별기준 나목 2차	
비 고	○ 청문(22. 2. 17.) 불참석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3개월) 확정 조치 통보	

<행정심판 등의 고지>

-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49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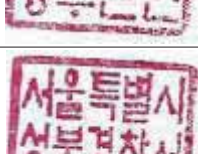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무기획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재무관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무기획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징수관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무기획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지출원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무기획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입금출납원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무기획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부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부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부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부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부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종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남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남대문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남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남대문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남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남대문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남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남대문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남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남대문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해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해화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해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해화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해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해화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해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해화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해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해화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용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용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용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용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용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성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마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마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마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마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마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성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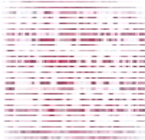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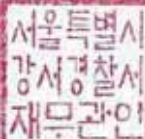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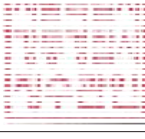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동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동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광진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광진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광진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광진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광진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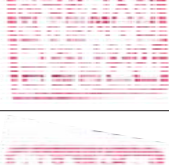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부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부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부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부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부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강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금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금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금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금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금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중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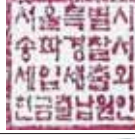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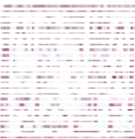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강남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남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남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남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남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관악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관악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관악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관악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관악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관악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관악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관악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관악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관악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 재무관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 징수관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 지출원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강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강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암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암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암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암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종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암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구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 재무관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구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 징수관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구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 지출원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구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구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초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초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초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초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초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양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양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양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양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 수입세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양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송파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재무관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송파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징수관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송파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지출원인	2.1cm × 2.1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송파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송파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노원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노원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노원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노원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노원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방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방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방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방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방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은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은평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은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은평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은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은평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은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은평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은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은평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도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도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도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도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도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수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 재무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수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 징수관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수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 지출원인	2.0cm × 2.0cm 훈민정음체		2022. 2.21.
수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수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인	1.8cm × 1.8cm 훈민정음체		2022. 2.2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02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명: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7조
3. 대 상

연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본사주소	반송 사유
1	(유)순희네에프앤비	순희가	202004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4, A동 2층 204호 (신설동)	패문 부재
2	(주)곳간	도심참고 곳간	202106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5층 510호 (여의도동)	수취인불명
3	(주)글로리아에프아이	쇼타임크루PC COOK	2020033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1316-1호 (목동)	이사 불명
4	(주)덕자네방앗간	덕자네방앗간	2017123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마길 29, 지1층 1호 (사당동, 엘파라시오 7차)	수취인불명
5	(주)디엔에이글로벌푸드컴퍼니	푸주한	201810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4층 (대치동)	수취인불명
6	(주)라이포에프앤씨	라이포PC방	2017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4길 7, 2층 (원효로2가)	이사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본사주소	반송 사유
7	(주)라이포에프앤씨	펍큐(PUBCUE)	2019069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4길 7, 2층 (원효로2가)	이사 불명
8	(주)라이온에프지	까사밍고	20130280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70, 207동 2902호 (감이동, 더샵 포월시티)	수취인불명
9	(주)라이온에프지	라이온시티피씨	20090100511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70, 207동 2902호 (감이동, 더샵 포월시티)	수취인불명
10	(주)라이온에프지	카툰공감	20160114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70, 107동 2902호 (감이동, 더샵 포월시티)	수취인불명
11	(주)라이온에프지	코인락스타노래연습장	20170080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70, 207동 2902호 (감이동, 더샵 포월시티)	수취인불명
12	(주)라핀카코리아	스마일햇도그&커피	20180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4길 6, 윤광빌딩 3층(개포동)	이사 불명
13	(주)리향인터내셔널	무스쿠스	2014057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202호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수취인불명
14	(주)마이리틀프렌드	마이리틀프렌드	201609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5, 301호 (문정동)	폐문 부재
15	(주)미담누리	숙성의미	20181302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08, 9층 902호 (옥길동)	폐문 부재
16	(주)미담제작소	88선수촌	20190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12, 203호 (논현동)	수취인불명
17	(주)민병철스피킹웍스	민병철스피킹웍스	200801004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15층 (역삼동)	수취인불명
18	(주)선디자인팩토리	오리진스타디카페24	201909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338-7(방화동)	이사 불명
19	(주)세진푸드	코나야	201412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지하1층 파르나스몰 에프-7,8호 (삼성동)	이사 불명
20	(주)스토리뱅크	베이크스토리	20141174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307호 (성수동2가)	수취인불명
21	(주)씨엘파미유	시칠리아피떡	2018126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609호, 610호 (문정동)	이사 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본사주소	반송 사유
22	(주)씨엘파미유	카페에이븐	201812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609호, 610호 (문정동)	이사 불명
23	(주)씨엘파미유	테라이케맨	201900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609호, 610호 (문정동)	이사 불명
24	(주)웅아리제이에스유통	웅아리별교꼬막	201813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1307호 (가락동)	수취인불명
25	(주)이찌방이야기	이찌방이야기	201909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0길 53, 103호 (장안동)	폐문 부재
26	(주)이태리상회	이태리상회	201805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21, 3층 02호 (창천동)	기타
27	(주)일이육삼	일이육삼	201806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8, 5층 A06호 (성내동)	폐문 부재
28	(주)지에프네트웍스	빠아앙	201713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길 60, 206호 (역삼동)	수취인불명
29	(주)지에프라인	레드아이	2019086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8, 다미빌딩 2층 (성수동2가)	수취인불명
30	(주)케이엠씨	세프PC카페	202011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10, 제2층 208호 (문정동)	수취인불명
31	(주)폴스타컴퍼니	김군네통닭집	2015049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4, 1층 (논현동)	폐문 부재
32	(주)피엠씨에프앤비	리틀파파포	201802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길 7, 1층 3호, 2층, 3층 (합정동)	폐문 부재
33	(주)필리스테이크	필리스테이크	201801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산로15라길 2, 3층 (도림동)	이사 불명
34	(주)휴니앤코	독스하트	2021049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3나길 8, 1층 (보문동7가)	수취인불명
35	달링스테이크	달링스테이크	20180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9, 지하1층 (논현동)	수취인불명
36	디바인핸즈	디바인핸즈	2017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8길 11, 2층 (청담동)	이사 불명

연번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본사주소	반송 사유
37	디비코리아	달려라달봉이떡볶이	20180790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33, 1층 (쌍문동)	이사 불명
38	땡초닭발	수유땡초닭발	20201586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31길 36, 땡초닭발 (번동)	폐문 부재
39	생고기제작소(주)	생고기제작소	2021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51길 11, 502호 (당산동6가)	수취인불명
40	씨케이컴퍼니	비쇼네	2016076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 3층 (역촌동)	폐문 부재
41	애월의밤(당오댕)	애월의밤	202103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4길 10, 지층 (당산동3가)	기타
42	에이치더블유푸드시스템	올더플레이트	201715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9길 11-10, 202호 (연남동, 금풍하이빌)	수취인불명
43	엠제이더블유(주)	숯칼손칼국수	2020076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5길 9-12(방이동)	수취인불명
44	엠케이푸드시스템	먹킷리스트홈샤브월남쌈마 이훙잇	202006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8길 14, 1층 (화곡동)	폐문 부재
45	위니드교육	위니드수학학원	20171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5, 7층 (방배동)	수취인불명
46	인생보조개	인생보조개	201913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9-1, 2층 (삼성동)	폐문 부재
47	(주)중앙지앤이	토마스잉글리시	201101000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1706-2호 (가산동)	수취인불명
48	철성발효묵은지	강짬짜	2019125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8, 201호 (송파동)	수취인불명
49	케이앤씨푸드	치&강	2018134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108호 (역삼동)	수취인불명
50	타키(서래마을점)	타키	201803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6길 38, 1층 101호 (반포동)	이사 불명
51	포첸하우스	포첸하우스	2018096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1길 6, 103호 (도곡동)	폐문 부재

4. 기 간: 2022. 2. 25. ~ 3. 11.(15일간)

5. 내 용

가. 위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 및 변경신고)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걸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음.

나. 아울러, 위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시송달을 시행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2. 2. 25. ~ 3. 11.(15일간)

나.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붙임-의견제출서 참고),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제출방법: 이메일 jdww10004ok@seoul.go.kr / 팩스 02-768-8852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02-2133-5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의견제출서>

예정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자 일반현황

- 상 호 :
(대 표 자) :
○ 영 업 표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법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인 경우) :
○ 주 소 :
(연락처 : 전화 / 핸드폰)

2.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

(별지 작성 가능)

3. 근거자료

(별지 작성 및 별도 첨부 가능)

상기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 .

대표자 (회사명) (직책) (성명)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중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1750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 건명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변상금 사전통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대상자

대상자	공시송달 내용	무단점유사실 및 확정부와 내역	송달주소	반송사유
김○호 (61년생)	시유재산 변상금 확정부과	- 무단점유재산 : 영등포구 도림동 180-14 - 점유기간 : 2017.02.04.~2021.10.27. - 점유면적 : 26㎡ - 확정부와 내역 : 총액 30,736,730원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45번길 **	주소불명

※ 공시송달기간 : 2022.02.24. ~ 2022.03.10

※ 공시송달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2 - 64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식매각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장 상 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캡시스	20,000	백지신탁	35,910	2021.10.13.	KB증권	
본인	셀트리온	300	백지신탁	64,800	2021.10.21.	KB증권	
본인	아이센트	1,000	백지신탁	31,200	2021.10.21.	KB증권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김 용 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등명종합건설주식회사	66,000	백지신탁	23,093,862	2020.10.16.	농협중앙회	

구 고 시

강북구고시 제2022-24호

도시관리계획(수유·변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3호(2009.6.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6.25.)로 변경 결정된 “수유·변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강 북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구면적 변경

2. 도시관리계획(수유·변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결정 조서(변경)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B4-01	수유동 48-1	1,189.4		
	수유동 48-7	623.8		
	수유동 48-8	739.8		
	수유동 48-9	139.8	권장	
	수유동 48-10	133.2	지정	토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면적 증가
	수유동 48-11	61.2		
	수유동 48-4	477.6		
	수유동 104-1	245	지정	
	수유동 48-85	62.7		
	수유동 48-87	47.4	권장	
	수유동 48-14	208.6		
	수유동 48-15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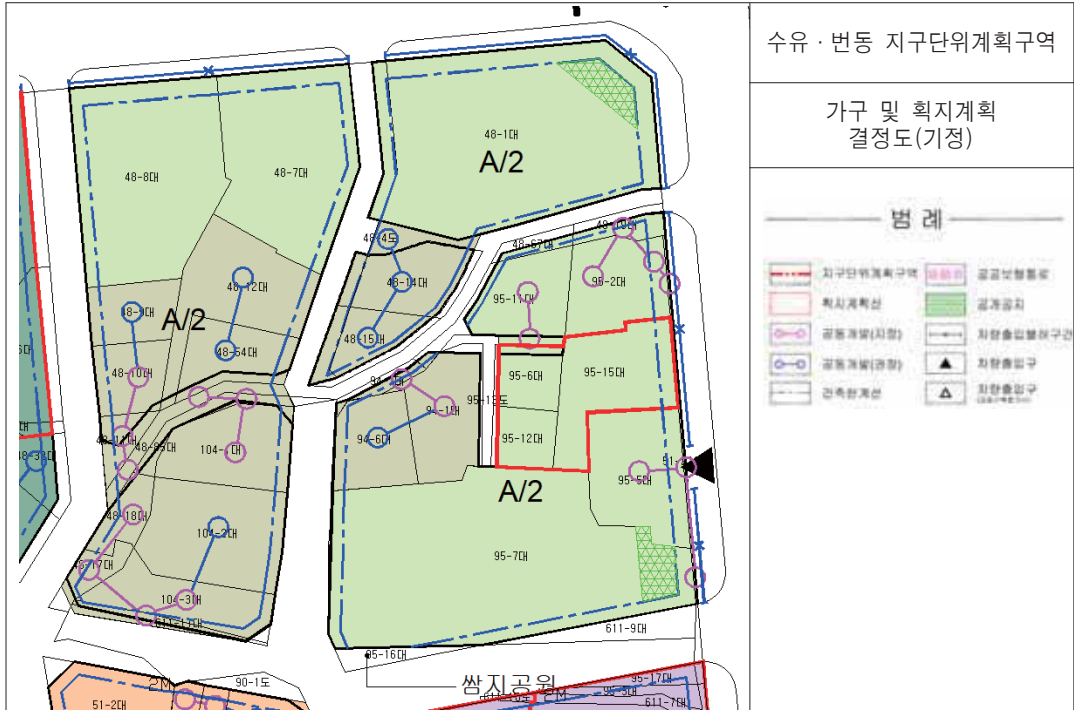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B4-01	수유동 48-18	79.1	지정	
	수유동 48-17	64.8		
	수유동 104-3	241		
	수유동 611-11	28		
	수유동 104-2	357		
	수유동 48-12	337.2	권장	토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면적 증가
	수유동 48-54	173.6		
	수유동 95-7	1,356		
	수유동 95-6	122	획지선 지정	
	수유동 95-12	112		
	수유동 95-15	314		
	수유동 95-2	241	지정	
	수유동 48-19	65.8		
	수유동 51-22	33.1		
	수유동 95-5	301	지정	
	수유동 95-13	60	지정	
	수유동 95-11	231		
	수유동 94-6	192	권장	
	수유동 94-1	245	지정	
	수유동 94-7	23		

나. 그 외 변경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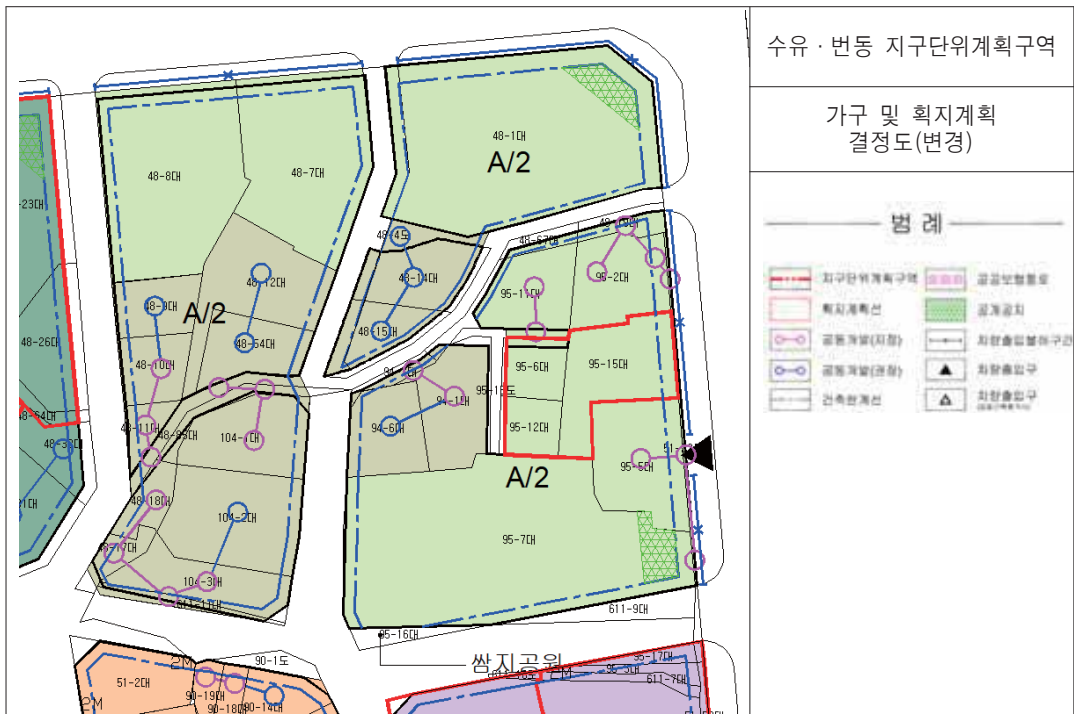
3. 기타 세부내용 등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 생략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7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도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기정



□ 지구단위계획도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변경



마포구고시 제2022 - 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68호(2010.7.15.)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3-491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3-491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성산동 592-8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3-491호)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 면적 및 규모

- 1) 면 적 : 75.9㎡
- 2) 규 모 : 도로 B=2.3m, L=33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 **층(역삼동, 삼성빌딩)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2.0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공공시설(㎡)	토지소유자	귀속대상 물건
성산동	592-8	대	1328.8	33.34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토지 및 시설물

아. 의제 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1항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신동 592-8	대	1328.8	33.34	우리자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 **층(역삼동)				
2	성신동 594	도	5194.5	42.56	마포구 (서울특별시)	-				
계			6523.3	75.9						

강서구고시 제2022 - 23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결정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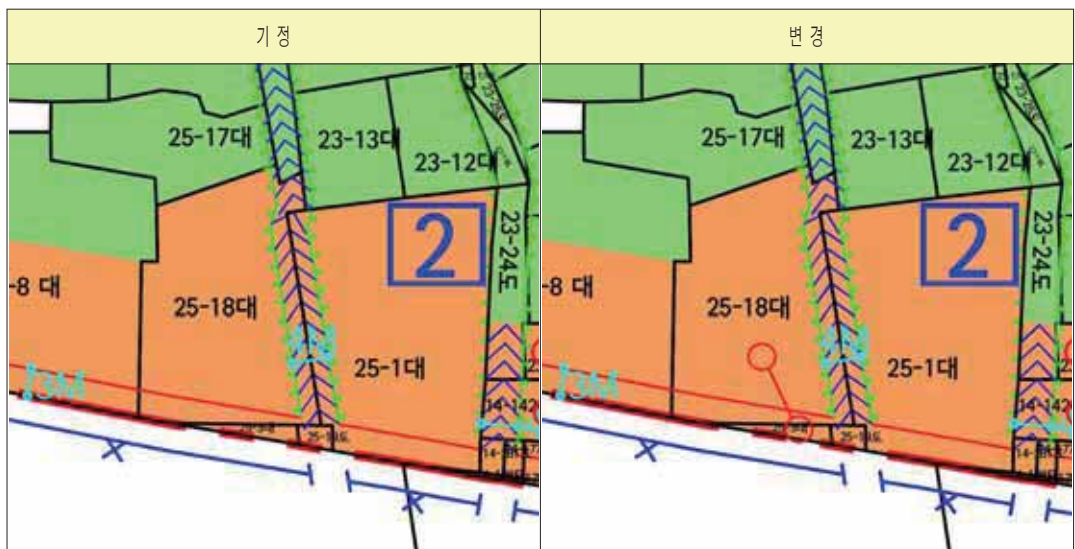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

가구번호	지 번	면 적(㎡)	계획 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E1 ㉔	공항동 25-3	16	-	공동개발(지정)	
	공항동 25-18	471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고시 제2022 - 24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결정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

가구번호	지 번	면 적(㎡)	계획 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E3-a ㉔	내발산동 654	2,094.9	공동개발(지정)	-	
	내발산동 654-1	447.6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고시 제2022 - 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공동 137-2~131-1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구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가.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도로 구분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폭원(m)							
신설	소로	2	8	국지 도로	135	공동 137-2	공동 131-1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사유

- 주민체육시설에 접근하는 도로이고 주류회사가 존재하여 도로상황에 비해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를 위한 인도확보 및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확보가 필요

2. 지형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및 도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고시 제2022 - 4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5호(2009.6.1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절차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변경결정 조서(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서초구 신원동 225일대	11,979	감)11,979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35호 (2009.06.11.)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75호(2022.2.24.)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나.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근린공공시설 (보건지소)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	-	증)900	900	-	중복결정 공공청사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	증)11,979	11,979	-	

■ 중복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900㎡	•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주변지역의 복지허브 및 노후복지기반시설을 마련하여 돌봄 및 지역공공서비스를 향상(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11,979㎡	

■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60%이하	150%이하	5층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2.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9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강남구고시 제2022 - 43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경미한 사항)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삼성동 142-14호, 삼성동 143-21호 대지분할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구		공 동 개 발			비 고
번 호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C5-6	10,297.8	기 정	삼성동 142-14	475.3	대지분할 가능선 신설
		변 경	삼성동 142-14(가)	237.7	
			삼성동 142-14(나)	237.6	
C7-2	7,009.6	기 정	삼성동 143-21	357.3	대지분할 가능선 신설
		변 경	삼성동 143-21(가)	151.0	
			삼성동 143-21(나)	206.3	

○ 변경사유서

연번	위 치	결정(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1	삼성동 142-14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대지분할 가능선 지정(신설)
2	삼성동 14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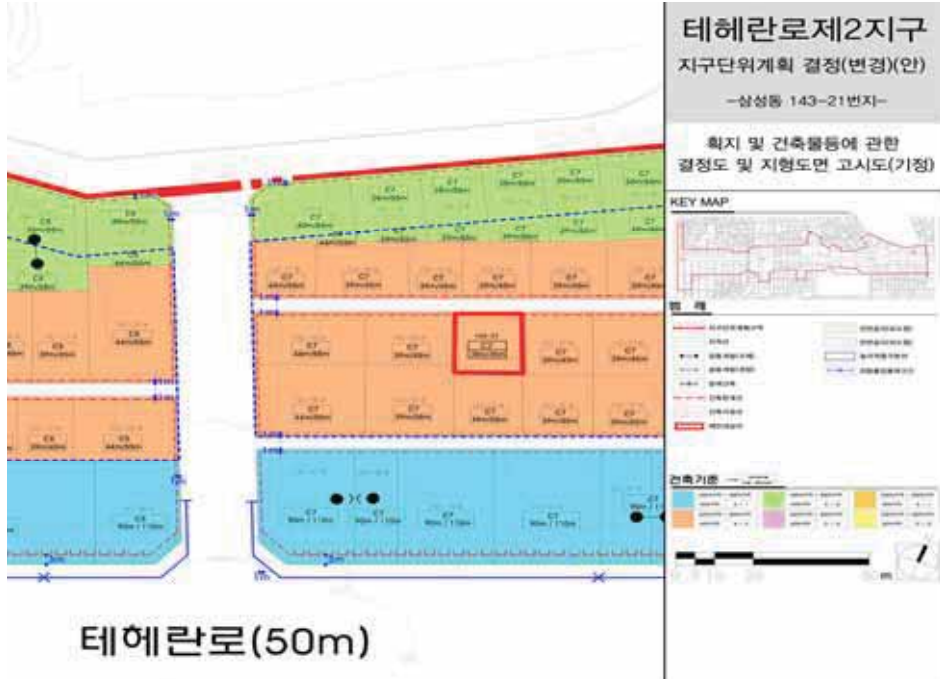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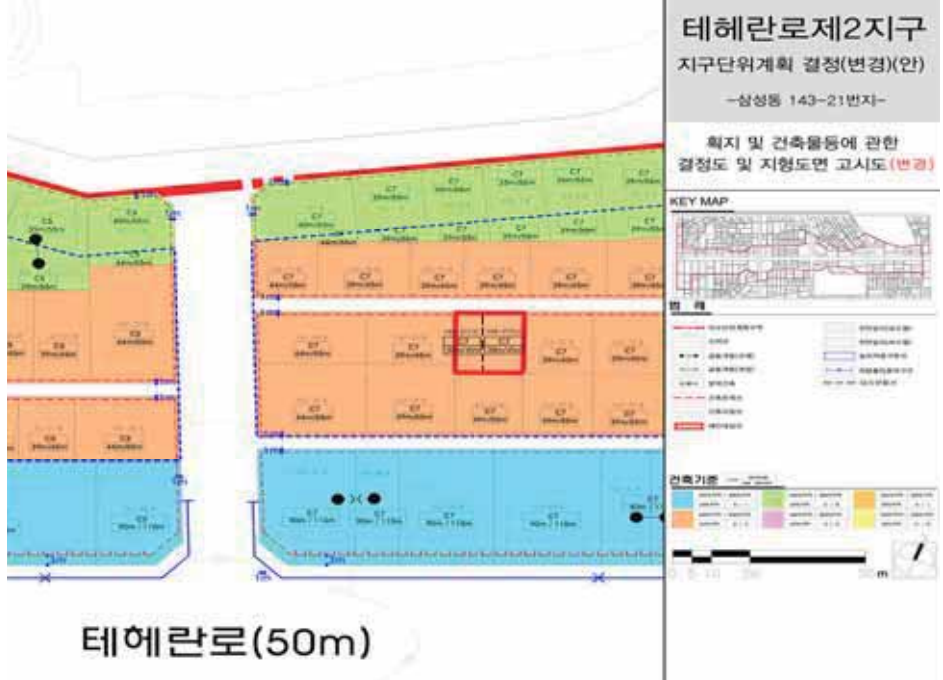
※ 필지분할에 따른 높이계획 변경은 결정도 참조

3. 관계도면: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삼성동 142-14

○ 삼성동 143-21

기정	 테헤란로(50m)
변경	 테헤란로(50m)

송파구고시 제2022 - 45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도로법」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구분		[V]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구 도	
노선번호		별도첨부	
노선명		별도첨부	
기점		별도첨부	
종점		별도첨부	
주요 통과지		별도첨부	
총연장 (킬로미터)		별도첨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별도첨부	
	연장 (킬로미터)	별도첨부	

- 붙임 1. 송파구 위례신도시 도로(구도) 지정 노선 1부.
2. 송파구 마천지구 도로(구도) 지정 노선 1부.

[붙임1]

송파구 위례신도시 도로(구도) 지정 노선

연번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k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	중용구간 연장	비고
1	구도	위례순환로	142	장지동 879	장지동 885-1	0.823		0.823		
2	구도	위례광장로	143	장지동 879	장지동 886	0.913		0.913		
3	구도	위례광장로	144	장지동 901	장지동 900-2	0.429		0.429		
4	구도	위례광장로	145	장지동 896	장지동 892	0.429		0.429		
5	구도	장지27	2,527	장지동 897	장지동 896	0.203		0.203		
6	구도	장지28	2,528	장지동 901	장지동 901	0.217		0.217		보행자 전용도로
7	구도	장지29	2,529	장지동 894	장지동 894	0.067		0.067		보행자 전용도로
8	구도	장지30	2,530	장지동 895	장지동 895	0.069		0.069		보행자 전용도로
9	구도	장지31	2,531	장지동 883	장지동 883	0.068		0.068		보행자 전용도로
10	구도	장지32	2,532	장지동 884	장지동 884	0.069		0.069		보행자 전용도로
11	구도	장지33	2,533	장지동 897	장지동 897	0.1		0.1		보행자 전용도로
12	구도	장지34	2,534	장지동 896	장지동 896	0.1		0.1		보행자 전용도로
13	구도	장지35	2,535	장지동 894	장지동 894	0.231		0.231		보행자 전용도로
14	구도	장지36	2,536	장지동 895	장지동 895	0.231		0.231		보행자 전용도로
15	구도	장지37	2,537	장지동 893	장지동 893	0.040		0.040		보행자 전용도로
16	구도	장지38	2,538	장지동 892	장지동 892	0.040		0.040		보행자 전용도로
17	구도	장지39	2,539	장지동 883	장지동 883	0.262		0.262		보행자 전용도로
18	구도	장지40	2,540	장지동 884	장지동 884	0.262		0.262		보행자 전용도로
19	구도	장지41	2,541	장지동 881-5	장지동 881-5	0.03		0.03		보행자 전용도로
20	구도	장지42	2,542	장지동 880-1	장지동 880-1	0.034		0.034		보행자 전용도로

[붙임2]

송파구 마천지구 도로(구도) 지정 노선

연번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	중용구간 연장	비고
1	구도	성내천로	146	마천동 605	마천동 605	0.0701		0.0701		
2	구도	성내천로	147	마천동 600	마천동 600	0.0902		0.0902		
3	구도	성내천로	148	마천동 575	마천동 582	0.5398		0.5398		
4	구도	성내천로	149	마천동 199-29	마천동 579	0.0945		0.0945		
5	구도	성내천로	150	마천동 271-76	마천동 354-32	0.6561		0.6561		
6	구도	마천205	2,405	마천동 602-1	마천동 600	0.1493		0.1493		
7	구도	마천206	2,406	마천동 615	마천동 615	0.0111		0.0111		

송파구고시 제2022 - 51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2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2021-64호(2021.4.1.)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잠실7동 925-1~마천동 60-5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구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규 모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전기공급 설 비	삼성1동 167	대치2동 78-30	-	949.5m (폭3.3~3.55m)	3,391.4㎡ (본선 : 3,339.2㎡) (환 기 구 : 52.2㎡)	서고 2020 -572호 ('20.12.24)	도로, 하천 중복결정
변경 없음	-	전기공급 설 비	삼성1동 167	대치2동 78-30	-	949.5m (폭3.3~3.55m)	3,391.4㎡ (본선 : 3,339.2㎡) (환 기 구 : 52.2㎡)	-	도로, 하천 중복결정
기정	①	전기공급 설 비	잠실7동 925-1	문정2동 150-15	탄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4,967.5m (폭3.55m)	17,843.0㎡ (본선 : 17,634.6㎡) (수직구2 : 128.6㎡) (환 기 구 : 79.8㎡)	서고 2020 -572호 ('20.12.24)	도로 (중로1류, 광로2류) 하천 중복결정
변경	①	전기공급 설 비	잠실7동 925-1	문정2동 150-15	탄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4,970.5m (폭3.55m)	17,865.7㎡ (본선 : 17,585.1㎡) (수직구2 : 200.8㎡) (환 기 구 : 79.8㎡)	-	도로 (중로1류, 광로2류) 하천 중복결정
기정	①	전기공급 설 비	마천동 60-5	마천동 60-5	감일남로	132.1m (폭2.54m)	335.5㎡ (본선 : 335.5㎡)	서고 2020 -572호 ('20.12.24)	도로 (대로1류) 중복결정
변경 없음	①	전기공급 설 비	마천동 60-5	마천동 60-5	감일남로	132.1m (폭2.54m)	335.5㎡ (본선 : 335.5㎡)	-	도로 (대로1류) 중복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 도시계획시설 신설 : - 연장 L=4,967.5m 4,970.5m(증 3m) - 면적 A=17,843.0㎡ → 17,865.7㎡(증 22.7㎡)	→ - 서울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과 전력구 노선상 수직구의 간섭에 따른 협의 결과 반영 (수직구 위치 및 선형 변경)
①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 도시계획시설 신설 : - 연장 L=132.1m 132.1m - 면적 A=335.5㎡ → 335.5㎡	→ - 변경없음

다.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 925-1~마천동 60-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명칭: 서울 동남권지역 전기공급설비 전력구공사(동서울#2~강남)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면적 18,178.5㎡, 연장 5,099.6m
- (변경) 면적 18,201.2㎡, 연장 5,102.6m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규 모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전기공급 설비	잠실7동 925-1	문정2동 150-15	탄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4,967.5 (폭3.55m)	17,843.0 (본선 : 17,634.6㎡) (수직구2 : 128.6㎡) (환 기 구 : 79.8㎡)	서고 2020 -572호 ('20.12.24)	도로 (중로1류, 광로2류) 하천 중복결정
변경	①	전기공급 설비	잠실7동 925-1	문정2동 150-15	탄천대로 양재대로 송파대로	4,970.5 (폭3.55m)	17,865.7 (본선 : 17,585.1㎡) (수직구2 : 200.8㎡) (환 기 구 : 79.8㎡)		도로 (중로1류, 광로2류) 하천 중복결정
기정	①	전기공급 설비	마천동 60-5	마천동 60-5	감일남로	132.1m (폭2.54m)	335.5㎡ (본선 : 335.5㎡)	서고 2020 -572호 ('20.12.24)	도로 (대로1류) 중복결정
변경 없음	①	전기공급 설비	마천동 60-5	마천동 60-5	감일남로	132.1m (폭2.54m)	335.5㎡ (본선 : 335.5㎡)		도로 (대로1류) 중복결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장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21.4.1. ~ 2023.12.31. 까지
- (변경) 2021.4.1. ~ 2025.06.29.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당초	변경		
1	잠실7동 925-1	천	47,270.0	906.0		국토해양부	
2	잠실7동 918-2	천	3,751.0	135.5		건설교통부	
3	잠실7동 131	제	7,344.6	197.9		서울특별시	
4	잠실7동 137	도	1,330.0	124.8		서울특별시	
5	잠실7동 139	제	4,813.4	295.9		서울특별시	
6	잠실7동 149	도	3,970.7	267.0		서울특별시	
7	잠실7동 129	도	5,408.8	64.4		서울특별시	
8	잠실본동 342	도	3,630.7	60.5		서울특별시	
9	잠실본동 306	유	66,212.8	104.7		송파구	
10	잠실본동 366	도	2,627.6	104.3		서울특별시	
11	잠실본동 352	도	8,638.6	681.2		서울특별시	
12	잠실본동 353	도	8,526.8	2,064.0		서울특별시	
13	잠실본동 350	도	4,936.9	130.3	150.5	서울특별시	증 20.2
14	잠실본동 349	도	2,848.9	116.8	134.9	서울특별시	증 18.1
15	삼전동 20	도	7,329.5	407.6	398.6	서울특별시	감 9.0
16	삼전동 21	도	6,475.0	245.1	221.7	서울특별시	감 23.4
17	삼전동 348	도	5109.3	-	16.8	서울특별시	증 16.8
18	삼전동 74-2	도	4,352.0	772.5		서울특별시	
19	삼전동 85-3	도	1,501.3	256.3		서울특별시	
20	삼전동 85-6	도	2,850.9	516.1		서울특별시	
21	삼전동 87-1	도	4,351.7	772.5		서울특별시	
22	삼전동 89-1	도	389.7	63.2		서울특별시	
23	삼전동 89-3	도	3,962.5	709.3		서울특별시	
24	삼전동 156	도	3,690.4	392.1		서울특별시	
25	석촌동 302	도	2,170.2	157.2		서울특별시	
26	가락1동 508	유	100,510.0	41.8		송파구	
27	가락1동 513-1	천	6,366.0	482.8		건설교통부	
28	가락1동 513	제	15,863.0	1,483.9		서울특별시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당초	변경		
29	가락1동 533	제	3,420.0	170.8		건설교통부	
30	가락1동 532	제	10,636.0	26.2		서울특별시	
31	가락1동 538	도	4,998.0	397.4		서울특별시	
32	가락1동 509-11	도	5,149.0	368.2		서울특별시	
33	가락1동 282	도	42,066.0	2,533.7		서울특별시	
34	가락1동 341-41	도	122.0	10.9		서울특별시	
35	가락1동 600	대	542,860.0	357.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6	가락1동 334-11	도	9,433.0	178.5		서울특별시	
37	가락1동 172-9	도	17,426.0	1,289.9		서울특별시	
38	가락1동 318-13	도	372.0	39.1		서울특별시	
39	가락1동 326-16	구	152.0	7.3		한국농어촌공사	
40	가락1동 324-6	구	17.0	8.2		한국농어촌공사	
41	가락1동 215-5	답	640.0	58.1		한국농어촌공사	
42	가락1동 184-23	도	7,784.0	800.1		서울특별시	
43	문정2동 150-15	공	8,858.8	43.5		송파구	
44	마천동 60-5	도	16,955.0	272.0		서울특별시	
45	마천동 63-8	도	1,065.0	63.5		서울특별시	
계			1,008,186.1	18,178.5	18,201.2		증 22.7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29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공 고

중랑구공고 제2022 - 272호

도시관리계획[면목·상봉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0-924호(2020.9.3.)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면목·상봉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중 랑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면목·상봉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봉우재로 20가길 58일대	-	증) 321,121.1	321,121.1	-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중랑구 봉우재로 20가길 58일대	321,121.1	·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결정(서울시고시 제2016-129호 '16.04.28.) 되어, 이에 따른 진흥계획이 승인 고시 (중랑구 고시 제2017-50호 '17.07.24.) 된 대상지의 원활한 진흥계획 실현 유도 · 면목·상봉지역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수립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 4)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 5)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결정도 : 생략 (열람장소 비치)
-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다.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82)
-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노원구공고 제2022 - 215호

상계2·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일부) 환지처분 정정 공고

상계6구역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노원구 공고 제2021-1000호(2021.07.29.)로 공고된 환지처분 공고에 대하여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정정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상계2·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일부) (변경 없음)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1-300번지 일대

○ 면 적 : 83,088.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4. 사업기간 : 1979. 03. 02. ~ 2021. 07. 29. (변경 없음)

5. 환지 확정처분 내역(변경 없음)

구 분	계	일반지	분양지	일반지 + 분양지	체비지	보류지	공공용지
필지수	345	255	13	8	10	7	52
면적(㎡)	83,088.8	54,873.4	2,147.4	2,760.0	301.5	1,232.6	21,773.9

6. 정정 사항(붙임참조)

○ 상계2구역 3블록 4롯데 환지처분조서

○ 상계2구역 3블록 5롯데 환지처분조서

7. 환지처분일 : 2021. 07. 29. (변경 없음)

8. 사업비 정산 내역 (변경 없음)

- 징수 청산금 : 2,795,424,390원
- 교부 청산금 : 315,677,520원

9.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밖의 사업비 재원별 내역 (변경 없음)

- 체비지 매각대금 : 없음
- 보조금 : 내역 생략
- 사업비 재원별 내역 : 내역 생략

10. 기타사항

- 정정된 세부내역의 관계도서는 부동산정보과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부동산정보과 02-2116-3618 / 3626 / 3629)

종량식 실적						정량식 실적									
품명	차 번	차별	대용량적 (㎡)	거중량적 (㎡)	거벼량적 (㎡)	8.5L	10T	물량	차 번	대용량적 (㎡)	중대량적 (㎡)	중벼량적 (㎡)	중중량적 (㎡)	중벼량적 (㎡)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물품	111-02	02	805.00		87.52										
	111-079	02	845.00		845.00										
	물		845.00		287.52	8	5	1889.7		287.52	280.50			18.02	
						88.04	88+8			88.02	82.75	82.75/280.5		2.74	
						23.79	81+8			23.79	25.18	25.18/280.5		1.38	
						23.79	82+8			23.79	25.18	25.18/280.5		1.38	
						42.00	83+8			41.98	44.28	44.28/280.5		2.38	
						85.00	84+8			84.98	86.30	86.30/280.5		1.81	
						83.00	85+8			82.97	85.41	85.41/280.5		2.45	

舊換地 區別						舊換地 區別							
舊換地	지 역	지 역	舊換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舊換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구 분						구 분		구 분		舊換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古 換 地面積 (㎡)
舊換地	111-2	古	88.06		87.82					87.8	87.8		
	111-279	古	88.00		88.00					88.0	88.0		
	舊		88.06		87.82	古	古		111-279	87.82	87.82		87.82
					88.06	古+古				88.00	88.00	88.00/88.0	-
					23.79	古+古				23.79	23.79	23.79/23.8	-
					23.79	古+古				23.75	23.75	23.75/25.0	-
					42.00	古+古				42.00	45.0	45.0/25.0	3.90
					35.00	古+古				35.00	38.3	38.3/25.0	3.30
					63.00	古+古				63.00	68.8	68.8/25.0	5.80

환 지 처 분 조 서 (정 정 전)													
종량제 폐기							종량제 폐기						
종량	지 번	지 번	대량폐기 [㎡]	가정폐기 [㎡]	가정폐기 [㎡]	종량	지 번	종량	지 번	대량폐기 [㎡]	가정폐기 [㎡]	가정폐기 [㎡]	가정폐기 [㎡]
부 수							부 수						
종량	111-342	지	134.00		83.00					99.40	132.20		32.80
	111-3807	지											
	111-3807	지	217.00		210.03					172.70	229.60		56.90
	111-382	지								134.00	178.20		44.20
	계		475.00		407.03	3	4	1379-6		406.10	540.00		133.90
					99.60		박+지			99.40	132.20	132.2/540	32.80
					46.00		고+경			46.00	61.20	61.2/540	16.20
					38.00		박+경			38.00	50.50	50.5/540	12.50
					50.00		김+래			50.00	66.50	66.5/540	16.50
					44.40		이+연			44.20	58.80	58.8/540	14.00
					49.67		주+미			49.50	65.80	65.8/540	16.30
					54.03		김+복			53.80	71.50	71.5/540	17.70
					25.27		김+숙			25.20	33.50	33.5/540	8.30

환 지 처 분 조 서 (정 정 후)													
종량제 폐기							종량제 폐기						
종량	지 번	지 번	대량폐기 [㎡]	가정폐기 [㎡]	가정폐기 [㎡]	종량	지 번	종량	지 번	대량폐기 [㎡]	가정폐기 [㎡]	가정폐기 [㎡]	가정폐기 [㎡]
부 수							부 수						
종량	111-342	지	134.00		83.00					99.40	132.20		32.80
	111-3807	지											
	111-3807	지	217.00		210.03					172.70	229.60		56.90
	111-382	지								134.00	178.20		44.20
	계		475.00		407.03	3	4	1379-6		406.10	540.00		133.90
					99.60		박+지			99.40	132.20	132.2/540	32.80
					46.00		고+경			46.00	61.20	61.2/540	16.20
					38.00		박+경			38.00	50.50	50.5/540	12.50
					50.00		김+래			50.00	66.50	66.5/540	16.50
					44.40		이+연			44.20	58.80	58.8/540	14.00
					49.67		주+미			49.50	65.80	65.8/540	16.30
					54.03		김+복			53.80	71.50	71.5/540	17.70
					25.27		김+숙			25.20	33.50	33.5/540	8.30

노원구공고 제2022 - 259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10호(2022. 01. 2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상계동 439-14 외 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99)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439-14, 439-15
2.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행(주차장)
 - 나. 사업의 명칭 :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4. 사업의 내용
 - 가. 면 적 : 507㎡
 - 나. 사업규모 : 지상 평면식주차장 약 18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7. 열람장소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99)
8. 열람기간 : 2022. 2. 24 ~ 2022. 3. 10(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5동 439-14	대	237	김○자	노원구 한글비석로41길 **	-	-	-	지분) 14분의 4
				박○현	노원구 한글비석로41길 **	-	-	-	지분) 14분의 3
				박○신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20, **동 **호	김○례	경기도 이천시 백서면 청백리로158번길 **	근저당	지분) 237분의 118.5
2	상계5동 439-15	대	270	김○완	노원구 덕릉로118길 **, **동 **호	-	-	-	지분) 270분의 132
				오○수	광진구 뚝섬로 576, **동 **호	-	-	-	지분) 270분의 138
계			507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구조	규모	연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5동 439-14 (예이동)	벽돌구조 (연외조)	지하1, 지상2	125.76	김○자	노원구 한글비석로41길 ** (상계동)	동방 생명 보험 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	근저당	지분) 7분의 4
					박○현	노원구 한글비석로41길 ** (상계동)				지분) 7분의 3
2	상계5동 439-14 (비동)	벽돌구조 (연외조)	지하1, 지상2	123.32	박○신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20, **동 **호	김○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158번길 **	근저당	
							이○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	근저당	
3	상계5동 439-15 (예이동)	벽돌구조 (연외조)	지하1, 지상2	182.64	김○원	노원구 덕릉로118길 **, **동 **호	-	-	-	
4	상계5동 439-15 (비동)	벽돌구조 (연외조)	지하1, 지상2	205.47	오○수	광진구 독섬로 576, **동 **호	-	-	-	
계				637.19						

은평구공고 제2022 - 345호

도시공원(향림근린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향림근린공원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은 평 구 청 장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안)

가. 계약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63-8

나. 계약면적 : 34㎡

다.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 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따로붙임[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03)

붙임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 라 정하고, 은평구청장을 “공원관리청”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63-8	전	34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 (무상사용인 경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 (유상사용인 경우) “공원관리청” 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 에게 지급한다.

제5조(부지사용료 지급방법) 부지사용료는 최초 입금일은 ○○○○년 ○○월 ○○일로 하고, 계약 후 1년 단위(1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토지소유자” 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계약서에 본조 삭제).

부지사용료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6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2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 와 “공원관리청” 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8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9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10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부지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본조 삭제).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2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5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은평구청장) (인)

양천구공고 제2022 - 369호

**도시관리계획[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1호(2005.07.06.)로 “서울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6호(2005.12.29.)로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3호(2016.12.29.)로 “신정3 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1호(2017.11.02.)로 결정(변경)된 서울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양 천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가) 근린생활시설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B	B1~B4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입지 가능한 용도 (단, 총포판매상,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변경(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B	B1~B4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입지 가능한 용도 (단, 총포판매상,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2. 변경 사유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용도 허용

3. 열람기간: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5. 관련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6.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별도양식 없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공고 제2022 - 34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6-23호(2006.7.13)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며,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독산동 1056-5호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2,242㎡
- 사업규모: 지하2층(주차장)/지상(공원), 연면적 3,773.11㎡
- 사업내용: 시유지(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105면) 건립 및 공원 재조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3.9.30. 까지

바. 열람 장소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사.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2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조감도



관악구공고 제2022 - 361호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및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6호(2014.07.24.)로 결정(변경)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호(2014.01.16.)로 결정(변경)된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2022.2.24. ~ 3.10.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79-6364)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74 일대	126,260	증32,433	158,693	서고시 제1998-79호 (1998.3.20.)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 기존 : 126,260㎡ - 변경 : 158,693㎡ ⇒ 증)32,433㎡	• 2030서울생활권계획(2018년)에서 제시한 난곡사거리 확장구역에 대하여 남부순환로변 공공복합개발, 향후 난곡선 개통시 난곡로 기능강화 예상 등 간선가로변 중심성 확대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도시관리계획(난곡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607, 635, 725번지 일대	75,535	-	75,535	서고시 제1997-11호 (1997.1.31.)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련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 중에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공고 제2022 - 45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분당선, 도곡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호(1995. 2.11.)로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8-174호 (2018.12. 6.) 및 강남구고시 제2021-230(2021.12.30.)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 분당선 도곡역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 97조,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강남구 도곡동 310-2 일원(도곡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 칭: 분당선 도곡역 승강설치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구분	면적(㎡)	내 용	비 고
도곡역	322.4	- 1,3,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E/S) 설치 4번 출입구 엘리베이터(E/V) 설치	1번 출입구: 91.8㎡ 3번 출입구: 92.9㎡ 4번 출입구: 137.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수도권본부장)
-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4. 1.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비고
1	강남구 대치동	500-1	공	420.9	92.9	서울특별시	
2	강남구 도곡동	467-5	도	70.2	60.6	서울특별시	
3	강남구 도곡동	466-5	도	153.3	15.5	서울특별시	
4	강남구 도곡동	466-4	도	6,836.6	39.5	서울특별시	
5	강남구 도곡동	467-4	잡	66.4	11.5	서울특별시	
6	강남구 도곡동	310-2	철	231.5	91.8	서울교통공사	
7	강남구 도곡동	467-17	대	20,607.2	10.6	대지권설정	
계				28,386.1	322.4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아. 열람기간: 2022. 2. 24. ~ 3. 10.(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자.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3)

차.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강남구공고 제2022 - 4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78호(1997.1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43호(2020.3.19.)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한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강남구 대치동 598-3(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 없음)

2) 명 칭 : 한티근린공원 조성사업(변경 없음)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없음)

1)면 적 : 246.4㎡

2)내 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기간(변경 있음)

1)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2020. 3. 19. ~ 2022. 3. 18.)

2)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년(2020. 3. 19. ~ 2024. 3. 18.)

마.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변경 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 없음)

사.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3423-699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수용 또는 사용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 외의 관리명세	
1	대치동 598-3	답	246.4	246.4	강*구	강*구(서*특별시) 11*6		-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위치	물건종류	구조규격	수량(면적)	단위	소유자	주소	비고
1	대치동 598-3	컨테이너	3m*5m	15	㎡	강*구	강*구(서*특별시) 11*6	
2	"	펜스 및 문	(1 ~1.8)m*54m	1	㎡	강*구	강*구(서*특별시) 11*6	

사업시행지 위치 및 보상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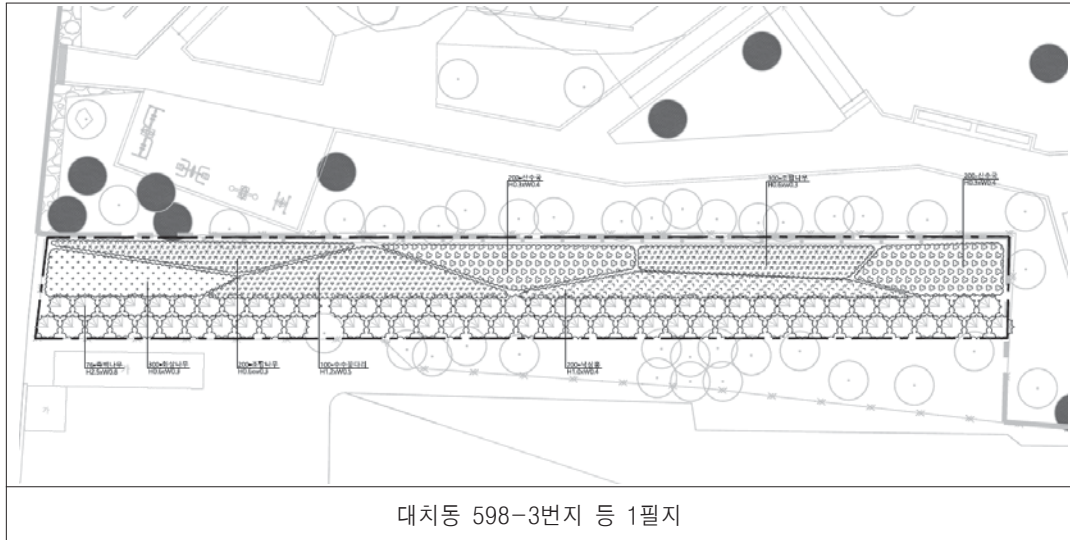
□ 한티근린공원(강남구 대치동 598-3 등 1필지)



대치동 598-3번지 등 1필지

공사설계도서

□ 한티근린공원(강남구 대치동 598-3 등 1필지)



강남구공고 제2022 - 46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동사거리 공공공지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9-360호(1979.8.9.)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호(2020.1.16.)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44호(2020.3.19.)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세곡동사거리 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세곡동사거리 공공공지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강남구 세곡동 76-6, 96-3(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변경 없음)

2) 명 칭 : 세곡동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변경 없음)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없음)

1)면 적 : 226㎡

2)내 용 : 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기간(변경 있음)

1)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2020. 3. 19. ~ 2022. 3. 18.)

2)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년(2020. 3. 19. ~ 2024. 3. 18.)

마.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변경 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 없음)

사.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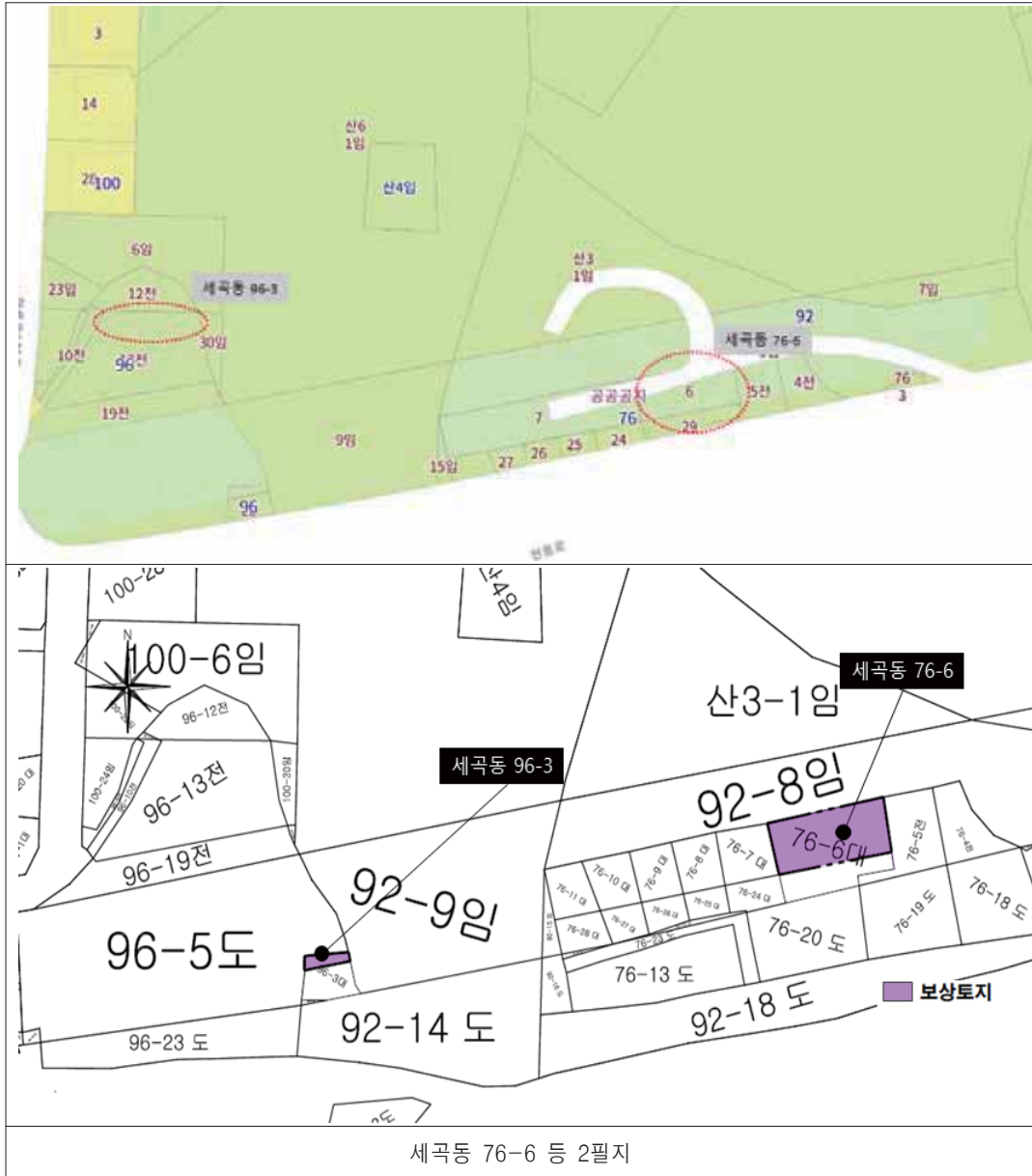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3423-699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수용 또는 사용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1	세곡동 76-6	대지	209	209	강*구	강*구(서*특별시) 11*6		-	-	-	
2	세곡동 96-3	대지	17	17	강*구	강*구(서*특별시) 11*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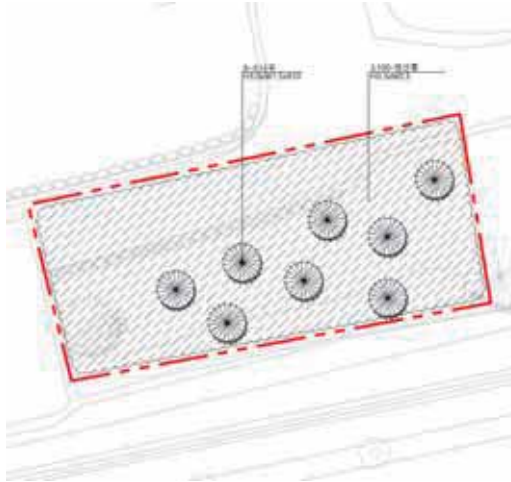
사업시행지 위치 및 보상용지도

☐ 세곡동사거리 공공공지(강남구 세곡동 76-6 등 2필지)



공사설계도서

□ 세곡동사거리 공공공지(강남구 세곡동 76-6 등 2필지)

	
세곡동 96-3	세곡동 76-6

송파구공고 제2022 - 347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 9. 24.) 및 제2015-346호(2015. 11. 5.)로 결정된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이동 23-3 외 1필지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폐지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2. 2. 24. ~ 3. 10.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

다. 열람내용

방이동 23-3호, 23-4호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5-296호(2015. 9. 24.)]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 (1) 불허용도(변경없음)
- (2) 권장용도(변경없음)
- (3) 지정용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위락시설 제외)	- (폐지)	방이동 23-3, 23-4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등)

-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2)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 이하)			변 경 (% 이하)		
	기준	허용	상한 ^{주1)}	기준	허용	상한 ^{주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0	200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200	200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200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250	250	
준주거지역	300	400		300	400	
일반상업지역	600	800		600	800	
방이동 23-3,4	600	800	1,150% ^{주3)}	600	800	400
제3종일반주거→준주거 ^{주2)}	250	350	400	250	350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적용

-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2)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적용

주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각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적률 계획에 따름

라. 관련도서 : 생략(송과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서와 같음). 끝.

송파구공고 제2022 - 35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 완료 공고

송파구 고시 제24호(2003. 6.10.)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되고, 송파구 고시 제 2013-82호(2013.8.16.)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 송파구 고시 제2020-83호(2020. 8. 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87-42 등 총 1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마을활력소 등 공공청사 건립
3.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1,949.3㎡ (마을활력소 741.8㎡)
 - 건축면적: 310.46㎡ (마을활력소)
 - 건축연면적: 984.17㎡ (마을활력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5. 사업의 시행기간 : 2020.10. 8. ~ 2021.12. 8.
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자치행정과(☎ 02-2147-2247)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소공고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2 - 8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과태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2. 2.24. ~ 2022. 3.9.(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2. 3.10. ~ 2022. 3.23.(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연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08	윤*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준로 ***	***동 ***호 (기암동, 기암단지아파트)
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11	김*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	***호 (호계동)
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13	한*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번길 **	***호 (청라동)
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19	강*원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	***동***호 (목동, 목동롯데캐슬위너아파트)
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22	고*희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다길 ***-	***호 (화곡동)
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23	김*웅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길 ***-	(개화동)
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26	강*묵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충청북도 제천시 중마*길 *	(두학동)
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28	김*리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	***동 ***호 (상계동, 수곡아파트)
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29	이*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서로**번길 ***-	***호 (오현동)
1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33	TIAN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충청남도 아산시 아의정로***번길 **	***동 ***호 (풍기동, 주운아파트)
1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38	김*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호 (성신동, 성암 두산위브세티움)
1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꽃이유관위반과태료	2022-01	000041	김*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일로**번길 ***	다동 ***호 (대저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립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및이물관리위반과태료	2022-01	000046	박*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리리도*번길 **-*	***호 (서운동, 이자(아노빌))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및이물관리위반과태료	2022-01	000052	송*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길 ***	(한남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및이물관리위반과태료	2022-01	000053	이*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연희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및이물관리위반과태료	2022-01	000055	이*복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번길 ***	(복정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및이물관리위반과태료	2022-02	000063	이*복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매문구 장한로**길 **	(장인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보전 및이물관리위반과태료	2022-02	000066	박*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동 ****호 (기양동, 일신강영휴먼빌아파트)	(기양동, 일신강영휴먼빌아파트)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2 - 8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2.2.24. ~ 2022. 3.9.(14일)
5. 납부기간 : 2022.3.10. ~ 2022.3.23.(14일)
6. 수령방법
 -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태료구분	과태료연월	과태료번호	과태료대상	부과금액	성명·별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지소재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88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부*(성*점) 조*창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상가)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89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범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가길 **	(장안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91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창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 **	(목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8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남*재	기타	서울특별시 관진구 용마산로*가길 **	***호 (종곡동, 용인주내)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90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이*희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길 **	부경파크빌 ***호 (당산동*가)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92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오*환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	경남아파트 *동 ***호 (망우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100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이*경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번길 ***-	*동 *층 ***호 (관산동, 중앙가든빌라)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96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오*미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나길 **	***호 (전동동, 사인빌)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94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남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가길 **	***동 ***층 (수서동, 강남대시영포레)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2-02	000095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관*필	기타	서울특별시 상동구 마장로**길 ***-	(마장동)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